

CONTENTS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권두칼럼	02 공공부문의 구조개혁, 민영화만이 해법인가? · 김동건
현안분석	06 분기소득과 연간소득의 연계성으로 살펴본 소득재분배의 정책방향 · 성명재 23 법인세 부담 구조 분석/전병목 40 우리나라 재정지출의 소비 대체효과 추정/송호신
정책연구	54 자본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연구/안종석 · 전병목 57 출산율 제고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조세 · 재정정책/우석진 · 민희철 62 부동산시장과 부동산 조세정책과제/노영훈 65 소득분배 격차 확대의 원인과 정책대응 방향/원종학 · 성명재 68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효율비용 추정/김승래 · 김우철 71 납세협력비용의 추정에 관한 연구/김형준 · 박명호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73 유로존 재무장관, 유류세 인하 반대 외
정책흐름	82 근로자·자영업자 등을 위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 96 '08년 상반기 세법·시행령 개정(안) 103 2007회계연도 정부결산, 감사원 검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 105 금융기관이 지급받는 채권이자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제도 폐지 106 IMF와의 조세개혁 워크숍 개최 107 2007년도 기금운용 평가결과 113 국세청 홈택스 방문자 2억명 돌파 115 7월 1일부터 금지금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 시행
재정통계	119 조세범칙 조사 실적 외
이슈 & 포커스	127 국민연금 등 공적지출, 5년 새 54.4% ↑ 외

공공부문의 구조개혁, 민영화만이 해법인가?



김동건
서울대 교수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공공부문의 개혁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항상 들려오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현 정부는 스스로 '실용 정부'라는 인식하에 대대적인 공공부문 개혁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워 지금에 이르고 있다.

정부 소식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공공기관의 민영화, 통폐합을 포함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놓고 해당 부처와 논의중에 있으며, 곧 정부시안이 마련되면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6~7월 중에 최종 추진방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한다.

현재 305개에 달하는 공기업 및 공공기관을 민영화 대상으로 검토하고 이 가운데 15~20개를 현 정부의 임기 내에 민영화하며, 이와는 별도로 20~30개 기관의 통폐합이 추진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240여 곳의 공공기관장을 교체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따지고 보면 공기업의 비효율성, 방만 경영은 공기업의 그림자와 같다고나 할까, 공기업의 탄생과 함께 줄곧 따라다니는 비판이다. 얼마 전 정부 보고서에 의하면 305개 공공기관의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이 작년엔 5,340만원에 달하였으며 이는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 임금 3,220만원보다 66%나 많은 수준이다. 어떤 공기업은 직원 평균 연봉이 1억원에 가까웠다. 이러니 공공기관을 두고 '신도 부러워하는 직장'이라는 말이 나올 만하다.

얼마 전 공기업 최고경영자(CEO)를 지낸 모 인사가 『세 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펴냈는데, 이 책에서 저자는 '공기업은 방만 경영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비판하면서 공기업이 안고 있는 뿌리 깊은 문제점들을 바로잡지 않는 한 쇠신이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주인 정신'을 가질 것을 강도 높게 주문하고 있다. 대단히 옳은 지적이다.

지금의 공기업은 대부분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기에 한번 직장에 들어가면 굳이 열심히 일할 인센티브가 없다. 적당히 편하게 일하면서 상사의 눈 밖에 벗어나는 실수만 피하면 된다.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공기업 사장도 굳이 노조와 싸워가면서 구조개혁에 앞장설 의욕을 가지지 않는다. 모두가 공기업의 주인의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해법은 민영화이며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1980년대 이후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세계적인 추세이다. 민영화는 창의성을 발휘할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따라서 국민총생산(GDP)과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난 포스코와 담수화사업부문 세계 1위로 도약한 두산중공업 사례에서 민영화의 긍정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이 시점에서 공공부문 개혁을 위한 최우선적인 선택이 꼭 민영화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현 정부는 전반적으로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민영화를 서두르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좀 더 철저한 사전 준비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는 느낌을 주고 있다.

아마도 2007년에 마무리된 일본 우정공사 민영화가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2002년 일본 우정성이 우정공사로 재편된 후 완전 민영화하는 데 5년이 소요되었다. 개혁 과정에서 공기업 임원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대립을 극복하기 위해 우정 민영화담당 장관직을 신설하여 총리 직할체제로 민영화를 주도하였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을 얻기 위해 국민들과 상시적인 의견교환의 장을 마련하였고, 관련사항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이해관계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공개함으로써 투명한 의사결정 시스템이 확보되도록 하였다.

우리에게도 정부의 민영화 추진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데에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관건이다. 민영화에 대한 당위성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인식 중의 하나가 되었다고 하나, 우리 내부에서는 아직도 민영화가 서민 생활의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공공서비스의 질 하락과 요금 인상으로 귀착된다고 걱정하는 분위기가 존재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사유화로 인해 발생할 이윤은 몇몇 특권층의 몫일 뿐 국민 전체의 혜택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믿고 있는 계층도 있다. 앞으로 일어날 노동계와의 충돌은 불 보듯

.....
 현 정부는 전반적으로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민영화를 서두르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좀 더 철저한 사전 준비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는 느낌을 주고 있다.

.....

작은 정부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 개혁에는 민영화만이 능사가 아니며 만병통치약은 결코 아니다.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는 다양한 정책 수단이 존재하고 있으며 시장테스트 등 관민협동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민간개방을 확대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

뿐만 아니라,

그러기에 정부는 민영화 공약을 빨리 구체화해야 한다는 성과주의에 빠져 강성노조가 포진하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에 입체적 대응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최근의 쇠고기 파문에서 보듯이 국민들과의 ‘소통 부재’가 얼마나 큰 문제를 야기하는가를 교훈삼아 여론을 충분히 듣고 조율작업을 충분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은 정부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 개혁에는 민영화만이 능사가 아니며 만병통치약은 결코 아니다.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는 다양한 정책 수단이 존재하고 있으며 시장테스트 등 관민협동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민간개방을 확대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공공기관 모두가 민영화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민영화 대상이 될 수 없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내부적 경영혁신이 일어나야 하겠다. 그런데 공공의 이익보다는 기관구성원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기업환경에서 자생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의 관리·감독이 중층적으로 구축되어 있으나 이것도 별 효능이 없다. 따라서 공공부문 개혁의 진정한 해법은 공기업 사장에 어떤 사람이 임명되느냐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사장의 개혁 리더십과 CEO로서의 관리능력을 통해 공기업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사장 임명권을 가진 정부의 책임이 막중하다.

사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객관적 검증절차가 요구된다. 현재처럼 표면적으로는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해 능력이 입증된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면서 실제 내면적으로는 코드 인사를 내려 보내는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 정부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변화와 개혁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인사가 선임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선임된 사장은 내부의 구조 개혁을 단행하고 공정한 인사혁신을 통해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자리를 보전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이것이 바로 공기업이 ‘주인의식’을 갖는 길이다. **KIP**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현안분석 |

- 분기소득과 연간소득의 연계성으로 살펴본
소득재분배의 정책방향
성명재 ·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법인세 부담 구조 분석
전병목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우리나라 재정지출의 소비 대체효과 추정
송호신 · 한국조세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분기소득과 연간소득의 연계성으로 살펴본 소득재분배의 정책방향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sung@kipf.re.kr)

과연 분기단위로 제공하는
정보가 본래의 취지대로 정확할
뿐만 아니라 정책 판단을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I. 서론

통계청에서는 분기단위로 가계수지 및 소득분배에 대한 서베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특히 분기소득에 대한 지니계수 추정치와 소득 5분위 또는 10분위 배율 등을 중심으로 상대소득 분배 결과에 대한 자료도 함께 발표하고 있다. 언론매체는 물론이고 일반국민들이나 정책당국은 분기자료를 통해 나타난 몇 가지 지표를 토대로 분배구조의 변화를 추정하고 정책 목표를 설정하면서 정책수단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분기단위로 제공하는 정보가 본래의 취지대로 정확할 뿐만 아니라 정책 판단을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왜냐하면 분기별 소득흐름의 적절성과 분기간 소득순위의 변화 등에 따라 분기소득의 분산만으로 포착할 수 없는 많은 요인들이 연간소득분배구조를 결정해주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가상적으로 직전 2년 동안의 8개 분기 모두 지니계수가 0.35, 소득 5분위 배율은 9.0으로 동일하다고 하자. 그러면 현재 기준에서는 사회경제적으로 지난 2년간 소득분배구조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평가하게 된다. 그렇지만 각 분기별 지니계수와 5분위 배율 등이 동일하더라도 연간기준과 소득분배구조는 악화 또는 개선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많다. 따라서 분기소득지니(또는 5분위 배율 등)만으로는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단적으로는 분기소득지니가 개선되는 상황하에서도 연간소득지니는 악화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분기소득 정보에만 의존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을 살펴보자. 산업별·직종별로 임금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소득격차는 항상 존재한다. 그렇지만 매 분기마다 고용(또는 취업)상황이 변하고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해 소득의 부침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득순위의 역전현상도 함께 발생한다. 이런 현상이 빈번해질수록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연간소득의 격차는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난다.

난로장수와 에어컨장수를 예로 들어 설명해보자. 가을과 겨울에는 난로장수가 매월 2백만원씩 벌고, 에어컨장수는 봄과 여름에 매월 2백만원씩 벌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각 계절별로 두 장수의 소득격차는 6백만원(또는 월간 2백만원)으로 현격한 차이를 나타낸다. 이런 차이는 1년 12달 지속된다. 그렇지만 연간으로는 이들 두 장수의 소득순위 변동을 통해 연간소득은 각각 1,200만원으로 서로 같다. 매 기간 관찰되는 소득격차는 현격하지만 연간으로는 균등한 소득분배구조가 실현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단적인 예로부터 알 수 있듯이 월간 또는 분기별 소득의 격차만으로는 연간소득분포의 모습을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각 분기간 소득순위가 바뀌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에서 소득분배격차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매 기간마다 관찰되는 상대소득격차뿐만 아니라 매 기간 사이에 나타나는 소득순위의 변화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전자에 대해서만 관심을 기울이고 후자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소득분배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여 올바른 정책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직종별·산업별·부문별 상대소득격차뿐만 아니라 기간별 소득순위의 변화 또는 경제구조의 유연성에 대해서도 함께 고찰할 필요가 있다.

월간 또는 분기별 소득의 격차만으로는 연간소득분포의 모습을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각 분기간 소득순위가 바뀌기 때문에 발생한다.

II. 기간의 장단과 소득분포

1. 연간소득의 정의

연소득은 4개 분기의 소득을 합산함으로써 산출할 수 있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각 분기별 소득의 평균과 분산은 일반적으로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Y = \sum_{t=1}^4 y_t \text{ 단, } Y : \text{연간소득}$$

$$y_t : \text{분기소득, } t=1, 2, 3, 4$$

여기에서 연간소득의 단위를 분기소득의 단위(즉, 3개월치 소득)로 환산하면 표본평균의 형태를 가지게 된다.

$$\bar{Y} = \frac{1}{4} \sum_{t=1}^4 y_t, y_t \sim \text{LN}(\mu_t, \sigma_t^2)$$

이 때 분기단위로 변환한 연간소득의 평균과 분산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bar{Y}) = \frac{1}{4} \sum_{t=1}^4 E(y_t) = \frac{1}{4} \sum_{t=1}^4 \mu_t$$

$$\text{Var}(\bar{Y}) = \frac{1}{16} \sum_{t=1}^4 \text{Var}(y_t) + \frac{2}{16} \sum_{i < j} \sigma_{ij}, \text{ 단, } \sigma_{ij} = \text{Cov}(y_i, y_j), i, j=1, 2, 3, 4$$

여기서 한시적으로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만약 모든 분기 i, j 에 대해 $\sigma_{ij} = \sigma^2$ 와 $\mu_t = \mu$ 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하면 위의 식들은 다음과 같이 변환된다.

$$E(\bar{Y}) = \mu$$

$$\text{Var}(\bar{Y}) = \frac{\sigma^2}{4} + \frac{2}{16} \sum_{i < j} \sigma_{ij}, i, j=1, 2, 3, 4$$

이때 모든 y_t 가 다른 y_s 와 완전상관(perfectly correlated)되어 있다면(즉, $\rho=1$) 연간소득의 분산은 분기소득의 분산과 일치하게 된다.

$$\text{Var}(\bar{Y}) = \frac{\sigma^2}{4} + \frac{2}{16} \times 6\sigma^2 = \sigma^2. \text{ 반대로 } y_t = -y_{t+1} (t=1, 2, 3) \text{이면}$$

$$\text{Var}(\bar{Y}) = \frac{\sigma^2}{4} + \frac{2}{16} (-2\sigma^2) = 0 \text{이 성립한다. 아울러 } \sigma_{ij} = -\sigma^2/3 \text{인 경우에도}$$

$$\text{Var}(\bar{Y}) = \frac{\sigma^2}{4} + \frac{2}{16} \times 6 \times \left(\frac{-\sigma^2}{3} \right) = 0 \text{이 된다.}$$

그런데 각 분기별 소득의 평균과 분산은 일반적으로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편의상 분기소득 분산과 공분산의 평균을 각각 $\bar{\sigma}^2 \equiv \frac{1}{4} \sum_{t=1}^4 \text{Var}(y_t)$ 과 $\overline{\text{cov}} \equiv \frac{1}{6} \sum_{i < j} \sigma_{ij}$ 이라고 정의하자. 그러면 분기소득



의 분산 평균과 (분기소득단위의) 연간소득 분산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overline{\sigma^2} - \text{Var}(\overline{Y}) = \frac{3}{4}\overline{\sigma^2} - \frac{3}{4}\overline{\text{cov}} = \frac{3}{4}(\overline{\sigma^2} - \overline{\text{cov}})$$

분기소득의 분산 평균과 (단위를 분기소득으로 변환한) 연간소득의 분산과의 차이는 분기소득의 분산과 공분산 평균의 차이에 비례한다. 만약 공분산 평균에 비해 분산 평균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면 분기소득의 분산과 연간소득의 분산 차이는 확대된다. 따라서 분기소득의 분산에 대한 정보만으로 연간소득의 분산을 추론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분기소득 분산의 변화 방향과 연간소득 분산의 변화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는 모두 각 분기간 소득변수의 공분산의 크기에 의존한다. 다음 절에서 논하겠지만 이런 관계는 소득의 평균과 분산(표준편차)에 지니계수가 대응되므로 분기소득 지니는 연간소득 지니와 변화 방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도 의미한다. 그러므로 분기소득의 분산 또는 분기소득의 지니계수만으로는 연간소득 분배구조의 변화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즉, 연간소득 분포의 변화를 정확히 포착하기 위해서는 각 분기별 분산(또는 지니계수)과 함께 각 분기간 소득의 공분산 즉, 상대소득순위의 변화도 함께 고찰해야 함을 시사한다.

그런데 위의 식은 분산의 크기와 관계없이 절대치만을 고려한 것으로서 분기소득의 분산을 분모로 하여 위 식을 변환하면 아래와 같다.

$$\frac{\overline{\sigma^2} - \text{Var}(\overline{Y})}{\overline{\sigma^2}} = \frac{3}{4} \left(1 - \frac{\overline{\text{cov}}}{\overline{\sigma^2}} \right)$$

다음 식은 이번 분기(t)와 직전분기(t-1) 사이에 나타나는 분기소득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의 대표적인 형태 중 하나이다.

$$y_t - \mu_t = \rho(y_{t-1} - \mu_{t-1}) + (1 - |\rho|)\varepsilon_t$$

$\varepsilon_t \sim (0, \sigma_\varepsilon^2)$, ε_t 는 y_{t-1} 과 독립 또는 직교(orthogonal)

이 때 y_t 와 y_{t-1} 사이의 공분산은 ρ 의 값에 따라 상이한 값을 가지게 된다.

$$\rho = \pm 1, \text{Cov}(y_t, y_{t-1}) = \pm \sigma_y^2$$

$$\rho = 0, \sigma_y^2 = \sigma_\varepsilon^2$$

분기소득의 분산에 대한 정보만으로 연간소득의 분산을 추론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분기소득 분산의 변화 방향과 연간소득 분산의 변화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다.



만약 $\rho=0$ 이면 소득의 결정은 평균을 중심으로 외형상 불규칙 보행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만큼 소득의 결정은 노력이나 혁신 등과 관계없이 순전히 운(luck)에 의해 소득의 높고 낮음이 결정된다.

$$0 < \rho < 1, \text{Cov}(y_t, y_{t-1}) = \frac{1-\rho}{1+\rho} \sigma_\varepsilon^2$$

그리고 $0 < \rho < 1$ 일 때 y_t 와 y_{t-k} ($k \geq 1$) 사이의 공분산은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0 < \rho < 1, k \geq 1, \text{Cov}(y_t, y_{t-k}) = \frac{(1-\rho)(1+\rho^2+\rho^4+\dots+\rho^{2(k-1)})}{(1+\rho^k)(1+\rho+\rho^2+\dots+\rho^{k-1})} \sigma_\varepsilon^2$$

각 기간별 소득결정식에서 ρ 값은 소득분배구조 및 경제성장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론적으로 ρ 는 -1과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현실에서는 ρ 가 양(+)의 값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rho=0$ 이면 소득의 결정은 평균을 중심으로 외형상 불규칙 보행(random walk)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만큼 소득의 결정은 노력이나 혁신 등과 관계없이 순전히 운(luck)에 의해 소득의 높고 낮음이 결정된다. 이는 노동을 공급할 아무런 유인(incentive)을 제공해주지 못한다. 따라서 노력을 통한 성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성장도 기대하기 어렵다.

ρ 가 음(-)의 값을 가지는 경우에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난다. 극단적으로 $\rho=-1$ 이라면 매 분기별로 소득분포가 일정한 분산을 가지더라도 분기가 바뀔 때마다 소득순위(와 수준)가 완전히 거꾸로 바뀌게 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모든 사람의 연소득이 동일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노력의 유인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 즉, 투입에 관계없이 연간 산출이 동일한 만큼 경제하려는 유인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ρ 가 양(+)의 값을 가지면 미래의 소득흐름에 대해 어느 정도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안정성도 높아질 수 있다. 다만 ρ 가 매우 큰 값을 가지게 되면 소득흐름의 경직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유동성이 제한되는 상태에서도 노력에 따른 한계편익이 줄어드는 만큼 효율을 낮출 수 있다. 그러므로 ρ 는 양(+)의 값을 가지되 지나치게 크지 않은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아쉽게도 사회·경제적으로 적정 수준의 ρ 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알 수 없다.

2. 소득분포와 지니계수와와의 관계

김종면·성명재(2004)에 의하면 소득은 자연대수정규분포(log-normal distribution)를 따른다고 한다. 소득변수 y 의 평균과 분산을 각각 μ 와 σ^2 , 자연



대수를 취한 소득변수의 평균과 분산을 각각 m 과 s^2 이라고 하자. 그러면 소득 변수의 자연대수정규분포 특성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y \sim \text{LN}(\mu, \sigma^2)$$

$$\ln(y) \sim \text{N}(m, s^2)$$

이 때 μ 와 σ^2 , 그리고 m 과 s^2 사이에는 다음의 대응관계가 성립한다.

$$\mu = \exp\left(\frac{2m + s^2}{2}\right)$$

$$\sigma^2 = \exp(2m + 2s^2) - \exp(2m + s^2)$$

또는

$$m = \ln\left(\frac{\mu^2}{\sqrt{\sigma^2 + \mu^2}}\right)$$

$$s^2 = \ln\left(\left(\frac{\sigma}{\mu}\right)^2 + 1\right)$$

김종면·성명재(2004)의 식 (IV-2)에 의하면, 자연대수소득이 $\text{N}(m, s^2)$ 의 정규분포를 따르면 지니계수와 표준편차 사이에는 다음의 대응관계가 성립한다.

$$\text{Gini}(s) = 2\Phi\left(\frac{s}{\sqrt{2}}\right) - 1$$

이를 소득변수의 평균(μ)과 표준편차(σ)로 다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변환된다.

$$\text{Gini}(\mu, \sigma) = 2\Phi\left(\frac{\ln\left(\left(\frac{\sigma}{\mu}\right)^2 + 1\right)}{\sqrt{2}}\right) - 1$$

그러므로 소득분포가 자연대수정규분포를 따른다는 전제하에서는 소득의 평균과 분산의 추정치로부터 직접 지니계수를 도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지니계수는 소득의 분산(σ^2)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고 소득평균(μ)과는 부(-)의 상관관계가 있음도 알 수 있다.

소득분포가 자연대수정규분포를 따른다는 전제하에서는 소득의 평균과 분산의 추정치로부터 직접 지니계수를 도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분기소득의 분산이 일정하더라도 분기소득간 공분산이 변화하면 연간소득 분산이 달라질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3. 분기소득과 연간소득의 특성 차이

통계청에서는 분기별로 지니계수를 추정·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그러한 정보는 연간단위의 재분배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데 있어 아무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지 못할 수도 있다. 이는 분기별 지니계수가 해당 분기의 상대소득격차만을 보여줄 뿐, 각 분기별 소득의 공분산을 통한 소득의 흐름, 즉 소득순위의 변화에 따른 진정한 의미에서의 연간소득분배구조에 대한 정보를 미처 제공해주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분기소득의 분산이 일정하더라도 분기소득간 공분산이 변화하면 연간소득 분산이 달라질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음의 제Ⅲ장에서는 통계청에서 발간하는 1994~2006년도 가계조사원시자료 가운데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2인 이상 가구를 대상¹⁾으로 연간소득과 분기소득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Ⅲ. 분가지니와 연가지니의 추정결과

1. 분기·연간소득 평균의 변화추이

각 분기별로 평균소득은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06년의 경우 가구당 연소득은 4,176만원, 분기평균소득은 1,044만원이다. 분기별 평균소득은 1,012만~1,069만원이다. 진폭은 57만원으로 평균소득 대비 5.3% 또는 ± 2.7% 정도로 작지 않다.

1994~2006년 동안 분기별 평균소득 추이를 살펴보면 대체로 4/4분기의 평균소득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3/4분기가 높으며 1/4~2/4분기는 대체로 낮은 패턴을 보이고 있다. 분기별 평균소득의 차이가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만큼 소득의 평균 측면에서 일정한 계절성을 보임을 알 수 있다.

1) 2003년부터는 읍면지역 거주가구, 2006년부터는 1인가구도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비교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2인 이상 도시지역 거주가구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표 1〉 연간소득평균과 분기소득평균의 추정결과

(단위: 백만원)

	m	m/4	\bar{Y}	\bar{Y}_1	\bar{Y}_2	\bar{Y}_3	\bar{Y}_4
1994	20.214	5.053	5.054	4.884	4.796	5.173	5.362
1995	23.003	5.751	5.737	5.560	5.452	5.901	6.034
1996	25.745	6.436	6.427	6.381	6.094	6.608	6.625
1997	26.299	6.575	6.558	6.564	6.433	6.806	6.430
1998	23.036	5.759	5.744	6.017	5.542	5.544	5.872
1999	25.708	6.427	6.413	6.407	6.081	6.461	6.705
2000	29.017	7.254	7.231	7.177	6.952	7.417	7.378
2001	30.376	7.594	7.568	7.504	7.190	7.753	7.826
2002	32.593	8.148	8.161	8.290	8.009	8.325	8.020
2003	36.513	9.128	9.137	8.947	8.700	9.432	9.469
2004	39.349	9.837	9.838	9.751	9.515	10.121	9.964
2005	40.670	10.168	10.165	10.187	9.887	10.299	10.288
2006	41.761	10.440	10.395	10.524	10.121	10.245	10.692

분기별 소득의 분산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 1. 2인 이상 도시가구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2. 연소득/4의 경우와 분기평균소득을 단순평균한 값이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각 가구의 가중치가 분기별로 다르기 때문임.

$$3. m = \frac{1}{N} \sum_{i=1}^N Y_i, \bar{y}_t = \frac{1}{N_t} \sum_{i=1}^N y_{it}, t=1, 2, 3, 4, N_t \text{는 } t \text{ 분기의 표본수}$$

2. 분기·연간소득 분산의 변화추이

분기별 소득의 분산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1/4분기 분산의 경우 1994년 7.2(단위 무시)에서 2000년 25.7, 2006년 52.0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런데 분산이 증가한 이유 중에서 화폐단위(또는 평균소득)의 증가에 의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이런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소득 변수를 평균소득으로 나누어 단위를 변환하여 분산을 추정해보았다. 그 결과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변환된 변수의 평균이 1994~2006년 모두 1이 되는 상황하에서도 분산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모든 분기 대부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1990년대 말 외환 및 경제위기 기간에는 예외적·일시적으로 분산이 크게 확대된 경우가 있다.

한 가지 특징은 (단위를 변환한) 연간소득에 대한 분산이 (단위를 변환한) 분기소득에 대한 분산보다 작은 값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는 분기소득 사이에 나



(단위를 변환한) 연간소득에
대한 분산이 (단위를 변환한)
분기소득에 대한 분산보다
작은 값을 가진다.

타나는 공분산이 양(+)의 값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표 2〉 연간소득분산과 분기소득분산의 추정결과

(단위: 백만원²[분산], 1[단위조정])

	s^2	$s^2/16$	$\text{Var}(\bar{Y})$	s_1^2	s_2^2	s_3^2	s_4^2	$\sum_{i=1}^4 s_i^2$	$\sum_{i=1}^4 s_i^2/16$
1994	84.821	5.301	5.328	7.206	6.643	7.462	9.189	30.500	1.906
1995	110.798	6.925	6.957	9.984	8.904	9.750	11.199	39.836	2.490
1996	141.932	8.871	8.868	13.079	10.735	11.648	13.665	49.128	3.070
1997	191.334	11.958	11.899	18.024	16.817	16.514	15.632	66.988	4.187
1998	184.615	11.538	11.520	14.754	18.739	15.520	16.197	65.210	4.076
1999	174.727	10.920	10.957	16.388	14.906	14.020	19.868	65.183	4.074
2000	261.918	16.370	16.247	25.738	26.553	29.566	22.476	104.334	6.521
2001	274.099	17.131	16.816	24.491	19.960	25.756	21.260	91.467	5.717
2002	314.695	19.668	19.948	29.104	29.062	35.082	22.992	116.240	7.265
2003	390.250	24.391	24.352	44.247	24.201	28.560	32.401	129.409	8.088
2004	469.635	29.352	29.158	40.364	34.220	43.008	36.817	154.409	9.651
2005	529.316	33.082	32.913	52.657	42.022	39.080	42.319	176.078	11.005
2006	546.500	34.156	33.609	51.982	40.926	41.652	45.343	179.904	11.244
단위조정	s^2	$s^2/16$	$\text{Var}(\bar{Y})$	s_1^2	s_2^2	s_3^2	s_4^2	$\sum_{i=1}^4 s_i^2$	$\sum_{i=1}^4 s_i^2/16$
1994	0.208	0.208	0.209	0.302	0.289	0.279	0.320	1.189	0.297
1995	0.209	0.209	0.211	0.323	0.300	0.280	0.308	1.210	0.303
1996	0.214	0.214	0.215	0.321	0.289	0.267	0.311	1.188	0.297
1997	0.277	0.277	0.277	0.418	0.406	0.356	0.378	1.559	0.390
1998	0.348	0.348	0.349	0.408	0.610	0.505	0.470	1.992	0.498
1999	0.264	0.264	0.266	0.399	0.403	0.336	0.442	1.580	0.395
2000	0.311	0.311	0.311	0.500	0.549	0.537	0.413	2.000	0.500
2001	0.297	0.297	0.294	0.435	0.386	0.428	0.347	1.597	0.399
2002	0.296	0.296	0.300	0.424	0.453	0.506	0.357	1.740	0.435
2003	0.293	0.293	0.292	0.553	0.320	0.321	0.361	1.555	0.389
2004	0.303	0.303	0.301	0.425	0.378	0.420	0.371	1.593	0.398
2005	0.320	0.320	0.319	0.507	0.430	0.368	0.400	1.706	0.426
2006	0.313	0.313	0.311	0.469	0.400	0.397	0.397	1.662	0.416

주: 1. 2인 이상 도시가구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2. 단위조정은 소득변수를 평균소득으로 나눈 변수를 기준으로 추정된 것임

$$3. s^2 = \frac{1}{N} \sum_{i=1}^N (Y_i - m)^2, m = \frac{1}{N} \sum_{i=1}^N Y_i, s_i^2 = \frac{1}{N} \sum_{t=1}^{N_t} (y_{it} - m_t)^2, m_t = \frac{1}{N_t} \sum_{i=1}^{N_t} y_{it}, N_t \text{는 } t\text{분기의 표본수, } t=1, 2, 3, 4$$



3. 분기소득 공분산의 변화추이

분기소득간 상관관계의 방향을 나타내주는 공분산을 추정해본 결과, 모든 분기 조합에 있어 공분산이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어, 각 분기소득 사이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화폐단위(또는 평균소득)의 변화에 의한 교란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단위를 변환한 변수를 기준으로 추정한 공분산을 살펴보면 모든 분기에서 공분산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분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990년대 말 경제위기 기간에 일시적으로 공분산 추정치가 과도하게 상승(overshooting)하였던 것을 볼 수 있다.

앞절의 내용과 공분산 추정결과를 종합해볼 때, (단위 변환한) 연간소득의 분산이 증가한 데에는 분기소득의 분산이 증가한 효과와 공분산이 증가한 효과가 합쳐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두 가지 요소 중 어떤 것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더 큰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논의한다.

(단위 변환한) 연간소득의 분산이 증가한 데에는 분기소득의 분산이 증가한 효과와 공분산이 증가한 효과가 합쳐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분기소득 공분산의 추정결과

(단위: 백만원²[분산], 1[단위조정])

	Cov12	Cov13	Cov14	Cov23	Cov24	Cov34	공분산 합	공분산 합 *2/16
1994	4.270	4.466	4.420	4.486	4.416	5.316	27.373	3.422
1995	5.595	6.191	5.637	6.097	5.734	6.482	35.736	4.467
1996	7.437	8.362	7.674	7.404	7.001	8.503	46.381	5.798
1997	10.918	10.836	9.324	10.652	9.297	10.675	61.701	7.713
1998	9.793	10.352	9.554	9.995	9.191	10.669	59.553	7.444
1999	9.149	9.614	8.766	9.006	8.836	9.690	55.061	6.883
2000	12.943	13.282	12.037	12.819	12.316	14.411	77.808	9.726
2001	14.252	18.783	13.763	14.721	12.522	14.751	88.793	11.099
2002	17.173	18.887	15.789	16.528	15.632	17.452	101.461	12.683
2003	21.385	21.849	21.054	21.287	20.378	24.159	130.112	16.264
2004	24.587	26.704	24.784	26.348	24.834	28.805	156.061	19.508
2005	31.253	29.641	28.103	29.685	26.374	30.211	175.267	21.908
2006	29.987	29.346	28.345	30.592	28.715	31.937	178.921	22.365



분기소득의 분산평균과
공분산평균의 차는 1994년
0.119에서 2006년
0.139로 증가하였다.

단위조정	Cov12	Cov13	Cov14	Cov23	Cov24	Cov34	공분산 합	공분산 합 *2/16
1994	0.182	0.177	0.169	0.181	0.172	0.192	1.072	0.134
1995	0.185	0.189	0.168	0.190	0.174	0.182	1.087	0.136
1996	0.191	0.198	0.182	0.184	0.173	0.194	1.123	0.140
1997	0.259	0.243	0.221	0.243	0.225	0.244	1.434	0.179
1998	0.294	0.310	0.270	0.325	0.282	0.328	1.810	0.226
1999	0.235	0.232	0.204	0.229	0.217	0.224	1.341	0.168
2000	0.259	0.250	0.227	0.249	0.240	0.263	1.488	0.186
2001	0.264	0.323	0.234	0.264	0.223	0.243	1.551	0.194
2002	0.259	0.274	0.237	0.248	0.243	0.261	1.522	0.190
2003	0.275	0.259	0.249	0.259	0.247	0.271	1.559	0.195
2004	0.265	0.271	0.255	0.274	0.262	0.286	1.612	0.201
2005	0.310	0.283	0.268	0.292	0.259	0.285	1.697	0.212
2006	0.282	0.272	0.252	0.295	0.265	0.292	1.658	0.207

주: 1. 2인 이상 도시가구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2. 단위조정은 소득변수를 평균소득으로 나눈 변수를 기준으로 추정된 것임

4. 분기소득 분산 평균과 공분산 평균의 상대적 크기 변화추이

분기소득의 분산평균과 (분기단위로 조정된) 연간소득의 분산의 차이는 분기소득의 분산평균과 공분산평균의 상대적 크기에 의존함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분기소득의 분산평균과 공분산평균의 차는 1994년 0.119에서 2006년 0.139로 증가하였다. 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연간소득 분산이 분기소득 분산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을 시사한다. 다만 1998~2000년 기간 동안에는 예외적으로 매우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연간소득의 분산이 분기소득의 분산과 매우 크게 격차를 나타내었음을 시사한다. 이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소득분포 또는 소득흐름의 패턴에 일시적으로 구조적 변화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분기소득의 분산과 연간소득의 분산 사이의 절대거리가 증가하였더라도 분산 자체가 확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격차의 상대비율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것도 의미를 가진다. 이를 위해 상기의 절대격차를 분기소득의 분산으로 나누어 격차의 비율을 구해본 결과, 그 비율은 하락추세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비율은 $(1 - \text{공분산평균} / \text{분산평균})$ 에 비례하는데 1994~2006년 기간 동안에 $(1 - \text{공분산평균} / \text{분산평균})$ 의 값이 감소한 것으로부터 알 수



있다.

이는 분기소득의 분산과 연간소득의 분산 사이의 절대격차는 확대되었지만 상대격차는 축소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는 분기소득의 분산 상승이 연간소득의 상승을 유도했지만 아울러 분기별 소득의 공분산 증가속도가 분기소득의 분산 증가속도보다 더 빨라 결과적으로 연간소득의 분산이 상대적으로 더 빨리 상승하였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최근의 소득분배구조의 특징적 변화는 분기소득의 분산이 커지는 가운데 분기별 소득흐름의 경직성도 함께 증가하면서 연간소득의 분산 증가를 가속화시켰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득분배격차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분기소득의 상대격차 구조에 대응하여 격차 분포 자체의 모습을 축소하려는 노력과 함께, 분기별 소득흐름의 변화, 소득순위 변동의 유연성을 증가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²⁾. 즉, 통계청을 비롯하여 정부에서 소득분배 격차 확대에 대응하여 정책 목표를 설정하는 경우 대부분 분산(또는 지니)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지만 성공적으로 재분배 정책을 수립·집행하기 위해서는 분기별 소득흐름의 공분산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최근의 소득분배구조의 특징적 변화는 분기소득의 분산이 커지는 가운데 분기별 소득흐름의 경직성도 함께 증가하면서 연간소득의 분산 증가를 가속화시켰음을 알 수 있다.

〈표 4〉 분기소득 공분산 평균과 분산평균의 차 및 상대비 추정결과

	분산평균-공분산평균	공분산평균/분산평균	1-공분산평균/분산평균
1994	0.119	0.601	0.399
1995	0.121	0.599	0.401
1996	0.110	0.630	0.370
1997	0.151	0.613	0.387
1998	0.196	0.606	0.394
1999	0.172	0.566	0.434
2000	0.252	0.496	0.504
2001	0.141	0.648	0.352
2002	0.181	0.583	0.417
2003	0.129	0.669	0.331
2004	0.130	0.674	0.326
2005	0.144	0.663	0.337
2006	0.139	0.665	0.335

주: 2인 이상 도시가구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2) 적정 수준의 ρ 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ρ 를 낮추어 소득순위 변동의 유연성을 높이면 연간소득으로 측정된 상대소득격차를 다소 축소할 수 있다.

소득평균단위를 통일한 경우에 지니계수와 분산 사이에는 일대일 대응관계가 있다.

분기소득의 분산 및 공분산 추정치로부터 각 분기간 상관계수를 추정해보았다. 전반적으로 모든 분기간 상관계수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위에서 논의한 바를 확인해주고 있다.

〈표 5〉 분기소득간 상관계수 추정결과

	ρ_{12}	ρ_{13}	ρ_{14}	ρ_{23}	ρ_{24}	ρ_{34}
1994	0.617	0.609	0.543	0.637	0.565	0.642
1995	0.593	0.627	0.533	0.654	0.574	0.620
1996	0.628	0.677	0.574	0.662	0.578	0.674
1997	0.627	0.628	0.555	0.639	0.573	0.664
1998	0.589	0.684	0.618	0.586	0.528	0.673
1999	0.585	0.634	0.486	0.623	0.513	0.581
2000	0.495	0.481	0.500	0.458	0.504	0.559
2001	0.645	0.748	0.603	0.649	0.608	0.630
2002	0.590	0.591	0.610	0.518	0.605	0.614
2003	0.654	0.615	0.556	0.810	0.728	0.794
2004	0.662	0.641	0.643	0.687	0.700	0.724
2005	0.664	0.653	0.595	0.733	0.625	0.743
2006	0.650	0.631	0.584	0.741	0.667	0.735

주: 2인 이상 도시가구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5. 분기·연간소득 지니계수의 변화추이 및 비교

제Ⅱ장에서 논의하였듯이 소득평균단위를 통일한 경우(분장에서는 평균소득으로 나누어 단위를 변환하여 평균이 1이 되도록 함)에 지니계수와 분산 사이에는 일대일 대응관계가 있다. 위에서는 분산을 토대로 논의하였는데 이를 지니계수를 기준으로 논의하여도 유사한 결과에 도달한다.

연간소득지니와 분기소득지니가 모두 상승하였다. 그런데 양자간의 차이를 분기소득지니로 나눈 비율은 같은 기간 동안 하락한 것을 알 수 있다. 분기소득지니와 연간소득지니의 차이는 연간소득과 분기소득의 분산 차이에 기인하는데 이는 곧 분기별 소득 사이의 공분산의 변화에 의해 상대적 크기 변화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흔히 지니계수 지표만으로 소득분배 상태를 진단하고 정책 목표를



설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위에서 논의한 바에 따르면 소득분포 구조 자체뿐만 아니라 기간별 소득순위의 변화 등을 나타내는 소득결정 과정상의 경직성 또는 유연성, 즉 공분산에 대해서도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소득분포 구조 자체뿐만 아니라 기간별 소득순위의 변화 등을 나타내는 소득결정 과정상의 경직성 또는 유연성, 즉 공분산에 대해서도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표 6〉 연간소득지니와 분기소득지니의 추정결과

(단위: %)

	연간(A)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분기평균(B)	B-A	(B-A)/B
1994	0.24293	0.26960	0.26303	0.26500	0.27799	0.26890	0.02598	9.66
1995	0.24280	0.28037	0.26963	0.26859	0.26580	0.27110	0.02830	10.44
1996	0.24685	0.28188	0.26568	0.26995	0.27733	0.27371	0.02686	9.81
1997	0.28102	0.31564	0.30787	0.30710	0.30424	0.30871	0.02770	8.97
1998	0.31121	0.33716	0.33584	0.35272	0.33483	0.34014	0.02893	8.51
1999	0.26726	0.30091	0.29735	0.29576	0.28888	0.29573	0.02847	9.63
2000	0.27988	0.31834	0.31280	0.30173	0.30007	0.30823	0.02836	9.20
2001	0.27222	0.30857	0.30006	0.30062	0.29887	0.30203	0.02981	9.87
2002	0.27997	0.31347	0.31115	0.30802	0.30005	0.30817	0.02821	9.15
2003	0.27893	0.32086	0.29487	0.29600	0.30806	0.30495	0.02602	8.53
2004	0.28529	0.31333	0.30060	0.30696	0.31493	0.30896	0.02367	7.66
2005	0.28959	0.32163	0.31017	0.30748	0.31319	0.31312	0.02353	7.52
2006	0.29126	0.32353	0.31857	0.31941	0.31425	0.31894	0.02769	8.68

주: 2인 이상 도시가구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IV. 시사점과 맺음말

1. 요약

1990년 대 말 외환 및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소득분배격차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었다. 흔히 우리는 지니계수의 절대수준에만 관심을 맞추어 그 이면에 존재하는 중요한 요인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분기소득지니와 연간소득지니의 차이가 어떤 패턴을 보이고 있는냐에 따라 상이한 정책시사점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표 6〉에서 보듯이 분기소득지니의 평균은 연간소득지니보다 큰 값을 가진다. 그 차이는 1994~2006년 동안 대체로 0.025~0.027 정도의 범위 내에 있



소득분배구조 및
패턴, 변화추이를 이해하고
정책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분기소득의 분포뿐만 아니라
연간소득 분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다. 그런데 경제위기 및 직후의 기간(1998~2000년)에는 그 격차가 약 0.028~0.029로 확대되었다. 물론 분기소득지니의 평균에 대비한 비율은 소폭 작아졌지만 절대수준은 확대되어 다른 기간과 확연한 패턴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전반적으로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각 분기간 소득흐름의 고착성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각 분기간 소득의 상관관계가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이를 바꾸어 말한다면 소득획득시장에서 진입, 퇴출 등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유연성이 (일시적으로) 낮아졌음을 시사한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차이는 분기소득지니와 연간소득지니에 대한 이해와 함께 분기소득간 소득순위의 변화의 정도 등을 함께 고찰할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소득분배구조 및 패턴, 변화추이를 이해하고 정책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분기소득의 분포뿐만 아니라 연간소득 분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연간소득 분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첫째 분기소득의 경우 근원적인 소득격차 요인에도 산업, 업종, 직종, (계절적) 날씨, (계절별) 휴일 구조 등에 따라 계절적으로 나타나는 비경제적 요인에 의한 소득변동효과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교란적 요인(noise)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에 의한 (소위 진정한 의미에서의) 소득격차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통계청에서 분기별로 상대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발표하고 있다. 그런데 보다 풍부하고 완결된 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해서는 단순히 분기별 지니에 대한 정보만 제공할 것이 아니라 분기별 소득순위의 변화 정도를 나타내는 공분산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해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지니계수(이는 소득의 분산과도 일맥상통함)에만 초점을 맞추어 정책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자칫 특정한 기간에 나타나는 상대소득격차의 절대적 크기에만 특화하여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그런 격차가 자연발생적 수준의 격차라면 정책적 효과 없이 비용만 초래될 수도 있다. 그런 경우라면 매 분기의 소득분포 모양 자체는 그대로 두더라도 각 분기간 소득순위의 변동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함으로써 공분산을 낮춘다면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대소득격차를 축소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책도구를 더욱 풍부하게 한다는 의미에서도 소득의 분산뿐만 아니라 각 기간별 공분산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시사점

분기별 지니계수는 계층별, 산업별, 직종별, 연령별 임금 또는 소득격차의 정도를 나타내 주는 소득불평등지수이다. 따라서 계층별, 산업별, 직종별, 연령별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다면 분기소득격차, 즉 분기소득 지니계수를 축소할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의 진출입 및 이동이 매우 자유롭고 경제학적 의미에서의 경쟁이 치열하다면 분기별로 소득순위의 뒤바뀜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분기소득 지니계수가 큰 값을 가지더라도 분기소득을 합산한 연간소득의 경우에는 가구(또는 개인)별로 상대적인 소득격차의 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연간소득 지니계수의 값이 작아진다. 다시 말해 분기소득 기준의 상대소득격차보다 연간소득 기준의 상대소득격차가 작아진다. 극단적으로 4개 분기 모두 분기소득 지니계수의 값이 전혀 변화하지 않는 경우에도 분기별 소득순위가 자유롭게 바뀐다면 연간소득 지니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더 작아질 수 있다.

이로부터 소득재분배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소득재분배를 위한 정책도구로는 계층별, 산업별, 직종별, 연령별 임금 또는 소득격차를 직접적으로 축소하는 정책과, 분기별 소득이동성을 높여주어 소득순위의 뒤바뀜 현상이 원활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주는 정책이다. 전자는 매 분기마다 나타나는 소득분포의 폭을 좁혀주는 정책이고, 후자는 매 분기별 소득분포의 모양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분기와 분기 사이에 소득이동을 원활하게 해줌으로써 연간소득 기준의 소득불평등도가 작아지도록 하는 정책이다. 앞에서 논의한 바를 빌자면 전자는 분기소득분포의 분산을 직접적으로 축소하려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으며, 후자는 분기별 소득순위에 초점을 맞추어 소득순위의 변화, 즉 공분산을 낮춤으로써 연간소득격차를 축소하려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소득재분배 정책이라 하면 일반인들은 위의 두 가지 정책도구 중 전자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경제구조의 고도화 및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등에 따라 계층별, 산업별, 직종별, 연령별 임금·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러한 현실적인 제약을 감안한다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여 연간소득의 상대격차 축소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KIPF

계층별, 산업별, 직종별, 연령별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다면 분기소득격차, 즉 분기소득 지니계수를 축소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종면·성명재, 『사회보장정책의 장기 재정지출 소요 추정과 정책방향』, 연구 보고서 04-02, 한국조세연구원, 2004.
- 성명재, 「소득계층별 조세·이전지출 분포와 소득재분배」, 『응용경제』, 제8권 제2호, 2006, pp. 5~45.
- _____, 「빈곤탈출률 추이와 빈곤정책 소요자원 규모의 추정」, 『재정논집』, 제22집 제1호, 2007, pp. 61~88.



법인세 부담 구조 분석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byungj@kipi.re.kr)

I. 서론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는 그 귀착을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인소득 과세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종 소득자에 대한 과세라는 측면에서 법인소득 과세는 중간단계 과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소득 과세에서는 법인세 과세분을 감안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배당소득의 수령자가 법인소재지와 다른 국가의 거주자일 경우, 대부분 이중과세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법인소득 과세제도는 자본 소유주의 세후소득에 영향을 미쳐 투자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금융시스템의 국제화로 자본의 국제간 이동이 자유로워진 점도 세부담 차이에 의한 기업이동의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외국자본의 유치 등을 통한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소득세 부담과 그 구조를 요인별로 분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법인소득세 부담은 OECD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수준에서는 선진국들에 비해 높지 않지만 법인세수의 비중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법인세수의 GDP 대비 비중은 그 추세에 있어서도 최근 2차례의 세율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증가추세에 있어 정책적 고려가 필요할 수 있다. 우리나라 법인세수의 GDP 대비 비중은 1970년 1.5%에서 1990년 1.7%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00년에는 3.1%, 2006년

우리나라 법인소득세 부담은 OECD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수준에서는 선진국들에 비해 높지 않지만 법인세수의 비중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은 1980년대 중반까지 GDP 대비 1.5% 이하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여 왔으나 이후 증가추세에 있다.

3.5% 수준에 달하였다. 그러므로 최근 법인세수 증가의 원인을 산업별·기업 규모별로 분석하는 것은 향후 법인세 부담관련 정책수단 개발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법인세 부담에 대한 기존연구들은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나 유효세율 분석과 투자활동과의 연관성 분석이 대부분이다(김우철; 2005, 김진수·박형수·안중석; 2003 등). 법인세수 변동의 요인별 효과분석은 김우철(2007)에서 시도되었으며 과세소득에서 법인세 부담이 도출되는 과정을 분석한 의의가 있다. 본고에서는 김우철(2007)의 방법을 확장한 Auerbach and Poterba(1987), Auerbach (2007)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기존의 유효세율 분석과 함께 법인세수와 긴밀한 연관관계를 가지는 법인부문의 경제내 비중, 법인의 수익성 변화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유효세율의 분석에 있어서는 이전 연구에서 고려되지 않은 세무조정의 효과를 명시적으로 분해하여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불일치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았다. 또한 유효세율 결정과정을 산업별, 기업규모별로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각종 조세특례제도의 효과차이를 제시하였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Ⅱ장은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현황을 기업부문의 크기, 수익률, 유효세율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제Ⅲ장은 유효세율의 변동을 보다 세분화된 요인들을 중심으로 분해하여 보고 기업규모에 따른 영향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Ⅳ장은 결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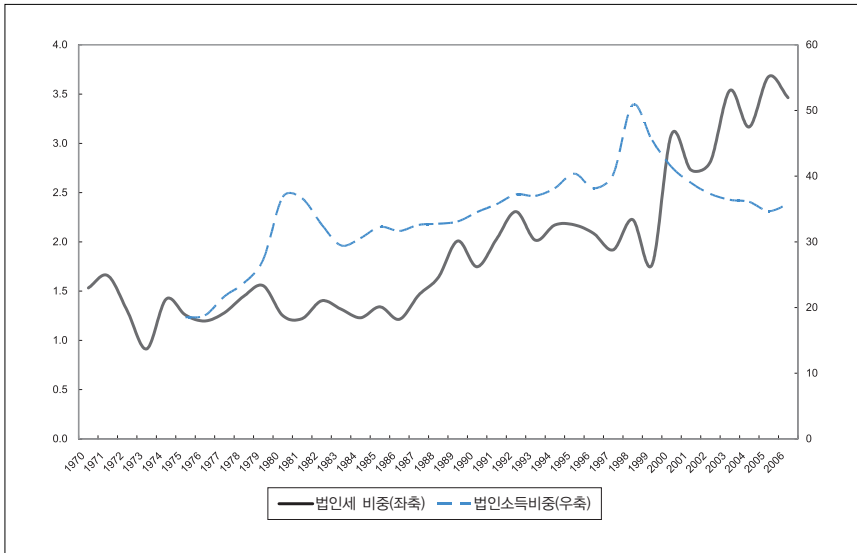
Ⅱ. 법인세 부담과 기업소득, 수익성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은 1980년대 중반까지 GDP 대비 1.5% 이하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여 왔으나 이후 증가추세에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외환위기 이전까지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인 시기라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부담 수준의 절대적 증가와 함께 증가 속도 또한 높아졌다. 2000년 이후 세율인하가 2차례 이루어졌지만, 이는 전반적인 세부담 증가 속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단기적 인하효과만 보이고 있다. 반면 과세대상의 크기를 나타내는 국민계정상 법인부문의 소득¹⁾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까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여주었지만 그 이후에는 오히려 하락추세로 전환되고 있다. 즉, 2000년 이전에는 법인세 부담 증가가 법인소득의 증가(혹은 법인의 경제내 비중 증가)와 같이 이루어졌다면 2000년 이후의 법인세 부담은 법인소득 비중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증가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법인이 체감하는 법인세 부담

1) 법인소득은 영업잉여와 재산소득으로 구성되며 피용자보수와 각종 세금, 보조금은 제외됨.

은 2000년 이후 더욱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법인세수와 법인소득의 추이



주: 법인소득은 국민소득계정상 법인부문의 영업잉여와 재산소득의 합.

2000년 이전에는 법인세 부담 증가가 법인소득의 증가와 같이 이루어졌다면 2000년 이후의 법인세 부담은 법인소득 비중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증가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법인이 체감하는 법인세 부담은 2000년 이후 더욱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한 법인세율과 법인세수의 상관관계도 우리나라는 상당히 다른 구조를 보여준다. 일본과 유사한 관계성을 확인할 수 있지만 미국, 영국, 독일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2005년 기준 우리나라 세율-세수 관계는 (중앙정부)법인세율 25%-GDP 대비 세수 4.1%이나 독일 26.375%-1.7%, 미국 35.5%-3.1%와 상당한 차이를 보여준다. 일본의 경우 30.0%-4.3%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관계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성은 외국과의 자본유치경쟁에서 최고세율수준이 세부담을 대표하는 변수로 이용되기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표 1> 주요국의 법인세율과 법인세 부담수준(2005년)

(단위: %)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법인세율(중앙정부)	25.0	30.0	35.5	30.0	26.375
법인세/GDP 비중	4.1	4.3	3.1	3.4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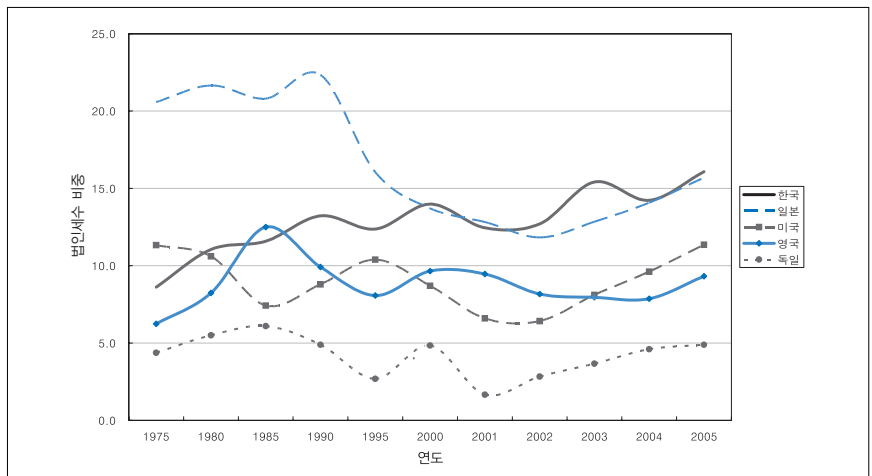
자료: OECD database.

세원 구성상 법인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구조는 조세효율성 측면과
장기적 기업활동 활성화
측면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GDP 대비 법인세 부담이 절대적인 세부담 수준을 나타낸다면, 총 세수입²⁾ 중 법인세수의 비중은 상대적 세부담 수준을 나타낸다. 즉, 세원 구성의 문제로 각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국민부담에 대한 법인세 부담의 기여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법인세수의 수입비중은 197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5년 기준 16.1%에 달하였으며 이는 일본의 15.7%보다 높은 수준이다. 주요 비교 대상으로 설정한 미국, 영국은 각각 11.4%, 9.3%로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독일은 2005년 기준 4.9%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전체 세부담에서 법인의 역할은 상당히 낮게 나타난다. 그럼에도 독일은 2007년 재정적자 해소를 목적으로 단행한 부가가치세율 인상으로 재정수지가 호전되자, 다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8년부터 연방법인세율을 기존의 26.4%에서 15.8%로 10.5%p 인하하였다. 이는 조세경쟁 속에서 성장동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세원에 있어서 기업부문의 역할을 축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우리나라 법인세의 상대적 비중이 높은 것은 직접적이 법인세 규모와 함께 다른 국가와 비교한 세원 구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개인소득세 수준 때문이기도 하다. 이는 오랜 세월 자영업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낮은 근로소득세 수준을 유지하였고 자본소득의 상당부분을 분리과세함으로써 나타난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원 구성상 법인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구조는 조세효율성 측면과 장기적 기업활동 활성화 측면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림 2] 법인세수의 세입 비중 추이



자료: OECD database.

2) 조세수입에 사회보장기여금 수입을 더한 국민부담의 개념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GDP 대비 세부담을 법인 소득의 비중(법인소득/GDP), 법인의 수익성(당기순이익/법인소득)³⁾, 유효법인세율(법인세액/당기순이익⁴⁾)의 3요소로 분해한다⁵⁾. 법인소득의 비중은 경제 전반적인 생산구조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법인의 수익성은 주어진 소득에 대한 법인의 생산성을 나타내는 항목이다. 여기에 조세정책적 관심의 대상인 유효법인세율이 포함되어 조세정책의 효과를 다른 요인들과 분리하여 살펴볼 수 있다.

$$\frac{\text{법인세율}}{\text{GDP}} = \frac{\text{법인소득}}{\text{GDP}} \times \frac{\text{당기순이익}}{\text{법인소득}} \times \frac{\text{법인세액}}{\text{당기순이익}}$$

여기서 법인소득은 국민소득계정에서 제시되는 법인소득으로서 영업잉여와 재산소득으로 구성되는 항목이다. 동 항목은 피용자 보수부분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순수 자본에 귀속되는 소득이라 할 수 있다.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부담이 있는 흑자법인만을 대상으로 한 당기순이익으로 국세통계연보상의 자료를 이용하였다⁶⁾. 법인세액은 총 부담세액으로 과세표준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서 산정된 산출세액 합계에서 각종 공제와 감면, 가산세 등을 조정한 금액이다. 이때 법인소득 귀속연도와 신고연도의 차이도 조정하였다.

법인세 부담을 3요소로 구분해 보면 2000년 이후 법인세 부담의 증가는 주로 법인의 이익률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내 부가가치에서 법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과 유효법인세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법인세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으나 법인의 이익률이 더욱 빨리 증가하여 전체적인 세부담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내 부가가치 중 법인부분의 비중은 2000년 41.4%에서 2005년 35.7%로 감소하여 5개년 평균증가율은 -3.5%이다. 또한 당기순이익에 대한 평균세율도 2000년 27.5%에서 법인세율 인하 등의 영향으로 2005년에는 19.9%로 낮아져 전체 세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노동비용을 제외한 법인소득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로 정의되는 법인의 이익률은 2000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00년 이익률은 22.7% 수준이었으나 연평균 15.8%씩 증가하여 2005년에는 47.3% 수준으로 증가하여 전체 법인세 부담률을 증가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법인의 이익률 증가의 원인으로는 법인의 경영효율성 제고와 함께 외환위기 이후 낮아진 부채비율과 이자율의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00년 이후 법인세 부담의 증가는 주로 법인의 이익률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Auerbach and Poterba(1987), Auerbach (2007)에서는 자산 대비 이익률의 변수를 이용
 4) 엄밀한 의미에서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비용을 차감한 후의 소득이므로 실제 유효법인세율(=법인세액/법인세차감전순이익)과는 법인세 비용 만큼의 차이가 있으나, 자료의 제약으로 본고에서는 이를 보정하지 않은 개념으로 이용한다. 그러나 유효세율에 대한 요인분석에 있어서는 법인세 비용을 포함함으로써 인해 나타나는 세율인상효과를 분리하였다.
 5) 법인세 부담의 분해를 위해 실측치(국세청)인 당기순이익, 법인세액을 추계치(한국은행)인 GDP, 법인소득과 함께 사용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구조적인 왜곡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기업경영분석(한국은행) 등의 거시 자료를 이용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① 흑자법인과 적자법인의 합으로 당기순이익 등이 제시되어 세부담과 연계에 한계가 있고 ② 금융보험업 등이 조사대상에서 제외(2006년 신고기준 전체 흑자법인 당기순이익 중 248% 점유되는 한계가 있어 제외.



향후 법인세수 변화는
유효세율의 변화에 더욱
의존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 법인부문의 크기, 이익률, 그리고 평균세율

(단위: %)

	법인소득 비중 (법인소득/GDP)	이익률 (당기순이익/법인소득)	평균유효세율 (법인세액/당기순이익)	법인세부담률 (부담세액/GDP)
2000	41.4	22.7	27.5	2.6
2001	39.0	26.7	26.6	2.8
2002	37.3	33.7	26.0	3.3
2003	36.4	34.4	23.8	3.0
2004	36.1	42.9	22.1	3.4
2005	34.7	47.3	19.9	3.3
평균 증가율	-3.5	15.8	-6.2	4.9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한국은행 Homepage, 경제통계시스템

기여도 분석결과에 따르면 경제내에서 차지하는 법인소득 비중은 점차 감소하여 각 연도 법인세 부담률을 0.03%~0.16%p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법인소득 비중 감소의 영향은 2003~2004년 기간 동안 완화되었다가 2005년 다시 증가하였다. 또한 평균세율도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상대적으로 높은 법인세 부담을 감소한 정부의 세율 인하, 각종 조세특례 제도의 도입 등으로 인해 평균유효세율은 전체 법인세 부담을 0.09%~0.35%p 인하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명목세율이 2%p 인하된 2005년의 경우, 전체 법인세 부담을 2000년 이후 가장 큰 폭인 0.35%p 인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반면 법인의 수익성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법인세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연도별 법인세 부담률을 0.06%~0.71%p까지 증가시켜 법인소득 비중과 유효세율 변화로 인한 하락 압력을 크게 능가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향후에도 법인세수 비중이 증가할 것인 가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부가가치 중 법인소득의 비중과 법인 이익률의 경우 장기적으로 안정될 것이기 때문에 법인세수 비중에 대한 유효세율의 영향력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즉, 향후 법인세수 변화는 유효세율의 변화에 더욱 의존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 법인세 부담률 변화의 기여도 분석

	법인소득 비중	이익률	유효세율	합계
기여율(%)				
2001	-0.85	2.31	-0.45	1.00
2002	-0.27	1.40	-0.13	1.00
2003	0.26	-0.22	0.96	1.00
2004	-0.06	1.56	-0.50	1.00
2005	0.86	-2.14	2.28	1.00
기여도(%p)				
2001	-0.16	0.44	-0.09	0.19
2002	-0.13	0.69	-0.07	0.50
2003	-0.08	0.06	-0.28	-0.29
2004	-0.03	0.71	-0.23	0.45
2005	-0.13	0.33	-0.35	-0.15

유효세율은 명목세율, 이월손실금 공제, 각종 조세특례제도의 운용 등에 따라 직접적으로 변화하는 변수로 정부의 정책의지가 반영될 수 있다.

Ⅲ. 평균 유효세율의 분해

1. 유효세율의 분해

앞서 제시된 법인세 부담률에 미치는 3가지 요인들 중 정부의 정책 대상은 유효세율이라 할 수 있다. 법인소득 비중과 법인의 이익률은 대부분 경제 전반적인 여건과 법인의 경쟁력 등에 의해 결정되는 변수로 정부정책으로 인한 변화가능성이 낮다. 반면 유효세율은 명목세율, 이월손실금 공제, 각종 조세특례제도의 운용 등에 따라 직접적으로 변화하는 변수로 정부의 정책의지가 반영될 수 있다. 그러므로 유효세율에 대한 세분화된 분석은 정부정책의 평가와 향후 설계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유효세율의 분해분석을 위해 법인세액과 당기순이익은 자료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분리하였다.

$$\begin{aligned} \text{법인세액} &= \text{산출세액} - \text{세액공제} + \text{가산세} \\ &= \tau \cdot \lambda \cdot \text{과세표준} - \text{세액공제} + \text{가산세} \end{aligned}$$

여기서 τ 는 법인세 최고세율이며 λ 는 법인세의 누진도를 나타내는 파라미



법인세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나 유효세율은 주주의
실질 경제소득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터로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비율로 정의된다. 구체적으로 λ 값은 (세액공제전 산출세액/ $(\tau \times$ 과세표준))으로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의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세액공제는 각종 공제와 감면을 포괄하는 항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통해 제공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임시투자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으로 공제받는 세액을 의미한다. 가산세는 통상적인 가산세와 감면사후 관리요건 불이행에 따른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을 포함한다.

한편 법인세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나 유효세율은 주주의 실질 경제소득을 기준으로 산출되므로 이를 반영하여 당기순이익을 아래와 같이 분리하였다.

$$\text{당기순이익} = \text{과세표준} + \text{소득공제} + \text{이월결손금} - \text{세무조정} - \text{법인세 비용}$$

여기서 세무조정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에 의해 나타나는 수입 및 비용의 조정에 따른 것이다. 대표적인 항목은 감가상가방법의 차이, 기부금 및 접대비 손금한도 적용 등에 따른 조정을 들 수 있다. 법인세 비용을 고려하는 것은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을 분석대상으로 하여야 하나 자료의 한계로 당기순이익을 이용함으로써 인한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소득공제 항목은 각종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 항목의 합을 나타내는 변수이며 이월결손금은 법인세 제에서 허용하는 결손금 이월효과를 반영하는 변수이다. 각 자료는 국세청 국세통계연보(2006, 2007)자료를 이용하였다.

이상의 법인세액과 당기순이익의 분해를 이용하여 유효세율을 요인별로 분해한다. 즉, 유효세율의 분해식은 최고세율(τ)에서 각 요인별 세율 변화폭을 적용하여 최종적인 평균세율을 도출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begin{aligned} \frac{\text{법인세율}}{\text{당기순이익}} &= \tau\lambda + \tau\lambda \frac{\text{세무조정}}{\text{당기순이익}} - \tau\lambda \frac{\text{소득공제}}{\text{당기순이익}} - \tau\lambda \frac{\text{이월결손금}}{\text{당기순이익}} \\ &+ \tau\lambda \frac{\text{법인세비용}}{\text{당기순이익}} - \tau\lambda \frac{\text{세액공제}}{\text{당기순이익}} \\ &= \tau + \tau\lambda \frac{\text{세무조정}}{\text{당기순이익}} - \tau\lambda \frac{\text{소득공제}}{\text{당기순이익}} - \tau\lambda \frac{\text{이월결손금}}{\text{당기순이익}} \\ &+ \tau\lambda \frac{\text{법인세비용}}{\text{당기순이익}} - \tau\lambda \frac{\text{세액공제}}{\text{당기순이익}} - \tau(1-\lambda) \end{aligned}$$

여기서 마지막 항인 $\tau(1-\lambda)$ 는 법인세 누진도에 영향을 미치는 낮은 세율의



영향과 토지 등이 양도소득에 부과되는 세부담의 영향을 나타낸다. 즉, 최고세율이 일정한 상태에서 마지막 항의 크기가 커지면 최고세율 적용과표가 줄어드는 것으로 법인소득의 분포가 평균화됨을 의미한다.

법인세 유효세율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세무조정 항목이다.

2. 법인세 부담의 요인분석

분석결과에 따르면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차감전 순이익에 대한 세액 비중)은 2000년 20.3%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져 2005년에는 14.6%로 5.7%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 연도 명목세율 대비 개선 폭, 즉 (명목세율-유효세율)은 2000년 7.7%p에서 2005년에는 10.4%p로 증가하여 법인의 세부담은 명목세율이 시사하는 바보다 더욱 낮아졌다.

법인세 유효세율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세무조정 항목이다. 2000년의 경우 세무조정에 따라 법인세 유효세율은 5.5%p 증가하였으나 2003년 이후 급격히 하락하여 2005년에는 오히려 유효세율을 0.4%p 낮추어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변화폭이 5.9%p에 달하였다. 이는 동 기간 유효세율 개선 폭 5.7%p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동 부문에 대한 보다 세분화된 분석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 공표되는 자료의 한계로 세무조정에 포함되는 감가상각비의 차이, 손익귀속사업연도 차이의 반영, 기부금 및 접대비의 한도적용 등 여러 요인 중 무엇이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포괄적으로 세무조정과 관련된 정부정책이 접대비 손금한도 강화 등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가 제공하는 유효세율 변화가 세부담을 급격히 낮추어준 결과는 법인들의 조세문제에 대한 사전적 대응 노력이 과거보다 크게 높아졌음을 시사한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활동의 국제화가 급격히 진전됨에 따라 조세문제에 대한 사전적 대응으로 세무조정의 영향을 축소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세무조정 효과가 기업회계기준과 세무회계기준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조세부담 효과라면 그 절대적 격차가 줄어드는 것은 조세제도의 투명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변화라 할 수 있다.

명목세율 인하를 제외할 경우 다음으로 유효세율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이월결손금제도와 각종 세액공제제도의 효과이다. 이월결손금제도의 경우 외환위기 등의 영향으로 2000년 유효세율 인하효과가 7.0%p에 달하였으나 기업의 실적개선에 따라 점차 낮아져 2005년에는 4.4%p 인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동 기간 이월결손금제도로 인한 유효세율 변화는 법인의 세부담



산업별 유효세율을 살펴보면
분석기간 동안 제조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업의
세부담이 전체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을 나타내며 건설업, 도매업은
평균보다 높은 수준, 서비스업은
전체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다.

을 2.6%p 인상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세액공제의 영향도 상당한 유효세율 인하효과를 보여주는데 2000년 5.2%p에서 2005년 4.0%p로 그 효과성은 소폭 낮아졌다. 즉, 세부담 수준을 상당히 낮추어 주는 제도로 기능하고 있으나 2000~2005년 기간 동안에는 유효 세부담을 1.2%p 증가시키는 효과를 보여준다. 이러한 세액공제제도의 역할 축소는 법인 투자의 전반적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소득공제(비과세소득 포함) 등의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0년 이후 1%p 이하의 유효세율 인하효과를 보여주며 분석기간 동안의 수준 변화도 거의 없다. 기타 요인은 법인세 낮은 세율의 영향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의 영향을 나타내는데, 양도소득세가 미미한 수준인 2002년 이후에는 꾸준히 1%p 수준의 유효세율 인하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동 기간 동안 법인소득 중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소득 비중에 큰 변화가 없었음을 보여준다. 그 외 당기순이익에 포함된 법인세 비용을 차감하는 효과는 명목세율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2000년 7.2%p에서 명목세율 인하에 따라 2005년에는 5.4%p 수준으로 낮아졌다.

〈표 4〉 법인세 유효세율 변화요인(2000~2005)

(단위: %)

	명목세율	세무조정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세액공제	기타	법인세 ¹⁾	유효세율 ²⁾
2000	28.0	5.5	-7.0	-0.7	-5.2	-0.3	7.2	27.5(20.3)
2001	28.0	3.3	-5.7	-1.1	-4.5	-0.6	7.1	26.6(19.5)
2002	27.0	6.0	-6.7	-1.0	-4.7	-1.1	6.5	26.0(19.5)
2003	27.0	3.1	-5.8	-0.7	-5.2	-1.2	6.5	23.8(17.3)
2004	27.0	0.9	-5.4	-0.6	-5.2	-1.0	6.5	22.1(15.6)
2005	25.0	-0.4	-4.4	-0.6	-4.0	-1.1	5.4	19.9(14.6)

주: 1) 법인세 비용은 당기순이익에서 차감된 법인세 비용에 의한 유효세율 증가폭인. 2000~2003년 수치는 2004년 귀속소득의 유효세율(법인세비용/당기순이익)을 적용하여 계산

2) 괄호 안은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에 대한 유효세율.

3. 산업별 · 자산규모별 분석

유효세율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각 요인들의 산업별 효과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제조업의 경우 다양한 투자자산에 대해 가속감가상각, 투자세액공제 등을 허용하고 있고 금융보험업과 같은 경우 이러한 감가상각제도, 투자세액공제제도 등의 혜택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⁷⁾. 주요 산업별 유효세율

7)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Auerbach and Poterba(1987), Auerbach (2007)은 금융법인을 제외한 유효세율을 분석하였음.



을 살펴보면 분석기간 동안 제조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업의 세부담이 전체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을 나타내며 건설업, 도매업은 평균보다 높은 수준, 서비스업은 전체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다. 유효세율이 낮은 업종의 경우 다른 업종에 비해 이월결손금,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으로 인한 세부담 인하효과가 높게 나타났으며 유효세율이 높은 업종은 반대로 세무조정으로 인해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반면 이월결손금,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의 세부담 감소효과는 낮게 나타난다.

제조업의 경우 유효세율이 13.4~13.3%로 전체 법인평균 15.6~14.6%보다 낮은 수준이나 2005년 명목세율 2%p 인하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세부담 감소폭은 0.1%p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제조업의 법인세 부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세액공제로 분석기간 동안 유효세율을 8.5~7.3%p 낮추어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이월결손금제도와 세무조정도 유효세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반면 비과세소득을 포함하는 소득공제제도는 제조업의 유효세율 결정 및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명목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2005년 제조업의 유효세율 변화가 거의 없었던 것은 주로 세액공제 등을 통한 유효세율 인하폭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명목세율 2%p 인하의 효과는 세액공제의 감소로 인한 1.2%p 상승과 이월결손금 공제 감소로 인한 0.9%p 증가 효과로 인해 실질적인 부담 인하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운수·창고·통신업의 경우 제조업과 유사한 유효세율 수준과 변화구조를 보여준다.

금융보험업의 경우 시설투자과 감가상각, 소득공제 등의 측면에서 제조업과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인 유효세율은 전체 법인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제조업과 유사한 13.8~11.0% 수준을 보여준다. 낮은 유효세율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월결손금 공제로 2005년 기준 9.3%p 인하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금융소득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소득공제제도 등의 효과로 유효세율은 다시 1.9%p 낮아졌다. 반면 제조업과 운수·창고·통신업과 같은 전통적인 산업에서 세부담 감소에 큰 역할을 하는 세액공제의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대비 유효세율 변화는 -2.8%p로 명목세율 인하폭보다 높게 나타났다. 유효세율 변화의 가장 큰 원인은 이월결손금 공제의 축소로 인한 세율 변화 +6.8%p, 세무조정에 의한 변화 -5.5%p, 명목세율 인하 -2.0%p로 나타났다.

건설업과 도매업은 2005년 평균 유효세율이 각각 20.3%, 29.9%로 전체 법인 평균 14.6%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높은 유효세율의 원인은 상대적으로 높은 세무조정과 낮은 세액공제 효과라 할 수 있다. 세무조정으로 인

건설업과 도매업은 2005년 평균 유효세율이 각각 20.3%, 29.9%로 전체 법인 평균 14.6%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도매업의 경우 세무조정으로 인한 유효세율 증가가 2004년 3.4%p에서 2005년 16.0%p로 크게 증가하였다.

한 유효세율 변화는 2005년 기준 각각 2.6%p와 16.0%p로 전체평균 -0.4%p와 큰 차이를 보여준다. 즉 전체 법인들이 세무조정을 통해 유효세부담을 소폭 낮추어 갈 때 건설업과 도매업은 큰 폭으로 세부담이 증가한 것이다. 이는 손익 귀속 사업연도의 차이 등 산업 고유의 특성에 의한 것일 수도 있으나 세법이 허용하지 않는 비용 등의 지출, 낮은 수익성으로 인한 세무 대응의 미숙 등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 낮은 세율 부과소득의 비중에 따른 세부담 인하효과를 살펴보는 기타요인⁸⁾의 경우 건설업과 도매업은 각각 -1.8%p, -3.0%p의 효과를 보여 전체 법인평균 -1.1%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즉, 도매업 등의 경우, 흑자법인들의 소득이 다른 산업에 비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제조업과 운수·창고·통신업의 경우, 흑자기업의 소득이 크게 집중되어 있어 대부분이 최고세율로 과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2004년 대비 유효세율 변화를 살펴보면 명목세율의 인하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과 도매업의 유효세율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증가하였다. 그 원인은 역시 세무조정으로 인한 세부담의 대폭적 증가인데 도매업의 경우 세무조정으로 인한 유효세율 증가가 2004년 3.4%p에서 2005년 16.0%p로 크게 증가하였다.

〈표 5〉 산업별 법인세 유효세율 변화요인(2004 귀속소득)

(단위: %)

	명목세율	세무조정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세액공제	기타	법인세 ¹⁾	유효세율 ²⁾
전체	27.0	0.9	-5.4	-0.6	-5.2	-1.0	6.5	22.1(15.6)
제조업	27.0	-1.7	-2.9	0.0	-8.5	-0.5	7.2	20.6(13.4)
건설업	27.0	1.6	-3.6	0.0	-2.5	-2.3	6.7	27.0(20.3)
도매업	27.0	3.4	-3.2	0.0	-2.9	-3.0	6.5	27.8(21.3)
운수창고 통신	27.0	-1.9	-5.4	-2.6	-4.4	-0.6	7.2	19.4(12.2)
금융보험	27.0	7.1	-16.1	-2.6	-0.2	-1.5	3.8	17.6(13.8)
서비스	27.0	-1.1	-4.5	-0.1	-4.1	-1.8	6.8	22.3(15.4)

주: 1) 법인세는 당기순이익에서 차감된 법인세 비용에 의한 유효세율 증가폭임. 2000~2003년 수치는 2004년 귀속소득의 유효세율(법인세 비용/당기순이익)을 적용하여 계산
2) 괄호 안은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에 대한 유효세율.

8) 기타요인에 의한 효과는 법인세율의 누진도에서 나타나는 효과로 누진도가 높을수록 세부담 인하효과가 낮아지게 된다. 즉 낮은세율로 과세되는 법인소득의 비중이 높을수록 최고명목세율과 유효세율의 차이가 커지게 된다.



〈표 6〉 산업별 법인세 유효세율 변화요인(2005 귀속소득)

(단위: %)

	명목세율	세무조정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세액공제	기타	법인세 ¹⁾	유효세율 ²⁾
전체	25.0	-0.4	-4.4	-0.6	-4.0	-1.1	5.4	19.9(14.6)
제조업	25.0	-1.8	-2.0	0.0	-7.3	-0.6	5.9	19.2(13.3)
건설업	25.0	2.6	-3.0	0.0	-2.5	-1.8	5.6	25.9(20.3)
도매업	25.0	16.0	-4.5	0.0	-3.6	-3.0	5.3	35.3(29.9)
운수창고 통신	25.0	1.7	-4.6	-2.8	-5.4	-0.7	5.9	19.1(13.2)
금융보험	25.0	-1.6	-9.3	-1.9	-0.1	-1.1	4.0	15.0(11.0)
서비스	25.0	-1.9	-3.6	0.0	-3.0	-1.7	5.7	20.4(14.8)

주: 1) 법인세는 당기순이익에서 차감된 법인세 비용에 의한 유효세율 증가폭임. 2000~2003년 수치는 2004년 귀속소득의 유효세율(법인세 비용/당기순이익)을 적용하여 계산
2) 괄호 안은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에 대한 유효세율

법인세 부담을 기업규모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낮은 세율의 영향으로 자산규모가 작을수록 유효세율이 낮아지는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자산규모와 유효세율과의 양(+)의 상관관계는 1천억원 초과 기업에서는 음(-)의 상관관계로 바뀐다.

법인세 부담을 기업규모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낮은 세율의 영향으로 자산규모가 작을수록 유효세율이 낮아지는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자산규모가 5억원 이하인 기업의 경우 유효세율이 2.7%로 상당히 낮는데 주원인은 법인세 누진 성과에 따른 것이며(-10.9%p) 이월 결손금의 영향도 6.6%p 유효세율 인하로 상당하다. 유효세율은 자산규모가 증가할수록 높아져 자산규모 500억~1000억원 그룹의 경우 25.8% 수준까지 높아져 최고 명목세율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 준다. 주원인은 무려 26.1%p 세율 인상을 야기하는 세무조정의 영향으로 동 규모의 기업 수익구조가 세무회계 조정에 따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세액공제,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등 법인세제가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다른 규모의 법인들에 비해 많이 누림에도 불구하고 최종 유효세율은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자산규모와 유효세율과의 양(+)의 상관관계는 1천억원 초과 기업에서는 음(-)의 상관관계로 바뀐다. 가장 자산규모가 큰 5천억원 이상 기업의 경우 유효세율이 13.7%에 불과하여 자산규모 20억~50억원 기업집단과 유사한 부담을 보여준다. 역시 낮은 유효세율의 결정에는 낮아진 세무조정 효과가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기업들은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이용하여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일정규모 이하의 기업의 경우, 자원투입의 한계 등으로 조세부담보다는 기업성장 등에 중점을 둔다면 1천억원 자산규모 이상의 기업은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을 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이러한 기업규모별 유효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법인세 부담의
증가는 주로 법인의 이익률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율의 차이는 향후 법인세제 운영에 있어 거대기업의 조세회피 문제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자산규모 1천억원 수준이 우리나라에 있어 조세회피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는 기업성장 단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표 7〉 자산규모별 법인세 유효세율 변화요인(2005 귀속소득)

(단위: %)

	명목세율	세무조정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세액공제	기타	법인세 ¹⁾	유효세율 ²⁾
전체	25.0	8.4	-4.4	-0.6	-4.0	-1.1	-3.4	19.9(14.6)
5억원 이하	25.0	1.9	-6.6	-0.7	-0.7	-10.9	-2.2	5.9(2.7)
10억원 이하	25.0	5.5	-3.1	-0.2	-2.1	-9.9	-2.3	13.0(9.6)
20억원 이하	25.0	7.4	-2.5	-0.8	-3.1	-7.4	-2.7	15.9(11.9)
50억원 이하	25.0	9.1	-2.5	-0.6	-4.6	-4.1	-3.2	19.0(14.4)
100억원 이하	25.0	11.3	-3.1	-1.5	-5.9	-2.0	-3.6	20.3(15.1)
200억원 이하	25.0	11.5	-4.2	-1.9	-5.6	-1.1	-3.7	20.0(14.7)
500억원 이하	25.0	12.7	-4.1	-1.6	-5.4	-1.1	-3.7	21.8(16.5)
1,000억원 이하	25.0	26.1	-5.8	-2.3	-7.2	-0.9	-3.7	31.2(25.8)
5,000억원 이하	25.0	11.9	-3.6	-1.0	-3.7	-0.6	-3.8	24.3(18.8)
5,000억원 초과	25.0	6.6	-4.5	-0.2	-3.7	0.0	-3.9	19.3(13.7)

주: 1) 법인세는 당기순이익에서 차감된 법인세 비용에 의한 유효세율 증가폭임. 2000~2003년 수치는 2004년 귀속소득의 유효세율(법인세 비용/당기순이익)을 적용하여 계산
2) 괄호 안은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에 대한 유효세율.

IV. 결론

법인소득 과세제도는 금융시스템의 국제화로 자본이동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외국자본의 유치와 국내기업의 경쟁력 유지 측면에서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자본 소유주의 세후소득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투자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 동 지역의 고용 및 성장여력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OECD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법인세 부담의 변화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보다 경쟁력 있는 법인세제 구축에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김우철(2007)의 방법을 확장한 Auerbach and Poterba(1987), Auerbach (2007)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기존의 유효세율 분석과 함께 법인세수와 긴밀한 연관관계를 가지는 법인부문의 경제내 비중, 법인의 수익성 변화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법인세 부담의 증가는 주로 법인의 이익률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부담을 결정하는 3가지 요인 중, 국내부가가치에서 법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과 유효법인세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법인세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으나 법인의 이익률이 더욱 빨리 증가하여 전체적인 세부담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내 부가가치 중 법인부분의 비중은 2000년 41.4% 수준에서 2005년 35.7%로 감소하였고 당기순이익에 대한 평균세율도 2000년 27.5%에서 법인세율 인하 등의 영향으로 2005년에는 19.9%로 낮아져 전체 세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법인소득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로 정의되는 법인의 이익률은 2000년 22.7%에서 2005년 47.3%로 증가하여 전체 법인세 부담률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향후에도 법인세수 비중이 증가할 것인가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부가가치 중 법인소득의 비중과 법인 이익률의 경우 장기적으로 안정될 것이기 때문에 법인세수 비중에 대한 유효세율의 영향력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즉, 향후 법인세수 변화는 유효세율의 변화에 더욱 의존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차감전 순이익에 대한 세액의 비율)은 2000년 20.3%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져 2005년에는 14.6%로 5.7%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 연도 명목세율 대비 개선 폭(=명목세율-유효세율)은 2000년 7.7%p에서 2005년에는 10.4%p로 증가하여 법인의 세부담은 명목세율이 시사하는 것보다 더 낮아졌다. 법인세 유효세율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세무조정 항목으로 나타났다. 2000년의 경우 세무조정에 따라 법인세 유효세율은 5.5%p 증가하였으나 2003년 이후 급격히 하락하여 2005년에는 오히려 유효세율을 0.4%p 낮추어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변화폭이 5.9%p에 달하였다. 이는 동 기간 유효세율 개선 폭 5.7%p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동 부문에 대한 보다 세분화된 분석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 공표자료의 한계로 세무조정에 포함되는 감가상각비의 차이, 손익귀속사업연도 차이의 반영, 기부금 및 접대비의 한도적용 등 여러 요인 중 무엇이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포괄적으로 세무조정과 관련된 정부정책은 접대비 손금한도 강화 등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가 제공하는 유효세율 변화가 세부담을 급격히 낮추어 준 결과는 법인들의 조세문제에 대한 사전적 대응 노력이 과거보다 크게 높아졌음을 시사한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활동의 국제화가 급격히 진전됨에 따라 조세문제에 대한 사전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가 제공하는 유효세율 변화가 세부담을 급격히 낮추어 준 결과는 법인들의 조세문제에 대한 사전적 대응 노력이 과거보다 크게 높아졌음을 시사한다.



향후 법인세제 운영에 있어
자산규모 1천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조세회피 문제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적 대응으로 세무조정 영향 축소 가능. 한편 세무조정 효과가 기업회계기준과 세무회계기준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조세부담 효과라면 그 절대적 격차가 줄어드는 것은 조세제도의 투명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변화라 할 수 있다.

그 외 유효세율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이월결손금제도와 각종 세액공제제도의 효과이다. 이월결손금제도의 경우 외환위기 등의 영향으로 2000년 유효세율 인하효과가 7.0%p에 달하였으나 기업의 실적개선에 따라 점차 낮아져 2005년에는 4.4%p 인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동 기간 이월결손금제도로 인한 유효세율 변화는 법인의 세부담을 2.6%p 인상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세액공제의 영향도 상당한 유효세율 인하효과를 보여주는데 2000년 5.2%p에서 2005년 4.0%p로 그 효과성은 소폭 낮아졌다. 즉, 세부담 수준을 상당히 낮추어 주는 제도로 기능하고 있으나 2000~2005년 기간 동안에는 유효 세부담을 1.2%p 증가시키는 효과를 보여준다. 이러한 세액공제제도의 역할 축소는 법인 투자의 전반적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산업별 유효세율 결정요인을 살펴보면 분석기간 동안 제조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업의 세부담이 전체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을 나타내며 건설업, 도매업은 평균보다 높은 수준, 서비스업은 전체 평균과 유사한 세부담 수준이다. 유효세율이 낮은 업종의 경우 다른 업종에 비해 이월결손금,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으로 인한 세부담 인하효과가 높게 나타났으며 유효세율이 높은 업종은 반대로 세무조정으로 인해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반면 이월결손금,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의 효과는 낮게 나타난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제공되는 세액공제제도는 제조업과 운수·창고·통신업에서 상당한 세부담인하 효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기준 세액공제제도는 두 산업의 유효세율을 각각 7.3%p, 5.4%p 낮추어 세부담 감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액공제제도가 거의 없는 금융보험업의 0.1%p 인하효과와 비교하면 큰 세제혜택이다.

법인 자산규모별 유효세율은 자산규모가 증가할수록 높아져 자산규모 500억~1천억원 그룹의 경우 가장 높은 25.8%에 달하나 동 규모이상에서는 점차 감소하여 자산규모가 5천억원 초과 기업의 경우 유효세율이 13.7%에 불과하여 자산규모 20억~50억원 기업집단과 유사한 수준이다. 대규모 기업의 낮은 유효세율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무조정 효과가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기업들은 다양한 인적, 물적자본을 이용하여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향후 법인세제 운영에 있어 자산규모 1천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조세회피 문제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낮은 세무조정 효과가 적법한 노력에 의한 것이라면 기업의 절대적 세부담 수준을 낮추고 투명하게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만약 조세회피 노력이 불법적인 것이라면 대기업에 대한 세무행정의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기업의 유효세율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무조정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큰 차이는 투자사업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투자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KIP**

<참고문헌>

- 김우철, 『외환위기 이후 법인세수 변동요인 분석』, 연구보고서 07-08, 한국조세연구원, 2007
- 김우철, 『법인세 부담이 기업의 투자활동에 미치는 효과 분석』, 연구보고서 05-08, 한국조세연구원, 2005
- 김진수 · 박형수 · 안종석, 『주요국의 법인세제 변화추이와 우리나라 법인세제 개편방향』, 연구보고서 03-05, 한국조세연구원, 2003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6, 2007.
- 한국은행 Homepage, 경제통계시스템.
- Auerbach and Poterba, “Why have corporate tax revenues declined?,” Working Paper No. 2118, NBER, 1987
- Auerbach, “Why have corporate tax revenues declined? Another Look,” CESifo Economics Studies, Ifo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2007



우리나라 재정지출의 소비 대체효과 추정



송호신

한국조세연구원 초청연구위원(hsong@kipf.re.kr)

재정지출이 가계후생에 주는
영향에 관한 이론적인
모델들은 매우 다양하며
실증분석 방법까지 감안한다면
그 다양성은 한층 더 할 것이다.
그러나 이론적인 모델과
그 실증적인 추정방법이 일관적인
경우는 쉽게 찾아볼 수 없다.

I. 서론

최근 우리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는 우려 속에 재정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고에서는 재정지출이 가계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 그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케인지언은 재정지출의 확대가 소득의 증가를 가져오고 그에 따라 가계의 소비가 증가하여 가계후생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보는 반면, 고전파는 재정지출 확대가 민간투자를 구축하여 소득 증가를 가져오지 못함에 따라 가계 소비에 영향을 주지 못하여 가계후생에도 변화를 주지 못한다고 본다. 이러한 양 극단적인 견해의 존재가 시사하듯 재정지출이 가계후생에 주는 영향에 관한 이론적인 모델들은 매우 다양하며 실증분석 방법까지 감안한다면 그 다양성은 한층 더 할 것이다. 그러나 이론적인 모델과 그 실증적인 추정방법이 일관적인(coherent) 경우는 쉽게 찾아볼 수가 없다.

본고에서는 이론적인 모델과 실증적인 방법론이 일관적인 Aschauer(1985)를 소개하고 그것을 기초로 재정지출이 가계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Aschauer(1985)는 비내구재와 서비스 소비를 통해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개인의 최적소비행위를 모델화하고 그 가운데 정부지출이 개인의 후생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¹⁾. 구체적으로 말하면 재정지출 가운데 어느 정도를 자신의 유효소비로 전환하여 받아들이는가를 추정함으로써 재정지출이 개인의 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Aschauer

1) 내구재를 포함할 경우 과거의 지출이 일정기간 동안 계속 개인의 효용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발생한다.



(1985)를 우리나라에 적용한 결과 재정지출의 소비대체효과는 전반적으로는 음수로 추정되어 재정지출로 인해 가계후생이 저하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재정지출이 왜 비재화(bads) 또는 부정적인 외부성(negative externality)으로 작용하는가라는 의문점을 낳는다. 그러나 이러한 의문점은 Aschauer (1985)보다 완화된 가정을 이용하여 본고에서 제기한 추정방법을 적용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었다. 새로운 추정방법을 이용하여 재정지출을 경상지출과 자본지출로 구분하여 모두 이용할 경우 소비대체성은 경상지출의 경우는 양수로 추정된 반면 자본지출의 경우는 음수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같은 크기의 재정지출이라도 자본지출보다는 경상지출이 가계 후생 증대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할 뿐만 아니라 경상지출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지출이 가계의 후생수준을 저하시키기보다는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Aschauer (1985) 및 Graham (1993)을 간단히 소개한 후 부분선형모형(Partial Linear Model)을 이용한 새로운 추정방식을 제안하고 그와 관련된 시사점 및 한계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II. 본론

1. 재정지출의 소비대체 효과 추정에 관한 기존 연구

정부지출의 소비대체 효과 추정은 Aschauer(1985)에 의해서 제기되었다. Aschauer(1985)는 개인의 최적소비행위를 고려한 모델에 기초한 실증분석을 통해 소비가 정부지출에 의해 얼마 만큼 대체되는가를 추정하였다. 즉 생애소득과 생애예산제약하에서 대표적인 개인은 정부지출에 따라 자신의 소비를 얼마나 조정하는가를 모델화하고 그에 따른 추정방식을 제시하였다²⁾.

모델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대표적인 개인은 생애 유효소비를 결정함으로써 생애효용을 극대화한다.

$$(1) V_t = \sum_{j=0}^{\infty} (1/(1+\delta))^j u(C_{t+j}^*)$$

여기서 유효소비 $C_t^* = C_t + \theta G_t$ 로 정의되고, C_t 는 개인의 소비를, G_t 는 정부지출이다³⁾. 한편 정부부문까지 고려된 개인의 제약식은 다음과 같다.

같은 크기의 재정지출이라도 자본지출보다는 경상지출이 가계 후생 증대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할 뿐만 아니라 경상지출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지출이 가계의 후생수준을 저하시키기보다는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 본고에서 Aschauer (1985) 방법론을 기초로 한 이유는 이론적 모델과 일관성 있는 실증분석 방법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정방식은 연구자의 자의성이 배제되기 어려운 축약형 방식보다 내생성이나 누락된 설명변수 등으로 생길 수 있는 편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3) $1/(1+\delta)$ 는 개인의 시간할인율이다.



Aschauer는 재정지출을 고려하고 있는 대표적인 개인이 유효소비를 통해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모델을 설정하고 재정지출의 가계소비 대체 효과로 해석할 수 있는 θ 를 추정하였다.

$$(2) \sum_{j=0}^{\infty} (1/(1+r))^j C_{t+j}^* = (W_t - B_t) + \sum_{j=0}^{\infty} (1/(1+r))^j [N_{t+j} + (\theta - 1)G_{t+j}],$$

W_t 는 만기가 1기인 채권의 초기 보유량, N_t 는 t기의 노동소득, B_t 는 만기가 1기인 정부의 채무, r 은 이자율이다⁴⁾.

Aschauer는 재정지출을 고려하고 있는 대표적인 개인이 유효소비를 통해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모델을 설정하고 재정지출의 가계소비 대체 효과로 해석할 수 있는 θ 를 추정하였다. 효용함수를 이차식으로 가정하고 불확실성하에 위의 극대화문제를 풀면 다음과 같은 오일러 등식을 얻게 된다.

$$(3) E_t C_{t+1}^* = \alpha + \beta C_t^*$$

여기서 $\alpha = [(r - \delta)/(1 + r)] \bar{C}^*$, $\beta = (1 + \delta)/(1 + r) \bar{C}^*$ 는 포만점, 그리고 E_t 은 t시점에서의 기대값을 의미한다. 여기에 유효소비 C_t^* 의 정의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게 된다.

$$(4) C_t = \alpha + \beta C_{t-1} + \beta \theta G_{t-1} - \theta G_t^e$$

여기서 $G_t^e = E_{t-1} G_t$ 이다. Aschauer는 식 (4)를 다음과 같이 설정(specification)하였다.

$$(5) C_t = \alpha + \beta C_{t-1} + \beta \theta G_{t-1} - \theta G_t^e + u_t$$

여기서 G_t^e 는 t-1기 시점에서 t기 정부지출의 기대를 의미한다. 한편, G_t^e 를 실증적으로 다룰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Aschauer는 다음과 같은 보조식(auxiliary equation)을 이용하였다.

$$(6) G_t = \gamma + \varepsilon(L)G_{t-1} + w(L)D_{t-1} + v_t$$

여기서 G 는 1인당 정부지출, D 는 1인당 재정적자, $\varepsilon(L) = \sum_1^n \varepsilon_i L^{i-1}$, $w(L) = \sum_1^m \omega_j L^{j-1}$, L 은 시차연산자, $E(v_t | I_{t-1}) = 0$, I_{t-1} 은 t-1기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들의 집합이다⁵⁾. 따라서 결국 식 (4)는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식으로 구성된 시스템으로 표현되어, 결국 시스템을 추정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4) 식 (6)의 도출은 Aschauer (1985)를 참조하십시오.

5) $E(\cdot | I_{t-1}) = E_{t-1}(\cdot)$



$$(7a) C_t = \delta + \beta C_{t-1} + \eta(L)G_{t-1} + \mu(L)D_{t-1} + u_t$$

$$(7b) G_t = \gamma + \varepsilon(L)G_{t-1} + \omega(L)D_{t-1} + v_t$$

합리적인 기대가 반영된다면 식 (8)과 같은 모수들 간의 제약식이 유효하게 된다.

$$(8) \delta = \alpha - \theta\gamma$$

$$\eta_i = \begin{cases} \theta(\beta - \varepsilon_i) & i = 1 \\ -\theta\varepsilon_i & i = 2, \dots, n \end{cases}$$

$$\mu_j = -\theta\omega_j \quad j = 1, 2, \dots, m.$$

Aschauer는 두 개의 오차항(u_t, v_t)이 결합정규분포(jointly normal distribution)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제약식 (8)하에서 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이용하여 θ 를 추정하였다. 상술한 Aschauer(1985)의 모형을 적용한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지출의 소비대체성은 유의수준 1%에서 의미를 갖는 -0.25로 추정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지출의 증가가 전반적으로 가계후생의 증가로 이어지지 못했음을 의미한다⁶⁾. 한편 우도비 테스트 결과 제약식 (8)은 유효한 것으로 나와 합리적인 기대가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⁷⁾.

한편 Graham(1993)은 Aschauer(1985)방법이 데이터의 기간이나 기준년이 다른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결과가 불안정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재정지출의 소비대체 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제안하였다. Graham은 Campbell과 Mankiw (1990)에서 제시한 방법과 비슷하게 다음과 같은 행태식을 설정하고 도구변수를 이용한 추정방식을 제안하였다⁸⁾.

$$(9) \Delta C_t = \alpha' - \theta \Delta G_t + \lambda \Delta Y_t + e_t,$$

여기서 Y 는 가처분소득이다.

Graham(1993)은 Aschauer(1985)의 불안정한 추정 결과가 소득 등의 변수를 고려해주지 못한 데 기인한 것일 수 있다는 가정하에 정부지출 및 재정적자의 과거시차 변수들을 도구변수로 이용하여 추정하면 Aschauer(1985)의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정방식도 훨씬 간단하다는 점을

Aschauer(1985)의 모형을 적용한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지출의 소비대체성은 유의수준 1%에서 의미를 갖는 음수로 추정되었다.

6) 자세한 추정 결과는 부록에 나와 있다.

7) 우도비(likelihood ratio, LR) 검정 통계량 $-2\ln(L_r/L_u)$ 은 표본이 커질수록 $\chi^2(2)$ 를 따르고 $P[\chi^2(2) > 5.99] = 0.05$ 이다. 추정결과 $-2\ln(L_r/L_u) = 0.71$ 이 나와 제약식은 5% 유의수준에서 기각될 수 없었다.

8) Graham에 따르면 이는 Campbell과 Mankiw (1990)가 제안한 행태식과 매우 흡사한데 큰 차이점은 여기서는 수준변수를 차분한 반면 Campbell과 Mankiw (1990)은 log 변수를 차분하였다는 점이다.



Graham(1993)에서 주목할 만한 아이디어는 정부지출에 대한 예상과 소득이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강조하였다. 특히 Graham은 식 (9)에서 $\lambda=0$ 는 Aschauer 모델에서는 $\beta=1$ 이 된다고 주장하며 $\lambda=0$ 인 경우와 $\lambda \neq 0$ 인 경우를 각각 추정하였다⁹⁾. 그러나 추정식 (9)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모델과의 일관성(coherence)이 없다는 점, 그리고 추정식 (9)의 추정 결과가 도구변수의 선택에 의존한다는 점 등은 한계로 남는다. Graham이 제안한 방식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경우 소비대체효과(θ)는 -0.18 로 추정되었으나 표준오차가 비교적 크게 추정되어 통상적인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전반적으로 우리의 현실을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부분선형모형(Partial Linear Model)을 이용한 재정지출의 소비대체 효과 추정

본절에서는 Aschauer(1985)의 이론적인 모델에 Graham(1993)의 아이디어를 반영한 새로운 추정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Graham(1993)에서 주목할 만한 아이디어는 정부지출에 대한 예상과 소득이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beta=1$ 인 경우 Aschauer (1985)가 제안한 식 (5)와 Graham이 제안한 식 (9)를 비교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beta=1$ 인 경우 식 (5) 및 식 (9)는 각각 다음과 같이 된다.

$$(5-1) \Delta C_t = \alpha - \theta \Delta G_t + \theta(G_t - G_t^e) + u_t$$

$$(9-1) \Delta C_t = \alpha' - \theta \Delta G_t + \lambda \Delta Y_t + e_t$$

교란항이 같다는 전제하에 양자가 같아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10) \alpha + \theta(G_t - G_t^e) = \alpha' + \lambda \Delta Y_t$$

이는 재정지출의 예측오차가 소득의 변화분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양자간의 관계를 보다 일반화하여 Aschauer(1985)와 Graham(1993)의 아이디어를 모두 포괄하는 새로운 추정방식을 생각해보자. 먼저, Aschauer(1985)가 상정한 모델에서 도출되는 식 (4)를 차분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는다.

9) 또한 Graham은 $\beta=1$ 이라는 제약이 실증분석의 결과에 비추어 보아도 무리한 제약식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11) \Delta C_t = \beta \Delta C_{t-1} + \beta \theta \Delta G_{t-1} - \theta (G_t^e - G_{t-1}^e) + \Delta u_t,$$

여기서 $G_t^e = E_{t-1} G_t$, $G_{t-1}^e = E_t G_{t-2}$ 이다.

재정지출 예상치가 소득변화와 관계가 있다는 Graham(1993)의 암묵적인 가정 대신 다음의 가정을 명시적으로 도입하자.

가정: $G_t^e - G_{t-1}^e = f(y_{t-1} - y_{t-2}) = f(\Delta y_{t-1})$, 여기서 함수 f 의 명시적인 함수 형태는 알려져 있지 않다.

위의 가정은 재정지출 예상치의 차이가 소득의 변동에 반영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소득의 변동에 재정지출 예상치의 차이가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나타내 주는 함수의 형태(functional form)를 우리는 알 수 없다고 가정하는 것이다¹⁰⁾. 이러한 가정은 Aschauer(1985)가 재정지출 예상치를 단순히 재정적자 및 재정지출의 선형함수로 가정한 것에 비해 크게 완화된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가정을 반영하면 식 (11)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12) \Delta C_t = \beta \Delta C_{t-1} + \beta \theta \Delta G_{t-1} - \theta f(\Delta y_{t-1}) + \Delta u_t$$

식 (12)는 Robinson(1988)에서 소개된 부분선형모형(Partial Linear Model)에 해당하고 아래와 같은 조건하에서 간단하게 추정될 수 있다.

- (i) $E(\Delta C_t | \Delta C_{t-1}, \Delta G_{t-1}, \Delta y_{t-1}) = \beta \Delta C_{t-1} + \beta \theta \Delta G_{t-1} - \theta f(\Delta y_{t-1})$
- (ii) 조건부분산 $V(\Delta u_t | \Delta C_{t-1}, \Delta G_{t-1}, \Delta y_{t-1})$ 은 설명변수에 의존¹¹⁾
- (iii) 여타 정규조건(Other regularity conditions, 자세한 사항은 Robinson (1988) 참조)

위의 조건하에서 다음과 같은 식 (13)을 얻게 된다.

$$(13) \Delta C_t - E(\Delta C_t | \Delta y_{t-1}) = \beta [\Delta C_{t-1} - E(\Delta C_{t-1} | \Delta y_{t-1})] + \beta \theta [\Delta G_{t-1} - E(\Delta G_{t-1} | \Delta y_{t-1})] + \Delta u_t$$

따라서 $E(\Delta C_t | \Delta y_{t-1})$, $E(\Delta C_{t-1} | \Delta y_{t-1})$ 및 $E(\Delta G_{t-1} | \Delta y_{t-1})$ 은

이러한 가정은 Aschauer(1985)가 재정지출 예상치를 단순히 재정적자 및 재정지출의 선형함수로 가정한 것에 비해 크게 완화된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10) 즉, 우리는 그 형태가 선형인지 이차식인지 알 수 없다.

11) Robinson(1988)은 동분산성(homoskedasticity)을 가정하였으나 여기서는 더욱 일반적인 이분산성(heteroskedasticity)을 가정하겠다.



비모수적(nonparametric)인 방법인 Nadaraya와 Watson의 커널 회귀식(kernel regression)을 이용하여 추정된 뒤 추정값들을 이용하여 우리가 관심을 갖는 모수인 θ 를 추정할 수 있다¹²⁾.

비모수적인 추정을 위해서 편의상 데이터를 정규화하였다. 즉 Δy_t 의 표준편차($S_{\Delta y}$)로 데이터를 나누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14) \Delta C^* = \Delta C / S_{\Delta y}, \Delta y^* = \Delta y / S_{\Delta y}, \Delta u^* = \Delta u / S_{\Delta y}$$

식 (14)를 이용하여 식 (13)을 다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15) \Delta C_t^* - E(\Delta C_t^* | \Delta y_{t-1}^*) = \beta [\Delta C_{t-1}^* - E(\Delta C_{t-1}^* | \Delta y_{t-1}^*)] + \beta \theta [\Delta G_{t-1}^* - E(\Delta G_{t-1}^* | \Delta y_{t-1}^*)] + \Delta u_t^*$$

관심대상 모수인 θ 를 추정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β 에 제약을 주어 추정을 하고 그 결과를 검정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우회적인 방법을 따르는 이유는 아래의 무제약하에서 얻은 추정치인 $\theta = \psi_1 / \psi_2$ 를 직접적으로 검정하기가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추정값인 $\hat{\theta} = \hat{\psi}_1 / \hat{\psi}_2$ 의 점근분포(asymptotic distribution)를 다루기가 쉽지 않고 θ 의 참값에 대한 아이디어도 사전적으로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¹³⁾.

$$(15-1) \Delta C_t^* - E(\Delta C_t^* | \Delta y_{t-1}^*) = \psi_1 [\Delta C_{t-1}^* - E(\Delta C_{t-1}^* | \Delta y_{t-1}^*)] + \psi_2 [\Delta G_{t-1}^* - E(\Delta G_{t-1}^* | \Delta y_{t-1}^*)] + \Delta u_t^*$$

먼저, Graham이 지적했듯이 개인의 시간할인율과 이자율이 같다는 가정 하에서 식 (15)의 θ 를 추정하고자 한다¹⁴⁾. 이 경우 소비대체 효과를 반영하는 모수인 θ 에 대한 추정값은 -0.172로 이분산성(heteroskedasticity)을 고려한 표준오차는 0.094로 추정되었다¹⁵⁾. 한편 개인의 시간할인율과 이자율이 같다는 가정을 무제약하에서의 추정결과와 비교하여 F -검정한 결과 유의수준 5%에서는 기각되었으나 1%에서는 기각할 수 없었다.

한편 개인의 시간할인율과 이자율이 같다는 가정 대신에 Aschauer (1985)의 추정방법을 적용하여 얻은 결과인 $\beta = 0.9$ 를 제약식으로 이용한 결과, θ 는 -0.170로 추정되었고 결과에는 이분산성(heteroskedasticity)을 고려한 표준오차는 0.094로 추정되어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귀무가설 $H_0: \beta = 0.9$ 에 대

12) 추정을 위해서 본고에서는 triweight kernel을 사용하였고 bandwidth 선택은 Hadle(1991)의 rule of thumb 방식을 따랐다.

13) 그러나 식 (13-1)의 추정치가 따르는 점근분포(asymptotic distribution)가 정규분포라는 사실을 이용하고 그 비율이 코쉬(Cauchy)분포를 따른다는 잘 알려진 사실을 이용하면 ψ_1 및 ψ_2 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14) $\sqrt{n}(\hat{\psi}_1 - \psi_1) \rightarrow^d N(0, V_1)$,
 $\sqrt{n}(\hat{\psi}_2 - \psi_2) \rightarrow^d N(0, V_2)$ and

(15) $\frac{\sqrt{n}(\hat{\psi}_2 - \psi_2)}{\sqrt{n}(\hat{\psi}_1 - \psi_1)} \rightarrow^d Cauchy$
 $(0, \sqrt{V_2} / \sqrt{V_1})$.

Cauchy(a, b)에서 a는 위치를 정하는 모수(location parameter)이고 b는 단위를 정하는 모수(scalar parameter)이다.

14) 이는 $\beta = 1$ 을 의미하며 Graham (1993)은 이것을 무해한(innocuous) 가정이라고 표현하였다.

15) 이는 유의수준 5%에서는 귀무가설 $\theta = 0$ 를 기각하지 못하나 유의수준 10%에서는 기각할 수 있는 정도의 표준오차임을 의미한다.



한 F -검정통계량은 3.704이 나와 통상적인 유의수준인 1% 및 5%에서 기각할 수 없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Aschauer 추정방법을 적용한 결과와 새롭게 제기한 추정방법을 이용한 결과 소비대체성은 모두 음수로 추정되었다. 음수의 소비대체성은 유효소비($C^* = C + \theta G$)를 소비보다 작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가계의 후생이 정부지출로 인해 하락하게 된다는 해석을 낳게 만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재정지출을 성질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소비대체 효과를 추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재정지출을 경상지출(G_1)과 자본지출(G_2)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식을 설정하였다¹⁶⁾.

$$(16) \Delta C_t^* - E(\Delta C_t^* | \Delta y_{t-1}^*) = \beta [\Delta C_{t-1}^* - E(\Delta C_{t-1}^* | \Delta y_{t-1}^*)] + \beta \theta_1 [\Delta G_{1,t-1}^* - E(\Delta G_{1,t-1}^* | \Delta y_{t-1}^*)] + \beta \theta_2 [\Delta G_{2,t-1}^* - E(\Delta G_{2,t-1}^* | \Delta y_{t-1}^*)] + \Delta u_t^*$$

여기서 G_1 및 G_2 는 각각 경상지출(current expenditure) 및 자본지출(capital expenditure)이고 θ_1 및 θ_2 는 각각의 소비대체성이다. 개인의 시간할인율과 이자율이 같다는 가정 아래에서 경상지출의 소비대체 효과(θ_1)는 0.499, 그리고 자본지출의 소비대체성(θ_2)은 -0.705로 추정되었고 각각의 표준오차는 각각 0.482와 0.520로 추정되었다. 비록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의 추정값은 아니지만 그 부호는 우리의 직관과 부합하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재정지출 가운데 자본지출은 가계후생을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 반면 경상지출은 가계후생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음을 시사한다¹⁷⁾. 한편 경상지출과 자본지출을 설명변수로 이용한 결과 유효소비($C^* = C + \theta_1 G_1 + \theta_2 G_2$)는 경상지출의 높은 비중이 기인하여 정부지출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의 소비(C)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 정부지출이 가계의 후생수준을 높이는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현실과 부합하는 것으로 단순히 전체 재정지출만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성질별로 재정지출을 구분해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시사한다.

성질별 재정지출을 고려한 추정결과는 재정지출 가운데 자본지출은 가계후생을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 반면 경상지출은 가계후생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음을 시사한다.

16) 경상지출과 자본지출과 같은 구분 외에도 분야별 지출과 같은 다른 의미있는 분류가 가능하나 자료접근의 용이성 때문에 경상지출 및 자본지출의 분류를 이용하였다.

17) 한편 개인의 시간할인율과 이자율이 같다는 가정은 F -검정결과 통상적인 유의수준인 1% 및 5%에서는 기각할 수 없었다. 한편 $\beta = 0.9$ 를 제약식으로 대신 이용한 결과, θ_1 및 θ_2 는 각각 0.508 및 -0.712로 추정되었고 각각의 표준오차는 각각 0.479와 0.517로 추정되었고 제약식 $H_0: \beta = 0.9$ 도 유의수준인 1% 및 5%에서는 기각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와 $\beta = 1$ 인 경우와 큰 차이가 없었다.



경상지출은 유효소비를
 높여주는 방향으로, 자본지출은
 유효소비를 낮추어주는 방향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Ⅲ.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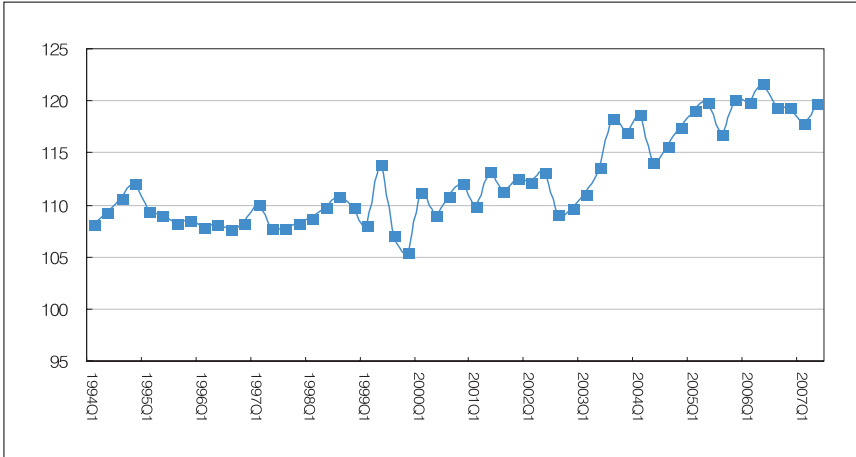
본고에서는 Aschauer(1985)의 추정방법을 우리나라에 적용해봄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Robinson(1988)의 부분선형모형을 이용한 새로운 추정 방법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 재정지출의 소비대체성을 추정하였다. Aschauer 방법을 우리나라에 적용한 경우 소비대체성은 음수로 추정되어 재정지출의 증가가 유효소비의 감소 및 그에 따른 가계후생의 저하로 이어져 재정지출이 가계후생에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낳았다. 그러나 이러한 의문은 재정지출을 성질별로 구분하여 경상지출 및 자본지출을 모두 설명변수로 이용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상술한 의문점은 재정지출 구성요소 간의 다양성을 무시한 채 오직 재정지출 총량만을 설명변수로 사용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경상지출과 자본지출을 모두 이용하기에 기존 Aschauer의 방법은 각각의 지출에 대해 선형으로 식을 설정(specification)해야만 하고 관련된 세 개의 오차항(error)들에 대해 결합정규분포를 가정해야 하는 등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본고에서 제시한 방법은 상술한 Aschauer 방법 적용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부터 자유롭고 추정방법도 간단하여 성질별 재정지출의 소비대체성을 추정하는 모델로 더욱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새로운 추정방법을 적용한 결과 경상지출의 소비대체성은 양수로, 자본지출의 소비대체성은 음수로 나와 경상지출은 유효소비를 높여주는 방향으로, 자본지출은 유효소비를 낮추어주는 방향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양자의 효과를 모두 고려할 경우 경상지출의 규모가 자본지출에 상대적으로 큰 데에 기인하여 유효소비는 재정지출이 고려되지 않은 단순 소비보다 커져서 정부지출은 가계후생을 높이는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새로운 추정방법을 이용하여 성질별 지출의 소비대체성을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먼저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유효소비와 소비의 비율을 추정한 결과, 그 비율은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재정지출이 가계후생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꾸준히 작용해 온 것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물론 이러한 배경에는 지난 국민의 정부 및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복지 관련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나 경상지출의 규모가 확대된 것도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 유효소비/소비비율 추이

(단위: %)



자본지출의 경우 일반적으로 현재의 가계후생에는 당장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시차를 두고 간접적으로 작용하여 미래의 가계후생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꾸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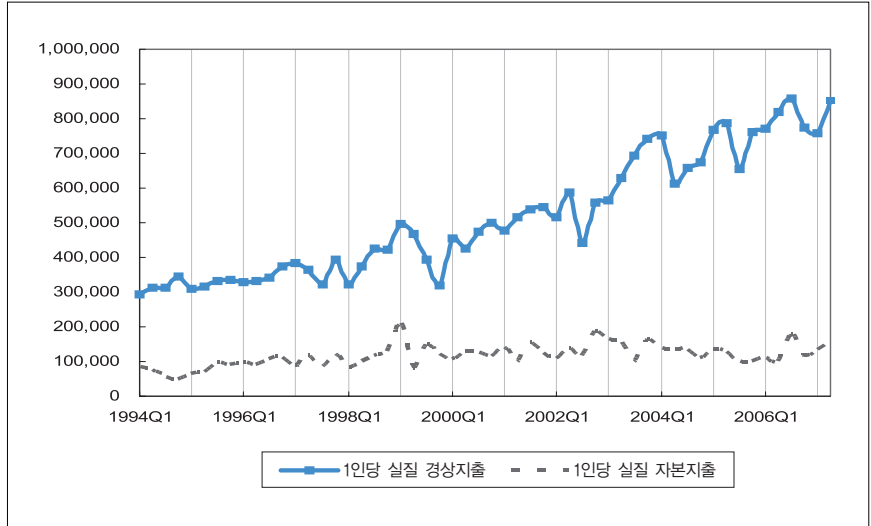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가계후생 증대를 위해 지나치게 경상 지출 위주로만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지출의 경우 일반적으로 현재의 가계후생에는 당장 도움이 되지 않아도 시차를 두고 간접적으로 작용하여 미래의 가계후생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꾸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하자면 현재의 가계 후생 증대만 고려하여 경상지출 위주의 재정책대안 고집하기보다는 적절한 수준의 자본지출도 이루어져서 현재의 후생과 미래의 후생간의 적절한 안배 (balance)도 고려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아래 그림을 보면 경상지출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자본지출은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러한 추이의 지속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향후 연구 및 고민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상지출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자본지출은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러한 추이의 지속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향후 연구 및 고민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경상지출과 자본지출의 추이

(단위: %)



마지막으로 본고에서 이루어진 분석의 한계점을 언급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첫 번째는 본고에서 고려한 이론적 모형의 단순성이다. 본고의 분석모형은 재정지출이 가계후생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만을 고려한다. 따라서 시차를 두고 가계후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본지출의 성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두 번째 한계점으로는 본고에서 제기한 분석방법이 이론적인 모형과 실증분석의 방법의 일관성(coherence)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완전한 구조적인 추정방법이 되기에는 부족한 점이 여전히 있다는 점이다. 그 한 예로는 모형의 식별을 위해서는 효용함수가 이차식이라는 가정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모수적인 방법을 이용하기에는 본고에서 이용한 관측치의 수가 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분기별 재정통계가 발표된 것이 1994년부터임을 감안하면 이는 단기적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한계로 여겨진다. KIP



〈부록〉〈Aschauer(1985) 적용시 추정 결과〉

제약하 추정	무제약 추정	제약식 결과
$\alpha=87320077(61343.53)$	$\delta =87039.73(90633.43)$	$\delta = 87039.73$
$\beta= 0.900(0.067)$	$\beta= 0.921(0.106)$	$\beta= 0.921$
$\theta= -0.255(0.065)$	$\eta_1 = -0.105(0.087)$	$\eta_1 = -0.105$
$\gamma= 61269.76(57657.88)$	$\eta_2 = 0.152(0.032)$	$\eta_2 = 0.152$
$\epsilon_1 = 0.592(0.135)$	$\mu_1 = -0.025(0.091)$	$\mu_1 = -0.025$
$\epsilon_2 = 0.337(0.127)$	$\gamma =67769.41(68692.67)$	$\gamma = 67769.41$
$w_1 = -0.212(0.134)$	$\epsilon_1 = 0.586(0.277)$	$\epsilon_1 = 0.586$
	$\epsilon_2 = 0.333(0.311)$	$\epsilon_2 = 0.333$
	$w_1 = -0.254(0.143)$	$w_1 = -0.254$
$\overline{R_C^2}$ 0.98		
$\overline{R_G^2}$ 0.77		
	$\overline{R_C^2}$ 0.98	
	$\overline{R_G^2}$ 0.78	
	$-2\ln(L_r/L_u)=0.712$	

주: 1) ()은 표준오차, 2) n=2, m=1

〈Graham(1993)에 따른 추정결과〉

도구변수 (Instruments)	추정값	
	θ	λ
$G_{t-i}, D_{t-i}, i = 1, 2$	-0.177	0.004
$\Delta C_{t-i}, i = 1, 2, 3$	(0.133)	(0.115)

주: ()안은 표본오차임.

〈이용 데이터 소개〉

- 사용된 데이터는 다음과 같음
 - 1인당 실질 계절조정 가계소비(비내구재+서비스)
 - 1인당 실질 계절조정 재정지출 (통합재정기준)
 - 1인당 실질 계절조정 재정적자 (통합재정기준)
 - 1인당 실질 계절조정 국내총생산 (GDP)
 - 1인당 실질 계절조정 가처분소득(DI)*
- * 분기당 국내처분가능소득이 편제되지 않는 관계로 국민총소득(GNI)



에서 통합재정상의 국세 및 사회보장기여금을 차감하여 추산, 가치분 소득은 Graham(1993) 적용 시에만 이용

- 아래의 데이터를 이용해 1인당 실질 계절조정 데이터로 전환
 - 가계소비: 한국은행 계절조정 실질 가계소비(비내구재 및 서비스)
 - GDP 디플레이터: 한국은행 GDP 디플레이터
 - 실질 계절조정 국내총생산 (GDP)
 - 실질 계절조정 국민총소득(GNI)
 - 정부지출: 재경부 통합재정 지출 (명목)
 - 정부수입: 재경부 통합재정 수입 (명목)
 - 인구: 통계청 추계인구
- 분석시기: 1994년 1/4~2007년 2/4 (가치분 소득의 경우 2005년 4/4까지)

<참고문헌>

통계청, 『통합재정수지』, <http://www.kosis.kr/>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Aschauer, D. A., "Fiscal Policy and Aggregate Demand," *American Economic Review*, 75, 1985, pp. 117~127

Graham, F. C., "Fiscal Policy and Aggregate Demand: Com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83, 1993, pp. 659~666

Robinson, P. M., "Root-N-Consistent Semiparametric Regression," *Econometrica*, 56, 1988, pp. 931~954



정책연구

- 자본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연구
안종석 · 전병목
- 출산율 제고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조세 · 재정정책
우석진 · 민희철
- 부동산시장과 부동산 조세정책과제
노영훈
- 소득분배 격차 확대의 원인과 정책대응 방향
원종학 · 성명재
-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효율비용 추정
김승래 · 김우철
- 납세협력비용의 추정에 관한 연구
김형준 · 박명호

자본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연구:

- DIT를 중심으로 -

안종석 /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병목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소득세제는 전통적으로 형평성 측면에서 헤이그-사이먼스(Haig-Simons)의 포괄적 누진과세를 추구하여 왔다. 이러한 포괄적 과세체제는 소득 종류에 관계없이 합산하여 과세함으로써 개인의 세부담 능력에 따라 조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득세제가 안고 있는 중요한 문제점은 자본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진다는 것이다. 포괄주의 과세제도는 대내적으로 과세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으나 대외적으로 이동성이 높은 자본의 이동을 야기할 수 있어 효율성 및 성장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론적인 관점에서도 자본에 대한 과세는 미래소비에 대한 과세로서 현재 소비에 비해 미래소비를 증과할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자본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현실적으로 모든 자본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므로 이론적으로 완벽한 종합소득세제를 실현하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비판 아래 자본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다양한 안이 제시되고 그 안들이 갖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실제

로 자본소득에 대해 세금을 전혀 부과하지 않는 방향으로의 근본적인 세계개혁이 시도된 외국 사례는 아직 없다. 그 이유는 조세체계의 획기적 변화에 따른 이행비용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정치적인 관점에서 자본소득으로부터 발생하는 세수입과 소득재분배라는 소득세의 기능을 쉽게 포기할 수 없다는 점 등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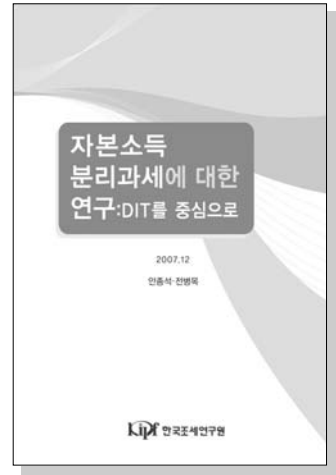
이러한 현실하에서 1990년대 이후 북유럽국가들이 도입한 이원적 소득세제(DIT: Dual Income Tax System)가 근본적 세계개혁의 이상과 현실의 조화를 모색하는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자본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전혀 부과하지 않는 근본적 세계개혁안과는 달리 DIT는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고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고율의 누진세율체계를 유지하는 제도로서 소득세의 재분배 기능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자본소득과세에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북유럽국가들 외에도 일본에서 2004년에 세계발전심의회(세무개혁위원회)의 권고안으로 DIT 도입방안이 제시된 바 있었으며, 그 외에도 미국, 독일, 스위스 등 주요 국가에서 이와 유사한 제도의 도입을 논의

한 바 있거나 현재 논의중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줄이고 세제를 간소화하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이원적 소득세제가 검토되지 않았다. 비록 우리나라 자본소득세제의 상당부분이 분리과세를 채택하는 등 내용적으로 이원적 소득세제와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자본소득 간 과세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이원적 소득세제 도입방안을 검토해보고 제도 변경시 나타날 수 있는 영향을 소득재분배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소득재분배 효과가 중요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의 관점에서 분리과세, 저율과세로 변화하는 제도개혁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소득과세를 살펴보면 종합과세를 지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원과세에 가까운 구조를 보이고 있다. 즉 대부분의 자본소득은 분리되어 저율 혹은 비과세되고 있으며 금융소득(이자 혹은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종합과세되고 있다. 또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되는 납세자는 2만 5천명 수준(2005년 귀속소득 기준)으로 총 납세자 1,600만명의 0.2% 수준에 불과하다. 대표적인 자본소득 중 하나인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특수 상황에 있는 부동산 부문을 제외하고는 상당부분이 비과세되고 있다. 주식양도차익의 경우 소액 주주만 비과세되나 채권양도차익, 파생금융상품 양도차익은 비과세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외국의 경우와 달리 이원과세로의 전환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거의 없으며 오히려 종합과세의 추가가 더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형국이다.

세계 자본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위치, 주변국과의 자본유치 경쟁 등을 감안할 때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는 현행 분리과세체제를 유지하면서 자본소득



B5변형/150면/2007. 12/ 값 7,000원

간 형평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동성이 높은 자본소득에 대해 비교적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있으나 비과세, 저율분리과세, 종합과세가 혼재되어 있어 비효율적인 자본배분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법인과 비법인 등 사업체 형태에 따른 세부담 차이도 축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 평균 실효세율이 적용되는 투자자의 경우 비법인 형태의 사업체를 운영하면 세부담(종합소득세)이 13.9% 수준이나 법인의 형태를 취할 때는 세부담이 28.8~33.8% 수준으로 늘어 그 격차가 상당하다. 한계세율이 적용될 경우에도 비법인은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35.0%, 법인은 40.0~41.5% 수준에 달해 여전히 비법인 형태의 세부담보다 5~6.5%p 높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자본소득세제의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소득재분배 등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소득재분배를 중심으로 살펴본 까닭은 이미 이원적 소득세제에 가까운 자본소득 과세제도를 유지하고 있어 전환에 따른 관련 세부담 인하폭이 낮아 성장촉진 효과 역시 제한

적이기 때문이다. 반면 이원적 소득세제의 강화는 현재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자본소득 간 형평성 문제를 교정할 수 있으며, 자산소유구조가 다른 소득계층 간 세부담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증분석에서는 우리나라 자본소득 과세의 형평성을 회복할 수 있는 3가지 이원적 소득세제 강화방안이 검토되었다. 이들 이원적 소득세제는 자본투자자에 있어 투자형태별 왜곡요인을 축소시킴으로써 시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제도개혁 시나리오 구상에 있어 관건이 되는 것은 자본소득 종류 간 세부담 형평성을 회복하는 것이며 이 때 발생하는 세수변화는 부가가치세를 이용하여 중립성이 유지되도록 조정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주식양도차익 과세, 증권거래세 폐지, 비과세·감면저축의 폐지, 부동산양도차익 과세의 유지를 가정한 시나리오 2가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제일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에 비과세되던 주식양도차익, 저축 부문을 과세로 전환하여 추가적인 세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이를 다시 부가가치세 인하로 환류하는 방안이다. 현재 소득계층별 세부담구조에서 저소득층의 세부담 중 상당부분을 부가가치세가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시나리오 2는 소득재분배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조달방법에 따른 세부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에 대해 자기자본공제를 허용하는 시나리오 3은 단기적으로 가장 소득재분배를 악화시키는 방안이나, 기업부문 활성화를 통한 성장 및 노동시장 파급효과를 고려한 소득수준 증대의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그러한 효과는 본 보고서에서 검토되지 않았고 향후 일반균형모형을 통해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시나리오 1의 경우에는 현재 비과세중인 소액주주 주식양도차익의 과

세, 부동산양도차익에 대한 대폭적인 세율 인하로 인해 소득재분배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에 비해 분포의 편중성이 강한 부동산양도차익에 대해 저율과세함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의 세부담 감소율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동산 부문을 제외한 자본소득의 과세 전환으로 인해 자본소득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손실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소나마 소득재분배 개선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분석에서 고려되지 않은 형평성 개선을 통한 장기적 자본흐름의 개선효과 등을 감안하면 이원적 소득세제로의 전환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상황에서 자본소득에 대해 과세함에 있어 이원적 소득세제로의 전환은 소득재분배를 크게 악화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과세·감면 등이 많은 자본소득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세부담이 역진적인 부가가치세의 인하(혹은 증가폭 하락)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의 폐지, 비과세·감면저축의 축소 등에 긍정적인 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07-11 『자본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연구』의 요약 및 정책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출산율 제고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조세·재정정책:

- 장기적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조세·재정정책 -

우석진 / 한국조세연구원 초청연구위원

민희철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본 연구는 장기적 인적자본의 형성을 위한 정책 과제의 2차 연도 과제이다. 1차연도 과제에서는 한국 여성의 출산율을 결정하는 경제적 요인에 대해 세밀하게 분석하였다. 분석은 소득수준, 배우자의 소득, 여성의 학력,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의 변화, 여성임금의 증가, 여성의 혼인연령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되었다. 가치관의 변화나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출산율에 미친 영향은 기존의 연구에서 충분한 관심과 조명을 받았으나, 상대적으로 자료의 부재 혹은 한국 경제학자들의 관심 부족으로 인해 경제적 요인에 대한 분석이 미진하였던 부분을 메우려는 시도였다. 1차연도 연구를 통하여 배우자의 소득과 여성의 임금이 여성의 출산 결정과 출산 간격 결정에 중요한 결정 요인이라는 것을 파악하였고,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추가적인 노동공급 없이는 경제의 잠재성장력이 크게 감소할 수 있음을 보였다.

2차연도 연구과제는 1차연도 연구과제에서 도출된 경제적 요인과 여성의 출산 결정과의 상관관계를 근간으로 하여,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출산율 제고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출산율 제고정책이 한국 여

성의 출산, 노동공급, 결혼의 결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한국 여성의 일련의 출산, 노동공급, 결혼 패턴을 설명할 수 있는 동적 구조모형(dynamic structural model)을 발전시킨 후, 1998년부터 2004년까지의 한국노동패널(KLIPS)를 이용하여 모형의 구조모수를 추정하였다. 추정된 구조모수를 이용하여, 정부가 출산율 제고정책을 통해서 여성의 예산제약을 변화시켰을 경우, 여성의 출산, 노동공급, 결혼의 결정이 단기 및 장기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반사실적 실험(counterfactual experiments)을 통해서 추정하였다.

실험 결과, 무급 혹은 유급휴직이 출산에 미치는 효과는 다른 정책에 비해 크지 않고 오히려 노동공급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보육비를 지원하는 정책은 출산과 노동공급을 동시에 촉진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요되는 예상 재정에 비해서 그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은 것을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전지출이 미치는 효과는 그 지원 액수가 큰만큼 다른 정책들보다 효과의 크기가 큰 편이다. 하지만 자녀가 있는 모든 가구에 지원했을 때에는 노동공급을 장기적으로 저해한다는 단점이 있다. 지원

을 취업모에게만 한정한다면, 출산에 미치는 효과는 60~80% 감소하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노동공급과 인적자본 축적을 제고하여 재정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적인 정책은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현재의 제도를 개선하는 출산을 제고정책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차등보육료를 크게 확대하는 제도와 기존의 차등보육료 제도를 유지하고 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도입하는 형태의 제도 중 출산과 특히 기혼여성 노동공급에 대해 차등보육료를 크게 확대하는 제도가 더 영향을 준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 보고서를 살펴보면, 먼저 제Ⅱ장에서는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과 출산장려정책의 이론적 기초를 살펴보았다. 출산율의 감소는 근로인구의 감소를 초래하여 1인당 소득의 성장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고령층 인구 대비 근로인구의 비중을 감소시켜서 연금제도 운영의 문제점 및 사회보장 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의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며, 또한 저축률의 감소로 경제의 투자규모와 자본축적을 저해하여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음으로는 출산장려정책이 도입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았는데, 1960년대 신가계경제학(New Home Economics)으로 불리는 연구에 따라 자녀의 출산을 부모의 합리적인 선택으로 간주되고, 출산 및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 그리고 가구 소득 등이 출산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후속 연구들이 이후 정책과 출산 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의 핵심적인 기초를 제공하였다.

제Ⅲ장에서는 OECD국가들의 출산장려정책을 항목별로 살펴보고, 그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를 정리하였다. OECD 국가에서 수행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은 조세 및 지원금, 보육서비스 제공, 양육 휴가의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지원의 범위 및 규모는 국가별로 매우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장려정책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Gauthier(2007), Sleetbos(2003) 등 최근의 서베이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대다수의 연구에서 출산장려정책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효과의 크기가 작은 경우도 있었으며, 연구에 따라서 출산율 증가의 유의미한 효과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출산장려정책 효과에 대한 결론을 일반화하는 데 주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제Ⅳ장에서는 여성의 출산 결정을 동학 구조모형(dynamic structural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한 기존의 연구 문헌들을 정리하였다. 동학구조모형은 정학모형과 비교해 볼 때, 시간프로파일(time profile)을 명시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출산 결정에 수반되는 동학적 함의(dynamic implications)를 분석 가능하게 해준다. 여성의 출산 결정과 관련된 다양한 문헌들 중에서 본 보고서에서 발전시킨 모형과 관계 있는 주요 논문 세 편을 정리하였다.

먼저 Wolpin(1984)는 출산 결정을 동적 구조모형을 이용하여 본격적으로 분석한 첫 번째 연구라고 볼 수 있다. 188개의 말레이시아의 샘플을 이용하여, 구조모형을 추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 및 분석하였는데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자녀 수가 주는 한계효용은 자녀 수에 대해서는 증가하지만 그 정도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소비와 자녀 수는 조대체제(gross substitutes)관계에 있다. 셋째,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아이의 한계효용은 낮은 경향이 있다. 넷째, 남

편의 소득은 자녀 수에 양(+)의 효과를 미친다. 마지막으로, 소득이 증가하는 가정의 경우 출산을 늦추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했고 이는 Heckman과 Willis(1976)의 결과와 유사하다. 이러한 발견들을 경제학적 용어로 정리해 보면, 출산 결정은 다소 작은 양(+)의 소득효과와 큰 음(-)의 교육효과가 있다. 자녀 사망 시 추가적인 출산 결정과 관련해서는 다소 작은 대체(replacement)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Wolpin의 연구가 선택변수를 출산에 대한 통제를 직접 통제변수(control variables)로 모형화하였다면, Hotz와 Miller (1989, 1993)은 출산을 위한 노력을 통제변수로 함으로써 출산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모형에 포함시켰다는 데에 그 공헌이 있다. 더 나아가서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자녀 수만 효용함수에 포함시켰지만, Hotz와 Miller의 일련의 연구는 자녀의 연령구조도 모형에 포함시켜 이후의 출산 결정에 영향을 주도록 함으로써 문헌을 한층 발전시켰다.

Francesconi(2002)의 연구는 원래는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이 노동시장 참여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어 출산보다는 노동공급의 측면이 자세히 분석되어 있다. 하지만, 노동공급과 출산을 동시에 동적 상황하에서 모형화함으로써 출산과 노동공급 결정의 상호작용을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발전시킨 모형의 근간을 제공하고 있다. 분석 결과 몇 가지 흥미로운 발견을 하였다. 첫째, 여성이 전일제 부문에 노동공급을 하는 이유는 경력 및 학력으로 대표되는 인적자본의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반면 시간제 부문에서는 그러한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시간제 부문에 대한 노동공급의 지속성이 떨어진다. 둘째, 전일제 부문과 시간제 부문의 인적자본은 서로



B5변형/171면/2007. 12/
값 7,000원

대체성이 낮다. 셋째,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한계효용이 낮다. Francesconi(2002)의 연구의 큰 약점은 기혼자나 결혼경력(ever married)이 있는 여성들만 분석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결정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 결과 결혼을 한 여성이 자녀에 대한 선호가 더 높을 수 있다는 표본선택(sample selection)의 문제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제 V 장은 기존문헌과 1차연도 과제에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한국 여성의 출산, 노동공급, 결혼 패턴을 설명해줄 수 있는 동적 구조모형을 발전시켰다. 가임기의 여성이 생애주기 효용함수(lifetime utility)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일련의 결혼, 노동공급, 출산 결정을 한다. 기존문헌에 비해 한 걸음 더 나아간 점은, 모형 내에 결혼 결정을 명시적으로 고려하고 실증분석에서도 미혼여성을 샘플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기존문헌이 가지고 있던 표본선택의 문제를 최소화시켰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서 정부의 출산율 제고정책 수단, 예를 들면 자녀 보육비 지원, 이천지출 등을 예산제약식에 명시적으로 포

함시켜서 정부의 정책 실험이 유의미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제Ⅵ장에서는 제Ⅴ장에서 발전시킨 모형의 구조 모수(structural parameters)를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2단계 추정법을 사용하여, 먼저 1단계에서는 여성과 배우자의 임금 및 소득 방정식을 추정하였다. 추정된 임금 및 소득 방정식을 이용하여 2단계에서는 여성의 효용함수의 모수들을 추정하였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 모형에서 했던 가정들에 고정비용들이 과대 추정되었기는 하지만, 대체로 추정된 모수들은 통상 기대되는 부호와 크기를 가졌다.

제Ⅶ장에서는 제Ⅵ장에서 추정된 구조모수를 이용하여 다양한 정책 실험(policy experiments)을 실시하였다. 크게 보면, 네 가지의 중요한 정책 실험을 통해 한국 여성의 출산, 노동공급 및 결혼의 결정이 어떻게 변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인적자본 축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았다. 첫째, 학력의 차이가 가져오는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여성노동자들 간의 학력 차이가 장기적으로 여성 출산과 노동시장, 결혼에 미치는 효과를 계량화하였다. 고졸 여성은 중졸 여성보다 2.19%, 대졸 여성은 5.46% 완결출산율이 높다. 노동시장 참가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학력에 따른 차이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이었다. 결혼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단기적으로는 저학력자가 좀 더 일찍 결혼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차이는 감소하여 학력이 결혼에 미치는 효과는 많이 감소하였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결혼 연령의 지연이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결혼이 1년 지연되면 기존 출산 패턴과 비교하여 약 6%의 출산 자녀 수의 감소가 예상된다. 노동시장 참가율은 단기적으로는 상승하

지만 이후의 급격한 결혼의 증가로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인적자본의 축적 속도는 결혼 지연으로 인한 초기의 차이가 큰 폭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었다.

세 번째 실험에서는 취업모에 대해 보육비를 지원하는 정책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보육비 지원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효과는 약 2% 정도이고 결혼은 약 0.04%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 상대적으로 효과는 작다. 오히려 효과를 미치는 지점은 노동공급과 인적자본의 축적이었다. 노동공급은 3% 증가시키고 인적자본은 0.18년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네 번째 실험은 이전지출에 관한 것이다. 이전지출은 현금지원이기 때문에 노동공급에 있어서 소득 효과가 있어 노동공급 감소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모든 자녀가 있는 가구에 현금지원을 할 경우 출산을 증가시키기는 하지만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반면에 여성의 노동공급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 하지만, 지원을 취업모에게 한정하는 경우 여성의 출산에 미치는 효과는 60~70% 정도 감소하기는 하지만 여성의 노동공급이 10만원 증가당 3.5~6% 증가하는 효과가 있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과 재정에 주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제Ⅷ장에서는 제Ⅵ장에서 다루었던 개별 정책이 효과가 아니라 실제로 정책으로 구현될 때의 모습, 즉 정책 혼합(policy mix)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거기에 비슷한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을 서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비용효율적인(cost effective) 정책을 식별해 내려고 하였다. 현재의 제도를 개선하는 출산율 제고정책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현재의 차등보육료를 크게 확대하는 제도와 기존의 차등보육료제도를 유지하고 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도입하는 형태의 정책 중 출산과 특히 기혼여성 노동공급에 대해 차등보육료를 크게 확대하는 제도가

비용효율적인 면에서 우월한 정책이라는 시사점을 발견하였다.

본 보고서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도출한 종합적인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출산율 제고정책에 동원될 수 있는 재정이 유한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기본적인 출산정책은 자녀가 있는 모든 가구에 지원을 하되 취업모에 대한 지원을 보완책으로 강화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그럼으로써 한국 여성이 출산과 노동을 병행할 수 있고, 그 결과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재정의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게 될 것이다. **KIPF**

*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07-03 『출산율 제고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조세·재정정책』의 요약 및 정책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부동산시장과 부동산 조세정책과제

노영훈 /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시장 자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 필요한 유형별·지역별 세부 부동산시장과 특성, 부동산시장의 효율성 분석, 부동산시장 정보와 정책지표를 살펴보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부동산 조세정책에 대한 평가 및 분석, 그리고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부동산은 크게 천연 상태의 토지와 여기에 (건물) 자본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부동산으로 나뉜다. 양자를 구분하는 이유는 토지시장과 주택시장의 작동 원리가 동일하지 않으며 각각에 부과되는 조세가 자원배분에 미치는 왜곡효과가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만들어지는 부동산의 한 종류인 주택은 주거 서비스를 창출하는 자본재인 동시에 축적된 부를 저장하는 자산의 한 형태이다. 또한 이러한 유형별 부동산시장은 지역적 구분으로 더욱 세분화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제Ⅱ장에서는 부동산시장 자체에 대한 이해 및 보다 효과적인 부동산 조세정책 입안을 위해서는 유형별·지역별 세부 부동산시장과 특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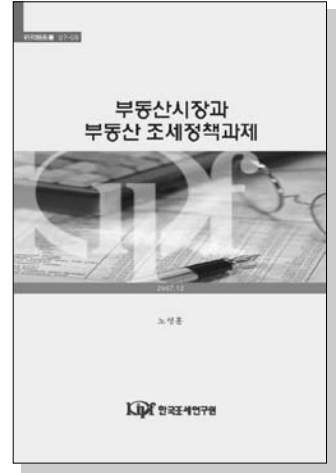
또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처럼 시장의 거래가격 내에 모든 정보가 정확히 반

영되어 효율적이라는 의미에서의 시장 효율성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국내외 기존연구들의 결론은 대체로 주식시장만큼의 효율성은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살펴본 서울지역의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한 주택시장은 장기적으로나 2001년 이후 기간에서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택시장 가격지표인 주택은행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지수는 실제거래된 가격을 기초로 하고 있지 않고 중개업소가 주관적으로 제공한 '거래가능가격'이라는 기본적인 한계점 때문에 개선할 점이 많이 있다. 지역적 및 유형별 표본추출비용 측면에서도 모집단과 큰 괴리를 보이고 있고, 단위면적당 임대나 매매가격을 기초로 지수를 산정한 것도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가격지수를 통해 시장상황을 판단하고 가격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거나 정책지표에 바로 반영되는 식의 정책은 거래량의 변동성이 매우 높은 시기에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다. 오히려 지역단위의 부동산시장 동향에 보다 정통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지역적 부동산정책의 개발이 필요하고, 직접적인 가격규제정책보다는 시장원리가 잘 작동할 수 있도

록 시장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단지 토지시장에 한해서는 정부가 토지의 용도별 이용규제를 통해 토지공급을 좌우하는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한 공급자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되고, 정확한 시장정보가 투명하게 시장 참여자들에게 제공되고 공정한 거래의 룰을 정립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정부의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필요한 지역에 적기에 택지공급이 이루어지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실천되어 정부가 시장참여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때에만, 만들어지는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Ⅲ장 및 제Ⅳ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에 대해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조세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구분한 후 외국과 비교해 보면 국세 재산보유세로서 종합부동산세라는 새로운 조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띈다. 순부유세처럼 부채를 공제한 순부(net wealth)에 대해 과세하지도 않고 부동산만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국세 재산세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특히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주거서비스 소비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주택자본에 대한 과세이므로 민간 주택 자본형성 및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되고, 향후 세 부담 인상 일정이 입법화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경제적 비효율성과 형평성이 큰 문제로 대두되면서 중앙과 지방 간 세수 배분을 두고 갈등을 빚을 전망이다. 적어도 주택에 대한 종부세 만큼은 어느 시점에서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과도기간 중에는 임대소득과세를 보완하는 기능을 부여하여 주택자산에 대한 외형과세로서의 성격에 만족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도 대부분의 나라들처럼 자가점유자들에게는 귀속임대소득을 과세하지 않는



B5변형/153면/2007. 12/
값 6,000원

방식을 따르고자 한다면 자가점유주택은 주택중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임대사업자는 현재 납부하고 있는 임대소득세를 감안하여 과세조정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본질에 부합할 것이다.

주택소유챗수별로 주택양도소득세율을 차등화하여 (실질적인 임대사업자인) 다주택자에게는 중과하면서, 1세대 1주택자에게는 특정지역만 거주요건을 부과할 뿐 비과세 혜택을 관대하게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정책은 자본이득도 소득으로 보아 정상적인 소득과세 기반에 포함하는 많은 나라들의 세계개편 경향과는 다르게 전개되어 왔다. 우리나라 가구의 경상소득과 가구소유 주택자산의 현황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단순한 주택의 소유챗수나 소유주택 자산가액은 납세자의 경제적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아님을 양 변수 간 상관계수를 통해 확인하였다. 즉, 가구소득이 많은 정도에 비례하여 주택자산가액이 많지도 않고 따라서 미실현 양도차익이 그 만큼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따라서 부동산이라는 물건시장 대책적 정책세제로 동원되었던 과거 전통에서 벗어나



기 위해서도, 통상의 개인소득과 분리되어 과세되는 현행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세 체계 내에서 과세되어야 인세(personal tax)로서의 특성이 살아나면서 소득기준 형평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또한 1세대 1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현행 규정은 강화된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100% 세액공제 또는 과세이연되는 방식의 세제 혜택이 부여되어야 자가점유자(owner-occupier)의 주거서비스 소비를 지원하는 원래 취지를 되찾게 될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다주택소유자에게도 주거주주택 1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주는 쪽으로 개편하는 것이 다주택소유가 일반화되는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는 세제의 발전방향일 것이다. **KIPF**

*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07-09 『부동산시장과 부동산 조세정책과제』의 요약 및 정책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소득분배 격차 확대의 원인과 정책대응 방향

원종학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성명재 /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도시)가계조사」의 원시자료가 이용가능한 기간인 1982년부터 최근까지의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가구소득 기준의 상대소득분배 격차를 나타내는 (시장소득)지니계수는 U자형 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외형상 Kuznets가 주창하였던 역U자 가설을 부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980년대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원시자료 형태의 분석자료가 없기 때문에 검증하기 어렵지만, 1960년대 이후 선택과 집중을 통한 불균형 성장전략을 채택하여 경제가 성장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한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상대소득분배 격차가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 이런 의미에서 1960년대 이후 1990년대 중반 이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면 역U자 가설이 성립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상대소득분배 격차가 확대 추세를 반전되었고 최근까지 점진적으로 소득 불평등도가 확대되는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향후에도 고령화 등으로 인해 소득 불평등도는 당분간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소득분배 격차의 계속되는 확대 추세는 연령집단 간 지니계수와 연령집단 내 지니계수의 상승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소득분배 격차를 확대시키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연령 집단 간 지니계수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상대소득분배 격차가 큰 고연령층의 인구비중이 상승함에 따른 고령화 효과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밖에 연령집단 내 지니계수의 확대에 의해 소득 불평등도가 커지는 효과도 고령화 효과에 못지 않게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집단 내 상대소득분배 격차의 확대에 따른 지니계수의 상승은 고령화로 설명할 수 없다. 인구학적 요인의 변화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부문 간 생산성 격차의 확대, 실업률의 변화, 비정규직 비중의 확대, 또는 임금 격차의 확대 등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구학적 특성 분석을 통해 2000~2006년의 소득분배 격차가운데 약 2/3 정도는 고령화 효과에 의해 초래된 부분이 크며 나머지 1/3은 인구외적 효과, 또는 경제적 요인에 의한 효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 중에서 임금 격차의 변화에 의한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임금 격차의 추이와 발생 원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1980년부터 2005년까지「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의 원시자료를 사용하여 동 기간 동안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발생한 임금 격차의 변화 및 그 원인에 대해 살펴본 결과 ① 임금 불평등도는 1990년대 중반까지 감소되다가 1990년대 이후 완만한 확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② 성별 임금 격차는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고 ③ 학력별 임금 격차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약간 확대되다가 2000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나 ④ 연령별 임금 격차는 1990년대 이후 확대되고 있으며 ⑤ 사업체규모 간 임금 격차는 분석 기간인 1980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기에 더하여 ⑥ 1980년 이후 노동자의 연령분포가 우측으로 이동하고 있는 사실로부터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⑦ 연령이 높을수록 동일 연령집단 내의 임금 격차가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고령 노동자의 증가가 임금 불평등도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전체 노동자 가운데 동일 연령집단 내 임금 격차가 큰 고령자의 비중이 커짐으로써 실제로는 집단 내 임금 격차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의 불평등도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고학력화와 고연령화가 임금에 미치는 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임금함수의 추정을 통해 임금구조의 변화와 그 요인에 대해 알아보았다. 추정결과, 사업체규모별 임금 격차는 중기업, 대기업 모두 확대되고 있었으며, 그 크기는 규모가 클수록 크게 나타나고 있어 규모에 따른 임금 렌트가 클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업체규모 간 임금 격차는 교육수준을 통해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과 사업체규모에 관한 이상의 추정 결과와 대기업의 고학력자에 대한 수요에 따른 변화인지,



B5년형/137면/2007. 12/ 값 6,000원

아니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대기업을 선호한 것인지를 안정수요가설에 따라 검증한 결과, 1980년 이후 발생한 우리나라의 임금구조 변화는 안정수요가설과 모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980년부터 2005년 사이의 중장기적인 임금구조의 변화가 수요측 요인보다는 고학력화나 고연령화와 같은 공급측 요인의 변동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고령자의 경우 이미 시장에서 사실상 은퇴하거나 또는 퇴출된 상태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일정 수준 이상의 생산성을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공적부문에서 노인들에 대한 복지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시장에서 노인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 등으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노동인력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유희노동력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노동력 부족 현상의 해소 차원에서

도 노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고학력화에 따른 임금 격차의 확대는 저학력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확대 및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최근의 소득분배 격차 확대의 주된 요인이, 기타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불공정 행위 등에 기인하였다기보다는 고령화와 임금 불평등도의 확대 등에 의한 것인 만큼 소득분배구조 조절을 위한 정부의 시장개입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즉, 사후적 관점에서의 노인대책 등이 바람직하다. **KIPF**

*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07-10 『소득분배 격차 확대의 원인과 정책대응 방향』의 요약 및 정책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효율비용 추정:

- 주요 세목 간 비교를 중심으로 -

김승래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김우철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일반적으로 정부가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일정 세수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효율성과 형평성은 중요한 조건이다. 조세가 효율적인지는 세수 한 단위를 확보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모든 사회적 비용의 크기가 얼마나 작은가로 평가하므로, 이러한 비용의 측정과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한 국가의 조세 효율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세목별 초과부담(excess burdens or deadweight costs)을 실증적으로 파악하여 비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특정 세목의 한계초과부담이 기타 세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은 해당 세목의 세율체계를 상대적으로 조정하여 사회 전체의 효율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후생수준이 증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조세제도의 초과부담 추정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많은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부분균형분석의 틀 안에서는 각 재화나 요소시장 간의 연관성에 대한 고려가 결여된 상태에서 초과부담을 추정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부분균형분석에 비해 다수 시장이 존재하는 여러 부문 간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등 여러 장점이 있는 일반균형분석의 경우도 기존의 계산가능 일반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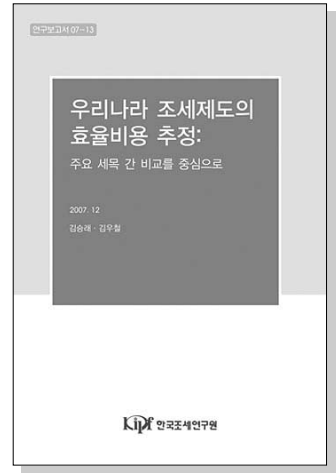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모형들은 채택된 행태탄력성들이 단순 가정치(guessimates)이거나, 아니면 다른 연구 목적으로, 다른 시점의 표본구간(sample period)에서, 다른 국가들을 대상으로 별도로 추정된 값들을 단순히 복합하여 사용하였다. 이러한 방법들은 한 국가의 조세제도의 주요 세목별 초과부담을 추정하고 서로 비교하는 데 있어, 내적으로 일관된 분석체계(internally consistent framework)에서 도출된 결과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대체로 경제의 생산자 행태와 소비자 행태 추정의 기반이 되는 이론모형의 구조 설정에 있어 검정되지 않은 다소 강한 사전적 제약을 도입하거나, 조세가 경제행위에 미치는 통로로 초과부담 추정의 주요 요소인 각종 행태탄력성(behavioral elasticities)의 값들을 대체로 다른 연구로부터 단순히 원용하여 사용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조세제도의 효율성(eficiency)을 과거 실증자료를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전반적 효율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일관된 일반균형의 틀

내에서 주요 세목별 초과부담을 계량경제학적으로 추정하여 서로 비교·평가하였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제도 구조가 어느 정도의 경제적 왜곡(distortions)을 초래하고 있는지, 세수 증대(revenue-raising) 측면에서 조세 효율성은 어떠한지, 그리고 국민후생 측면에서 경제적 비용은 어떠한지를 주요 세목 간 비교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향후 적정 조세체계(optimal tax mix)의 방향 설정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단순 캘리브레이션 CGE모형에 기초한 기존의 방법에서 나아가, 실제로 한국경제의 1970~2004년의 역사적 실증자료에 근거하여 주요 세목별 한계초과부담을 추정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현행 조세제도를 세목별로 비교 평가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조세제도의 효율성 제고와 적정 조세제도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 설정과 정책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가진다.

우리나라의 주요 세목별 한계효율비용을 서로 비교하기 위하여 모형의 분석 대상기간인 1970~2004년의 매기별로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과거 35년 동안 일반소비과세의 증가에 따른 조세의 한계효율비용은 6.2%에서 15.5%, 수입과세의 경우는 4.4%에서 9.6%, 노동과세의 경우는 9.9%에서 21.2%, 그리고 자본과세의 경우는 5.9%에서 29.8%로 각각의 실효세율 변화와 비교해 볼 때 크게 증가하였다. 즉, 전체 분석기간 동안의 평균은 일반소비의 경우 8.2%, 수입의 경우 5.7%, 노동의 경우 11.1%를 차지하였다. 조세원칙적으로 정부의 추가적인 프로젝트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금을 부과할 경우에 경제주체의 행위왜곡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효율 손실로서 조세 효율비용은 정부프로젝트의 단순금액에 추가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과거 우리 경제의 정부지출은 한계효율비용 이

B5변형/162면/2007. 12/
값 7,000원



상의 실질적인 정상수익률을 가져야 조세 증가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극복하는 타당성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형태의 주요 세목별 한계효율비용은 대체로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며, 최근 2004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조세의 한계효율비용의 크기는 자본과세(29.8%), 노동과세(21.2%), 일반소비과세(15.5%), 수입과세(9.6%)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를 효율성 측면에서 평가한다면 자본과세나 노동과세 등 소득 관련 과세에서 소비 관련 과세로 세원을 이동하고 과세기반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주요 세목별 조세의 한계효율비용 추정치는 세부 세율구조 개편, 각종 공제나 비과세·감면조항 변화 등으로 실질적인 실효 세부담구조가 매기별로 달라짐에 따라 변화한다. 또한 동시에 단순부분균형의 틀과는 달리 일반균형의 틀에서는 소비자 및 생산자의 각종 행태탄력성이나 관련 생산기술구조와 소비패턴 변화, 기타 경제환경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그 크기가 다소 복잡하

게 영향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노동과세 및 자본과세의 경우에 그 실효세율 변화 대비 한계효율비용의 변화 추세가 다소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은 한국경제의 경제주체의 행태 변화가 시장변수에 보다 탄력적이고 반응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또한 분석기간 전반에 걸쳐 꾸준히 확대되어온 경제구조의 변화와 대외 개방화의 진전에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조세 효율비용의 계량경제학적 추정을 위하여 이론적 엄밀성을 가지고 경제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모형 설정 및 추정에 있어서 각종 모형의 탄력성 변수에 보증되지 않은 각종 사전적 제약조건을 가하지 않는 신축적인 행태방정식들을 사용하였다. 동시에 분석경제의 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과거의 실제 실증자료에 기반한 계량경제학적 추정 과정을 거쳐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효율비용을 추정함으로써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반균형적 구도하에서 주요 세목간 효율비용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비교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나, 주로 시계열적 거시 총량자료에 의존하고 단일 소비자를 가정하며 대체로 큰 범주의 상품총계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모형의 조세 효율비용 추정을 위한 세목별 암묵적 유효세율의 경우 그 평균세율과 한계세율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어, 세제의 누진적 요소에 의한 효율비용을 직접적으로 파악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모형의 한계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향후 보다 세분화된(disaggregated) 상품별, 세목별, 그리고 소비자 그룹별로 관련 분석을 심층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미시적인 조세패널 자료를 이용한 조세제도의 효율

성 평가 연구로 발전시킬 수 있는 선행단계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KIF**

*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07-13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효율비용 추정』의 요약 및 정책 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납세협력비용의 추정에 관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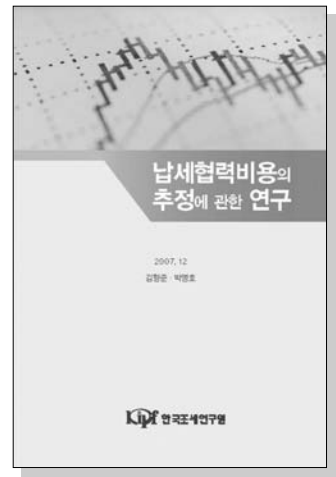
김형준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박명호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우리나라에서 납세협력비용을 추정하는 연구로는 정수화(1993), 차신준(1994)과 곽태원(1994)이 있다. 이 중 정수화(1993)는 3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였으며 차신준(1994)과 곽태원(1994)은 설문조사를 이용한 납세협력비용의 추정이었다. 하지만 차신준(1994)과 곽태원(1994)에서도 통계학적인 분석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를 통계학적으로 보강하고 있다.

법인세의 경우 납세협력비용이 차신준(1994)에서는 법인세액의 약 1.4% 수준이었고 곽태원(1994)에서는 0.76% 수준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에서는 법인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은 평균 7,816만원이고, 이는 평균 납부세액의 1.14% 수준이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많은 법인들을 많이 표본 추출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법인세액의 약 3% 정도가 법인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으로 보인다.

법인세에서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납세협력비용도 증가하지만, 매출액에 비해 상당히 느린 속도로 증가하여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은 도리어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에서는 세액 대비



B5변형/182면/2007. 12/
값 7,000원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이 약 40% 수준을 보이다가 매출액이 10억원 증가함에 따라 이 비율은 약 0.046%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납세협력비용의 역진성은 일반적인 현상이어서 모든 세목에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세무조사의 횟수가 증가할 때도 납세협력비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세무조사의 경우 세무조사에 따른 납부세액의 증가가 납세협력비용의 증가보다 빨라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비교하면, 두 세목에서 납세협력비용의 규모는 모두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지만, 부가가치세에서보다 법인세에서 납세협력비용이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납부세액도 법인세에서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을 보면 도리어 부가가치세에서 약간씩 더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비교하면 법인세에서의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평균치가 큰 반면 부가가치세에서의 역진성이 조금 더 두드러지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에서의 이러한 역진성은 주로 세금 계산서의 교부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다 합한 경우 법인의 납세협력비용은 납부세액의 약 1.4%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비율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업체의 규모와 세무조사 여부인 것으로 보인다.

정리하면, 납세협력비용의 가장 큰 특징은 역진성이다. 납세협력비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사업체의 규모이며 사업체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납세협력비용도 증가하지만 증가 속도가 상당히 느려 납부세액이나 매출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은 사업체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세목들에서 중소기업과 같이 사업체의 규모가 작은 기업들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법인세 경우 물론 이들 기업이 납부하는 세액 자체는 크지는 않지만 납세협력비용이 납부세액의 약 40%에 달하고 있어 납부세액을 줄여주는 만큼이나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KIP**

*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07-16 『납세협력비용의 추정에 관한 연구』의 요약 및 정책 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최신 조세 · 재정 해외동향

조세정책 ·

유로존 재무장관, 유류세 인하 반대

유로존 15개국 재무장관들이 유류세 인하를 반대하는 데 합의했다고 AFP통신이 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유로존 재무장관 모임 의장인 장 클로드 융커 룩셈부르크 총리는 이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재무장관 회의 후 세금 인하 정책을 두고 “유가 인상에 대처하는 옳은 결정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페드로 솔베스 스페인 재무장관도 “유류 소비를 줄이고 에너지 소비를 효율화하는 데 세금 인하란 좋은 방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합의는 유로존 회원국에서 유가 급등에 항의하는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는 앞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회원국들에 유류세 인하를 요청하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 반대한 것이기도 하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연료 가격 폭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고를 줄이기 위해 다른 조치들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9~20일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EU) 정

상회의에서 유가 급등에 따른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경제 2008-06-03]

미국 상무부, “中 강관업체 700% 이상 혼합관세 부과”

미국 상무부가 30일(현지 시간), 중국 강관업체들의 불공정 가격 관행을 제어하기 위해 중국의 주요 강관업체에 700% 이상의 수입 혼합관세를 적용하고 또 다른 강관업체들에게도 106% 이상의 혼합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데이비드 스푸너 미 상무부 수입행정부 차관보는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과 저평가된 반덤핑 수출관세는 미국 생산업체들에 불이익을 안겨주고 또 세계 무역의 흐름을 왜곡하고 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상무부는 중국 철강업체인 상지에 그룹의 스탠더드 강관 수출품에 대해 615.92% 상계관세와 추가로



85.5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과 정상보다 낮은 가격에 제동을 걸겠다고 밝혔다.

길버트 카플랜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상지에 그룹에 부과한 615% 상계관세는 상무부가 외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제지하기 위한 조치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카플랜 변호사는 “현재 중국 스틸산업은 미국과 유럽, 일본 철강산업들을 합친 것보다 규모가 크다. 이 같은 성장은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이 밖에 다른 중국 강관 생산업체 및 수출업체들에도 106% 이상의 혼합관세(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31개 중국 강관업체들에 대해 69.20%의 반덤핑 관세를 적용하고 장쑤 유룡 강관 기업을 비롯한 다른 업체들에 대해 88.55%의 반덤핑 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웨이팡 이스트 스틸 파이프에는 29.57%, 킵랜드 그룹에는 44.86%, 이 밖의 다른 업체들에 37.22%의 상계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오는 7월 14일 투표를 통해 이번 법안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며 통과될 경우, 2007년 말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중국을 지난해 미국에 8억 7,600만kg 또는 5억 4,800만달러에 달하는 스탠더드 파이프 제품을 수출했으며 이는 2005년보다 2배 가량 늘어난 규모다.

[뉴시스 2008-05-31]

것으로 나타났다.

휘발유세 잠정세율 적용기한이 지난 3월 말 끝나면서 3월의 1.2%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망치는 1% 상승이었다.

휘발유세 잠정세율 적용기한이 지난 3월 말에 만료되면서 휘발유 가격은 일본에서 지난달에 15%나 하락했다. 다만 블룸버그 통신은 이달 1일부터 휘발유세 잠정세율이 부활하면서 식료 및 에너지 가격 급등이 가격과 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아지노모토와 맥도날드를 비롯한 일본의 식품업체들은 비용 증가를 이기지 못해 결국 제품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맥도날드는 이날부터 치즈버거와 빅맥 가격을 20% 가량 올렸고 아지노모토는 마요네즈 가격을 오는 7월부터 인상할 계획이다.

도쿄 소재 BNP파리바의 수석이코노미스트인 고노 류타로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일본의 인플레이션은 3분기부터 정부의 억제 목표치인 2%를 상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일본 은행 심의위원을 지낸 다이이치생명 연구소의 구마노 히데오 이코노미스트는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으로 일본 경기가 둔화하고 있어 일본 은행이 금리를 당분간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아시아경제 2008-05-30]

일본 4월 소비자물가, 휘발유세 폐지로 일시 하락

일본 총무성이 30일 발표한 4월 전국 소비자물가지수(2005년=100)는 가격변동이 큰 야채·생선류 등을 제외하고 100.8로 전년 동월에 비해 0.9% 상승한

중국, 내달 돼지고기 수입관세 6%로 인하

오는 6월 1일부터 6개월 동안 중국이 수입하는 냉동 돼지고기의 수입관세가 절반 수준으로 하향 조정된다.

중국 국무원은 6월 1일부터 식·의약품, 면화 등 6개 항목 26개 상품의 수입관세를 일시적이거나 내리

기로 결정했다고 28일(현지 시간)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수입관세가 인하되는 항목은 돼지고기 등 일부 식품, 식용류, 사료, 혈액제제 알부민, 백신, 면화 등 6가지다. 식품 부문에서는 6월 1일~12월 31일 냉동 돼지고기 수입 관세를 기존 12%에서 절반 수준인 6%로 인하한다. 대구, 피스타치오 아몬드, 유청, 효모 단백질, 유아식품 등 9가지 식품에 대한 수입관세는 기존 6~25%에서 2~10%로 낮춘다. 같은 기간 땅콩 사료는 5%에서 2%로, 알부민과 백신 등 4가지 의약품은 3%인 관세를 아예 폐지한다. 6월 1일~9월 30일 야자유, 올리브유 수입 관세를 기존 10%, 9%에서 모두 5%로 하향조정한다. 6월 5일~10월 5일 고품질 · 고가의 면화에 대해서는 톤당 570위안 부과하던 관세를 357위안으로 내린다.

중국 상무부의 수입관세 인하 조치는 국내 수요 · 공급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다. 피스타치 아몬드와 올리브유처럼 중국에서 생산되는 양이 많지 않은 일부 상품의 경우 수입관세를 인하할 경우 수입량이 늘어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다.

공급 부족으로 천정부지로 치솟은 돼지고기 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냉동 돼지고기 수입관세를 파격적으로 절반이나 인하했다. 최근 중국의 돼지고기 소비자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0% 올랐다.

중국 정부는 쓰촨성 대지진과 관련해 의약품 수요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알부민 · 백신 등 의약품 수입관세 인하도 결정했다.

[아시아경제 2008-05-29]

스웨덴 · 이탈리아 등 상속세 폐지 확산

- OECD국가 중 7개국서 없어
- 호주 · 캐나다는 양도세로 내

상속세 폐지 움직임이 최근 몇 년 새 외국에서 부쩍 활발해졌다.

재작년 홍콩이 상속세를 폐지한 것을 비롯해 스웨덴(2005년), 이탈리아, 포르투갈, 슬로바키아(2004년) 등이 2000년 이후 상속세를 없앤 나라에 속한다. 이미 1970년대에 상속세를 없앤 호주와 캐나다를 포함하면 총 30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7개국이 상속세 폐지 대열에 합류한 셈이다.

이처럼 나라별로 상속세 폐지에 대한 시각이 다른 이유는 크게 두 갈래다.

먼저 높은 세부담을 피해 다른 나라로 국적을 옮기는 부유층 이탈을 막으려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이는 부유세 도입에 실패했던 미국이나 과도한 상속세로 대표적인 상류층 인사가 국적을 옮겼던 1990년대 스웨덴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다. 미국은 결국 부유세 도입을 철회했다. 스웨덴은 2005년 상속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법제를 정비한 상태다.

상속세를 폐지하는 다른 취지는 재산과세를 자본이득과세로 정비해 나가자는 것이다. 대부분 국가가 상속세 폐지에 나선 이유는 재산과세제도 정비가 가장 큰 이유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고율 과세에 따른 기업 애로를 수용해 투자를 늘려보자는 의도인 셈이다. 가장 흔한 사례로 인용되는 미국을 보면 현 공화당 정부는 대선공약에 따라 상속세를 점진적으로 줄여 2010년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폐지하도록 했다.

‘상속세 폐지=재벌 특혜’를 연상하는 일반적 의견과 달리 상속세를 폐지한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보편적인 과세방안을 마련했다. 실제 상속세가 없는 OECD 회원국들은 공통적으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충실하다.

상속세 없는 세제가 자리를 잡은 캐나다는 상속 · 증여 시점에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세를 매기도록 법



령을 정비했다. 또 호주는 상속받은 사람이 상속재산을 처분할 때 취득시점을 '상속해준 사람이 취득한 시기'로 잡아 양도세를 더 많이 매기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매일경제 2008-05-05]

중국 재정부, 지진 관련 세제감면 혜택 부여

수만명의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중국 쓰촨성 대지진으로 중국 당국이 피해 기업과 개인에게 세제감면 혜택을 마련할 방침이다.

20일(현지 시간)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19일 논의를 거쳐 지진과 관련해 세제감면 혜택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당국은 쓰촨성에서 지진 피해를 직접 입은 기업들이 자산손실액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피해지역에 물품이나 현금 기부를 한 기업들은 기부금 액수에 관계없이 법인세가 감면된다. 쓰촨성 피해지역에서 자산 손실을 입은 개인도 개인소득세가 감면된다. 아울러 공익으로부터 보조받은 구조 지원금, 물품, 기부금 등은 세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세제 감면폭은 해당 지역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확정할 방침이다.

부동산세도 감면 대상으로 포함됐다. 피해 복구를 위해 주택을 6개월 이상 비울 경우 부동산세가 감면되고 주택이 여진 발생 위험 지역에 있어 거주가 불가능할 경우에도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해외에서 정부, 민간단체, 개인 등이 중국에 식료품, 생활필수품, 의약품, 구조용품을 보낼 때에는 수입관세를 부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아시아경제 2008-05-20]

재정정책 ·

베트남 물가, 이달에도 25.2% 급등

베트남 물가가 5월에도 20%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적자 확대와 더불어 베트남 경제 시름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이달 베트남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2%나 급등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국영 베트남통신이 27일 보도했다. 베트남 통계청은 “26일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동기 대비 25.2% 올랐다”며 “지난 4월 21.4%에 비해 오름폭이 3.8%포인트 확대됐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말부터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기 시작한 베트남 물가는 올 2월 16.1%, 3월 19.4% 등에 이어 갈수록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올해 들어 5개월 동안 물가상승률은 이미 지난해 전체 상승폭인 12% 선을 뛰어넘어 16% 선에 육박했다.

베트남 정부는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전쟁’을 선포하고 각종 긴축정책을 동원하고 있다. 대폭적인 금리 인상은 물론 시중은행에 국채 매입을 강제하고, 주요 품목 가격을 통제하는 등 물가를 잡는데 총력전을 펴는 상황이다.

하지만 음식료와 건축 자재 등 주로 의식주 관련 품목 급등세가 꺾이지 않아 즉각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물가 불안이 서민들의 생활고로 직결되는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흘러나온다.

올 1~5월 베트남 무역적자는 총 144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경제 불안으로 베트남 주가지수는 올 들어 50% 이상 폭락했고 환율도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통화 가치가 큰 폭 떨어졌다. 그나마 외국 인직접투자(FDI) 유치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위안거리다.

[매일경제 2008-05-27]

인도, 사교육 열풍에 관련주도 ‘후끈’

인도 증시가 올해 들어 부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교육 관련 기업 주가는 사교육 열풍에 힘입어 고공 비행중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26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인도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높은 경제성장률과 소득 증가로 교육 소비가 눈에 띄게 늘었다. 인도 가정의 소비 지출 중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9%다. 높은 교육열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11.8%와 비슷한 수준이다.

2006 회계연도(2006년 4월~2007년 3월) 인도 국내총생산(GDP) 가운데 교육 관련 지출은 6%로 2005 회계연도의 3.5%에서 약 두 배로 늘었다.

인구통계학적으로 볼 때 인도에서 교육 부문의 성장 잠재력은 무한하다. 11억 인구 중 취학 아동은 4억~4억 5,000만명에 이른다. 앞으로 교육 관련 분야에 들어갈 자금이 막대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뭄바이 소재 투자은행 DSP 메릴 린치의 앤드루 홀랜드 부사장은 “인구통계학적만으로도 인도 교육 부문의 성장 잠재력이 어느 나라보다 크다”며 “2000년 이후 태어난 아이들이 교육받을 나이가 되면 현재의 교육비용은 적어도 25년 더 갈 것”이라고 장담했다.

교육 관련 기업 주가도 덩달아 뛰고 있다. 특히 봄 베이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교육 관련 기업이 얼마 안



돼 희소 가치가 있다. 대표적 교육 기업인 에듀콤포가 가장 돋보인다. 뉴델리에 자리잡은 개인 교습업체 에듀콤포는 인도의 온라인 교육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에듀콤포의 시가총액은 16억달러(약 1조 6,800억원)에 이른다. 에듀콤포는 지난 3월 31일 만료된 회계연도에 전 회계연도 대비 60% 급증한 6,540만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최근 인도 증시가 죽 쬐는 가운데 에듀콤포 주가도 약세를 보이는 게 사실이다. 인도 섹섹스 지수가 올해 들어 18% 하락하며 에듀콤포 주가도 15% 빠졌다. 주가가 급락했지만 현재 주가수익비율(PER)은 52.5배다. 일부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올해 에듀콤포의 PER은 57배를 기록할 전망이다. 씨티그룹은 미국에서 내로라하는 교육 기업 수준인 55배에 이를 것으로 평가했다. 증권사 앤젤 브로킹의 하리트 샤희 애널리스트는 에듀콤포의 현재 주가에 대해 “1년 전의 두 배 이상으로 급등한 것”이라며 “선부른 판단은 금물”이라고 조언했다.

인도 정부는 오는 2010년까지 초등교육을 의무화해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정부의 정책이 향후 교육시장에 어떻게 작용할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아시아경제 2008-05-27]

“유엔 온실가스 기금 헛돈” … 개도국 부적격 업체 지원, 효과 없어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서 개발도상국 산업에 지원되는 수십억파운드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26일 영국 가디언이 보도했다.

학계와 감시단체들은 유엔의 탄소저감기금이 적격 업체가 아닌 화학·풍력·가스와 수소 관련 에너지

생산 회사들의 탄소 감축 관련 비용으로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정한 탄소 배출 감소가 이뤄지지 않는데도 영국 정부 등은 탄소시장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있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비판의 초점은 교토의정서에 따른 유엔 청정개발체제(CDM)에 맞춰져 있다. CDM은 선진국들이 개도국의 청정에너지 생산에 자금을 지원해 자국의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체제다.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유럽의 기업이나 정부가 CDM의 ‘크레딧’을 사고, 이 자금이 개도국에 지원되는 구조다.

CDM 체제에 따라 지금까지 1,000개가 넘는 계획이 승인됐고 2,000개 이상이 승인 대기중이다. 중국의 경우 앞으로 4년 내에 세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거의 모든 새로운 수력·풍력·천연가스 전력설비는 CDM 자금 지원을 신청중이다.

CDM 크레딧 시장은 급속히 성장해 현재 연간 200억달러에서 앞으로 4년 내에 1,000억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원인 픽터와 마이클 와라는 이미 승인을 받았거나 절차가 진행중인 3,0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은 지원되지 말아야 할 것들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빅터는 “중계업자들이 크레딧을 획득하는 방법을 찾아내 부자나라들이 막대한 양을 과다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감시그룹인 ‘인터내셔널리버스’도 CDM 자금이 지원될 필요가 없는 곳임에도 현재 접수된 프로젝트의 4분의 3 가량이 승인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독일 본에 있는 CDM의 대변인은 “CDM 기금이 배출가스 감축에 매우 중요하고 많은 기업들이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에 나서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경향신문 2008-05-26]

일본, 2조원 규모 혁신창조기금 조성

- 기업 첨단기술 개발 촉진...성장 2%p 끌어올리기

일본 정부는 경제 재도약을 위해 △기술혁신(이노베이션) 창조 전략 △글로벌 전략 △저탄소 사회 실현 등 3대 전략을 마련했다. 일본은 이 같은 경제성장 전략을 통해 앞으로 10년 동안 국내총생산(GDP)을 연평균 2%p 이상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세 가지 경제성장 전략 가운데 일본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게 될 내용은 기업 기술혁신 촉진 정책이다.

일본 정부는 우선 2,000억엔(약 2조원) 규모 기금을 조성해 '이노베이션 창조 기구'를 내년 안에 설립하고 첨단기술을 경제성장 동력으로 삼기로 했다. 이노베이션 창조 기구는 각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기술 가운데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특허를 한데 모아 사업화하는 민간 투자펀드에 기금을 출자하게 된다. 이는 기업마다 제각각 흩어져 있는 기술을 정부 차원에서 하나로 통합해 경쟁력 있는 신흥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 표현이다.

이 기구는 경제산업성과 재무성에서 500억~1,000억엔, 민간기업에서 1,000억~1,500억엔 가량 자금을 출자받아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신흥기업 육성은 단기간에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15~20년 동안 주식회사 형태로 기구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 밖에 일본 기업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국내로 끌어오기 위해 세제 개정에도 나선다. 일본 기업이 국외 자회사에서 배당을 받더라도 과세하지 않는 '국외소득 면제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일본은 지금까지 국외 자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배당 형태로 일본 국내로 들여오면 높은 법인세를 부과해 왔다.

글로벌 전략 일환으로는 아시아 경제·환경공동체 구상과 경제연대협정(EPA)이 추진된다. 아시아 경제·환경공동체는 한·중·일 3국에 동남아시아국가

연합(ASEAN)과 호주가 참가하는 정책마련 협력 기구다. 일본 정부는 인도 남부~태국~캄보디아~베트남을 육로와 해로로 연결해 아시아를 횡단하는 광역 물류망과 산업지대 구축을 제한할 계획이다.

[매일경제 2008-05-22]

일본, 아시아 국가들에 쌀 방출

- 농림성, 필리핀 등에 쌀 공급 논의 중

아시아 국가들이 쌀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쌀을 방출하기로 했다.

2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일본 농림성의 토시로 시라수 차관은 "국제 곡물 시장의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쌀 보유분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국제 식량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쌀 보유분을 방출해야 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일본은 이미 필리핀에 국내에서 재배한 5만톤의 쌀을 공급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입쌀 보유분 중 20만톤도 지원할 계획이다. 다른 국가로의 지원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일본은 자국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엄청난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쌀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서 자급자족 능력을 키우면서 소비자들이 자국 쌀을 소비하도록 추진할 수 있었다. 또 쌀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쌀 방출 시 자국 쌀의 가격 하락을 우려, 수입쌀을 시장에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엄청난 규모의 수입쌀이 남아돌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수요와 투기 증가로 급등했던 쌀 가격을 완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쌀 가격은 톤당 1,000달러까지 치솟는 등 주요 쌀 소비국인 아



시아 국가들은 쌀 확보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다. 게다가 유엔식량자업기구(UNFAO)에 따르면 올해 세계 쌀 수출량은 지난해보다 7% 줄어든 2,880만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수급 불안은 심화되고 있다.

세계은행은 전일 쌀 수출국들이 추가적으로 100만 톤의 쌀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지만 대다수 아시아의 쌀 수출국들은 자국 수요를 감안해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데일리 2008-05-20]

정책 흐름



- 근로자·자영업자 등을 위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
- '08년 상반기 세법·시행령 개정(안)
- 2007회계연도 정부결산, 감사원 검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
- 금융기관이 지급받는 채권이자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제도 폐지
- IMF와의 조세개혁 워크숍 개최
- 2007년도 기금운용 평가결과
- 국세청 홈택스 방문자 2억명 돌파
- 7월 1일부터 금지금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 시행

근로자·자영업자 등을 위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

* 이 자료는 2008년 6월 8일 국무총리실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발표한 「근로자·자영업자 등을 위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I. 추진 배경

①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이 급격히 악화

- 세계 경제가 10년 호황을 마무리하고 침체 국면으로 진입
- 유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과거 Oil Shock 수준에 근접

과거 Oil Shock 기간과 최근 유가 수¹⁾ 비교 (WTI油 기준)

	명목유가	실질유가	실질실효유가	원유집적도
2차 Oil shock(80. 4월)	39.5	104.1	150.2	193
최근 유가(08.6.6일, 사상최고치)	137.5	137.5	137.5	133

② 이러한 대외여건 악화로 인해 국내 경제도 내수가 부진하고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소득이 정체되는 등 어려운 상황

- 아직 선진국에 비해 유가가 낮은 수준이나, 고유가와 경기 둔화의 고통을 가장 먼저 체감하는 저소득·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

* 휘발유 소비자가격(원/ℓ, 08. 3월) : (한국) 1,670 (OECD 평균) 1,734 (영국) 2,141 (독일) 2,115 (프랑스) 2,073 (일본) 1,423 (미국) 870

③ 세계가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과 불확실성을 슬기롭게 극복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특단의 대책 필요

- 이를 바탕으로 모든 경제주체들이 함께 노력한다면 위기를 극복하고 내년 이후 우리 경제는 견실한 성장세로 재진입 가능

- ◇ 단기적으로는 고유가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한 노력과 함께, 중장기적인 에너지 절약 기반과 에너지 자원 확보방안을 마련
- ◇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R&D 투자 확대 등 성장 동력 확충은 감세·규제완화 등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

II. 추진 전략

1. 기본 방향

- ①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완화해 주는 한편,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구조적 접근 추진

1) ① 실질유가 : 2차 Oil Shock 이후 물가 상승을 감안하여 현 시점에서 환산한 수치
 ② 실질실효유가 : 원유집적도 개선까지 감안하여 현 시점에서 환산한 수치
 ③ 원유집적도 : 원유 소비량/실질GDP(GDP 1단위 생산을 위해 소요되는 원유량)

- ① 고유가로 인한 근로자·자영업자 계층의 경제적 고통 완화를 위해 단기 대책 강구
 - ②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장기 구조조정 대책을 동시에 마련
 - ③ 획일적 지원보다 선별적·직접적 지원 방법을 통해 대책의 효율성과 수혜자의 체감 효과를 제고
- 유가 상승기에는 유류세 인하가 에너지 절감 원칙과 상충되고 실효성과 형평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고유가로 어려움이 큰 계층을 중심으로 선별적 지원을 실시

② 지원 대책은 재정지출 확대와 조세 환급 등으로 추진

- 근로자·자영업자와 사업용 차량 등에 대해서는 조세 환급을 실시하고, 저소득계층은 보조금 지원
 - 중장기 구조조정과 에너지 기반 확충을 위하여 핵심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
 - 재원은 '07년 세계잉여금 잔액(4.9조원)과 유가 상승으로 인한 세수 증가 예상분 등(5.2조원)을 활용
- '07년 세계잉여금의 지방교부세 정산분(5.4조원) 중 일부도 지자체가 중앙정부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

③ 금번 대책은 한시적 조치로 실시('08. 7월~'09. 6월)

2. 프로젝트 6대 사업

단기적 부담 경감

① 유가 환급금 지급

- 근로자·자영업자·사업용 차량(대중교통·물류)·농어민에 대한 유가 환급금 지급

② 유가 보조금 지급

- 저소득층 유가 보조금 지급
- 공공요금 안정 보조금 지급

구조적 대응 노력

③ 구조조정과 제도개선

- 중소기업 납품단가의 합리적 반영 유도
- 물류·석유업계 유통구조 개선
- 연료비 비중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어선 감척 사업 확대

④ 에너지 절약구조로의 전환

- 서민가계 및 기업의 에너지 절약사업 지원 확대
-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장기 에너지 기반 확보

⑤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보급 사업 지원 대폭 확대

⑥ 에너지 자원 확보

- 해외 유·가스전 프로젝트 사업 지원 확대

※ 유가 상승세가 지속되어 일정수준(Dubai油 170\$)에 이를 경우, 유류세 인하 등 추가예비조치(Contingency plan) 마련

Ⅲ. 대책(안)

1. 단기적 부담 경감 대책

(1) 근로자·자영업자 유가 환급금 지급

① 근로자 유가 환급금

- 근로자를 대상으로 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비 부

- 담 증가분의 일부를 소득세 환급을 통해 보전
- 지급 대상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근로자 (전체 근로자 1,300만명 중 980만명, 78%)

소득 구간	지급액
▶ 총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0~72%, 900만명)	24만원 지급
▶ 총급여 3,000만~3,600만원 (근로자의 72~78%, 80만명)	3개 구간으로 감액지급 (18·12·6만원)
▶ 총급여 3,600만원 이상 (근로자의 78~100%, 275만명)	지급 없음

- 지급금액 산정기준 : 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비 부담 증가분의 50% (연 24만원)
 - * 중·저소득층(1~3분위) 월 교통비 증가액(4만원)의 50% (1개월 출퇴근시 대중교통 이용 비용 : 약 4만원)
-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일괄 신청, 국세청에서 직접 지급 (6개월 단위로 2회 지급하되, 희망시 매월 지급)
 - '08. 7~'09. 6월간 근로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한시 적용
- 지급 금액 : 2.3조원

② 자영업자 유가 환급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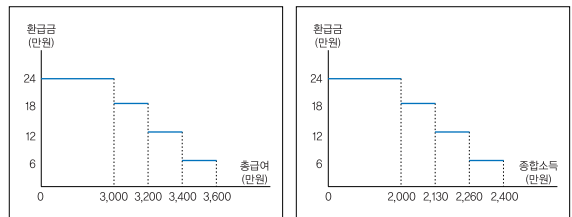
-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비 부담 증가분 일부를 소득세 환급으로 보전
- 지급 대상 :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자영업자
 - * 전체 자영업자 460만명 중 400만명(87%) (유가보조금 등 수령자는 지급 제외)
 - * 자영업자는 유류비·감가상각비·수선비 등 차량 운영비를 전액 경비로 인정해 주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에 비해 낮게 책정

소득 구간	지급액
▶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 (자영업자의 0~85%, 390만명)	24만원 지급
▶ 종합소득금액 2,000만~2,400만원 (자영업자의 85~87%, 10만명)	3개 구간으로 감액지급 (18·12·6만원)
▶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상 (자영업자의 87~100%, 60만명)	지급 없음

- 지급금액 산정기준 : 근로자와 동일
- 6개월 단위로 국세청에 개별 신청, 국세청에서 직접 지급
 - '08. 7~'09. 6월간 사업활동을 영위한 자에 대하여 한시 적용
- 지급 금액 : 8,600억원

〈유가 환급금 지급 개요〉

근로자 유가 환급금 자영업자 유가 환급금



(2) 사업용 차량 유가 환급금 지급

① 대중교통·물류(버스·화물차·연안화물선) 유가 환급금 지급

- 현행 유류세 연동 보조금 제도를 유지하면서 유가 상승분의 50%를 추가 지원 ('08. 7. 1일부터 1년간 지원)
- 지급 대상 : 버스(시내·시외·고속·마을버스), 화물차, 연안화물선
 - * 버스 49천대, 화물차 337천대, 연안화물선 2천대 ('08. 4월)
- 지급 기준 : 현행보조금(293원/ℓ)을 연장 지급하면서 기준가격(1,800원/ℓ, 경유) 이상 상승분의 50% 추가 지원
 - * 기준가격은 5월 4주 평균가격(1,877원)을 감안하여 결정
- ▶ 환급금 상한액 : 환급금 급증에 따른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환급금 상한선(경유 유류세액의 100% : 476원/ℓ) 설정
- 지급 금액 : 유가 수준에 따라 변동 (최대 1조원 추가 지원 추정)

유류가격 변동시 추가 지원 금액 변동(예시, 억원)

평균경유가격(원/ℓ)	1,900	2,000	2,100	2,166
→ 연간추가지원액	3,292	6,617	9,338	10,306

(註) ① 2,166원은 Dubai 유가 170\$[※] 추정되는 가격

② 현행 유류세 연동보조금 19,560억원을 제외한 금액

현행 유류세 연동 보조금제도

- ◆ '01. 7월부터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를 인상하면서 운수업계 (버스, 화물차, 연안화물선) 부담 완화를 위해 세액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급
- ◆ 지급기준 : '01년 이후 유류세 인상분 전액(08. 5월 현재 화물차·버스의 경우 293원/ℓ)
- ◆ 버스·화물차·연안화물선 지급실적(억원)
: (01) 810 (02) 1,294 (03) 3,163 (04) 5,704 (05) 9,647 (06) 13,482 (07) 17,505

② 농어민 유가 환급금 지급

- 농어민에 대해서도 유가 상승분의 50% 지원
- 지급 기준 : 현행 유류세 면세제도를 유지하면서 기준가격(1,800원/ℓ, 경유) 이상 상승분의 50% 지원
- ▶ 환급금 상한액 : 버스·화물차·연안화물선에 대한 추가지급액 수준(183원/ℓ)
- 지급 금액 : 유가 수준에 따라 변동 (최대 4,600 억원 수준 추정)
- 농어민에 대한 면세유를 농기계·어선 보유대수, 경작면적 등을 감안하여 정한 실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확대 공급
- * 면세유 규모(조원) : (03)1.7→(04)1.7→(05)1.9→(06)2.1→(07)2.2
(만ℓ) : (03)443→(04)411→(05)389→(06)376→(07)378

③ 1톤 이하 자가 화물차 유류세 환급

- 1톤 이하 자가 화물차에 대해서도 경승용차·경승합차와 같이 유류세 환급
- 지급 기준 :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 연료(휘발유·경유·LPG)의 유류세를 환급
- 지급 금액 : 연간 2,600억원=260만대×10만원

(3) 저소득계층 부담 경감

① 저소득층·장애인 대상 유가 보조금 지급

- (유가 보조금) 기초생활수급자(08년 기준 86만 가구)를 대상으로 유류비 부담 증가분의 50% 수준(월 2만원 수준) 지급
- * 소득 1분위 계층 광열·교통비 증가액 : 월 4만원(07년) 20만원 → (08년) 24만원
- 차상위계층 중 중증 장애인(3만 가구)도 동일 수준의 유가 보조금 지급
- 지급 금액 : 약 2,136억원(=89만가구×월 2만원×12개월, 지방비 포함)
- (저소득층 난방유류세 인하) 동절기('08. 12~'09. 2)에 등유, LPG 프로판, 취사·난방용 LNG 등 저소득층 난방용 에너지에 대하여 탄력세율(30% 인하) 적용 (지원효과 : 1,100억원)

② 저소득층 연탄 보조 확대

- 연탄 가격 현실화에 따른 가격 인상분에 대한 보조를 기초생활가구에서 차상위 가구까지 확대
- 지급 금액 : 91억원 ('08년 46억원, '09년 45억)
- * 연탄사용 기초생활가구 4만 가구, 차상위 가구 6만 가구
- 등유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해 연탄 수요가 증가할 경우 수급 안정을 위해 비축물량 공급을 탄력적으로 조정
- * '08년 비축 무연탄 공급 계획 : 73만톤(전체 비축량 344만톤)
- * '07년 무연탄 사용량 : 425만톤 (연탄 209만톤)

(4) 공공요금 안정 지원

① 전기·가스요금 안정 지원

- 상반기 요금 동결에 따른 누적적자를 정부가 50%를 지원하여 급격한 요금상승 방지
- 지급 금액 : 12,550억원 (전기 8,350억원, 가스 4,200억원)

* 상반기 원료비 누적 적자 : 한전 1.7조원, 가스공사 8,400억원

② 지방공공요금 안정 지원

- 지자체가 교부세 정산분(5.4조원)을 활용하여 버스·지하철 등의 유가 등 원가 상승분을 보전하여 요금을 안정시키도록 유도

(5) 유가 상승세 지속시 추가예비조치(Contingency plan)

◇ 유가 상승세가 지속되어 일정 수준(Dubai유 170\$)에 이를 경우 유류세 인하 등 추가예비조치(Contingency plan) 발동

* Dubai 유가 170\$ 선정 이유 : 대중교통·물류 유가 환급금이 상한액(476원/ℓ)에 도달한 시점에서의 유가 추정액

① 유류세 인하

- 유가 상승 폭 및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하여 휘발유·경유·LPG 등의 유류세 인하 검토
- 유가 전망·재정 여건·경제 상황 등을 감안 세율 인하 폭 결정
- * 유가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운용할 수 있는 탄력세율 범위를 확대(관련 세법 개정)
- 유류세가 인하되더라도 환급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유가 환급금과 유류세 인하효과를 동시에 부여

② 유가 환급금 지원 대상 추가 검토

- 이번 유가 환급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택시 등)에 대한 지원 검토

2. 구조조정과 에너지 절약 기반 확충

(1) 구조조정과 제도개선

① 중소기업 납품단가의 합리적 반영 유도

- (납품단가의 합리적 조정) 원자재가격 상승분의 납품단가 적기 반영을 유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6월, 공정위 별도 발표)
-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해외시장 공동진출, 공동 R&D 확대, 네트워크론 활성화 등 상생협력 강화방안 마련(중기청)

② 화물 거래 관행 개선

- 다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는 화물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화물운송정보망 구축 등 구조개혁 방안 검토(국토부)
- 합리적인 표준운임제 시행 및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③ 건설기계분야 거래 관행 개선

- (표준임대차 계약서 적용 조기 확대) 국토해양부 소관공사에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우선 적용하고 건설협회에도 회원사에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협조 요청
- (건설업체에 의한 유류공급 확대) 건설기계사업자의 유가상승 부담을 원천 해소하기 위하여 건설업체가 경유를 직접 구매하여 제공하는 제도 확대 검토

* 현재 1개월 이상 임대계약시 및 무한궤도식 장비(불도저 등)에 시행

- 국토해양부 소관 공사에 우선 실시하고 건설현장에 이동식 유류저장탱크를 설치하여 직접 공급 계획(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

④ 어선 감척 사업 확대

- 연료비 비중이 높은 쌍끌이, 채낚기낚시 어선 등을 중심으로 감척사업 확대(2,538억원 추가지원, 지방비 포함)
- 연안어선 1,500척(750억+지방비188억), 근해어선 400척(1,600억) 등 1,900척을 추가 감척 추진
 - * '08년 당초 감척계획과 예산(1,335억원)
 - : 연안어선 2,000척(1,000억원) 근해어선 84척(335억원)
 - * '07년 말 현재 어선 보유 현황: 연안 57,053척, 근해 3,540척

⑤ 석유제품시장의 유통구조 개선

- “정유사-대리점-주유소”로 수직계열화되어 있는 석유제품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유통구조를 개선 (석유사업법 개정, 공정위 고시 개정)
- 주유소 상표표시제(풀사인제) 폐지, 정유사-주유소 간 배타적 공급계약 제한, 대리점 및 주유소 간 수평거래 허용, 수입개방 확대 등
- 정유사의 원가상승 요인을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 최대한 흡수토록 협조 요청

⑥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제고

- 유가 상승에 대응한 대중교통수단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서울시·수도권 간 광역버스에도 ‘통합환승할인운임제’ 시행(08. 4/4분기)
- 서울시·수도권 간 출퇴근 시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한 광역 급행버스 면허제도 도입(09.1월)
- 공공기관 출퇴근용 통근버스 및 청사 간 연락버스 확대

(2) 에너지 절약구조로의 전환

① CNG 버스 확대

- 압축천연가스(CNG : Compressed Natural Gas) 버스 보급 지원 사업을 50% 확대하여 버스 운행료 부담 경감
 - * CNG 버스구입비용 일부를 보조 (대당 2,250만원)
- 지급 금액 : '08년 299억원 추가보조 (1,327대×2,250만원)
 - * '08년 현행 예산 598억원(지방비 포함)
 - * 100Km 운행시 가격부담액 비교(08.5) : (경유)66,800원, (CNG)36,900원

② 에너지 절약사업 확대

-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지원 확대) 에너지절약형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투자에 대한 용자지원 확대 (1,000억원 추가 지원)
 - * '08년 예산(현행) : 에너지절약시설설치 4,837억원
- (스마트 계량시스템 보급) 신규주택단지를 중심으로 집안에서 전기 사용량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스마트 계량시스템 설치비를 신규 보조 (100억원, 10만호×호당 10만원)

③ 저소득층 난방시설 등 개선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노후보일러 교체 등 난방시설개선 지원 확대(가구당 100만원 한도, 전액보조)(270억원 추가 지원, '08년 예산 : 150억원)
-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 지원 확대(기존 기기 무상 교체) (330억원 추가 지원, '08년 예산 : 190억원)

④ 공공기관 10% 에너지 절감

- 신축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의무화, 고효율 기기 우선 설치, 에너지절약 실적 공개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 유도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지침 개정, 6월)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조명기기 등을 고효율화 기기로 전환(500억원, 추가지원)

5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10%→20%)하여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 유도(지원효과 : 1,000억원)

* 대상시설: 에너지절약형시설, 중유재가공시설, 절수설비, 신·재생에너지시설

3. 장기 에너지기반 확보

(1)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1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확대

- (지열 이용 확대) 지열을 이용한 지역 냉난방 시설 설치보조금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1,000억원 추가 지원, 지방비 포함)

* '08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예산 중 지열 부문 77억원(민간직접보조)

- (태양광·태양열 이용 확대) 민간 건물의 태양광·태양열 설치비 보조 확대(200억원 추가 지원)

* '08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예산 중 태양광·태양열 부문 797억원

- (풍력 이용 확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형적 특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풍력 발전시설 투자에 대한 보조 및 융자 지원을 대폭 확대(917억원 추가 지원, 지방비 포함)

2 신재생에너지 설비자금 확대

- 발전차액 지원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자금 지원 확대(발전차액 지원 250억원, 설비용자 지원사업 250억원 추가 지원)

* 발전차액 지원제도 : 한전이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전력을 우선 구매하고 전력기금에서 적정 가격으로 보전(08년 예산 : 513억원)

* '08년 설비용자지원 예산 : 에트회계 563억원, 전력기금 740억원

3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 대상 건물을 신축건물에서 증개축 및 학교건물까지 확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

4 신재생에너지 R&D 투자 확대

- 신재생에너지 단지 등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태양광·풍력·수소전지 등 R&D 투자를 확대(500억원 추가 지원)

5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확대

- 지방보급사업을 확대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유도(지방비와 연계지원(보조), 총 417억원 추가 지원)

(2) 에너지 자원 확보

1 유전개발 용자지원 확대

- 석유·가스 등 국내외 유망 개발·생산광구 확보를 위한 용자지원 확대(1,000억원 추가 지원)

* '08년 현행 국내외 자원개발용자 예산(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4,260억원=국내대륙붕개발(550억원)+해외유전개발(3,026억원)+해외일반광물 개발(684억원)

2 석유공사 유전개발 출자 확대

- 해외자원 개발을 활성화하고, 석유공사를 대형 자원 개발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석유공사 출자 확대(6,000억원 추가 지원)
- 총리 순방으로 확보된 8건의 유·가스전 프로젝트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석유공사의 자본력 대폭 확대

* '08년 현행 유전개발출자 예산(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3,647억원=신규광구(3,547억원)+기존광구(100억원)

③ 자원개발펀드 조성

- 탐사·개발 단계에서의 민간자원펀드 활성화를 위해 석유공사·광업진흥공사가 자원개발펀드에 자금 투자(신규, 3,000억원)
- * 정부(예특회계)가 석유공사·광업진흥공사에 출자 후 동 기관에서 민간펀드 투자

④ 해외자원 개발 지원

- 유연탄·동광 등 광물 확보 및 민간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광업진흥공사의 해외 광업 프로젝트 투자 확대 (1,000억원 추가 지원)
- * '08년 현행 광물자원개발 예산(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1,190억원

- 내년도 재정지출이 필요한 부분은 내년 예산 편성시 반영
- 추가세수 : 금년 7월부터 1년간 예상되는 5조원 내외의 추가 세수를 활용
- * 향후 1년간('08. 7. 1~'09. 6. 30) 세수 초과 예상액 : 유가 상승에 따른 세수 증가(수입분 부가세, 관세) : 3.2조원
원제도적인 세수 증가분 중 감세 잔여 자원 : 2조원
- ※ '07년 세계잉여금 및 금년 세입에 여유재원이 발생할 경우 성장인프라 구축 사업에 활용

③ 추진 일정

- 법령 제·개정 및 「고유가 극복 대책 예산」 편성 등을 국회 개원 즉시 완료하고 7. 1일부터 시행

IV. 재원조달계획 및 추진일정

① 총지원금액 : 104,930억원

(금년 하반기 중 62,140억원)

- 재정 지출 : 34,360억원
(금년 하반기 중 32,600억원)
- 유가 환급 : 70,570억원
(금년 하반기 중 29,540억원)

※ 총지원금액 10조원은 최근 유가 상승 부담 증가분의 50% 수준이며, 경유 유류세 수입('07년 10조원) 상당액을 지원하는 효과

* '07년 대비 '08년 유류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부담액 추정액 : 연간 약 20조원

② 재원 조달 계획

- 세계잉여금 : '07년도 세계잉여금 잔액 4.9조원을 활용하여 「고유가 극복 대책 예산」 편성

대책 총괄표

1. 단기적 부담경감대책	84,350 억원
(1) 근로자·자영업자 유가 환급금 지급	31,400 억원
① 근로자 유가 환급금	22,800 억원
② 자영업자 유가 환급금	8,600 억원
(2) 사업용 차량 유가 환급금 지급	37,070 억원
① 대중교통·물류 유가 환급금 지급	29,870 억원
② 농어민 유가 환급금 지급	4,600 억원
③ 1톤 이하 자가 화물차 유류세 환급	2,600 억원
(3) 저소득층 부담 경감	3,330 억원
① 저소득층·장애인 대상 유가 보조금 지급	3,240 억원
• 유가 보조금	2,140 억원
• 저소득층 난방유류세 인하	1,100 억원
② 저소득층 연탄 보조 확대	90 억원
(4) 공공요금 안정 지원	12,550 억원
① 전기·가스요금 안정 지원	12,550 억원
• 전기요금 원료비 누적적자 50% 보전	8,350 억원
• 가스요금 원료비 누적적자 50% 보전	4,200 억원
2. 구조조정과 에너지 절약 기반 확충	6,040 억원
(1) 구조조정과 제도개선	2,540 억원
① 어선 감척 사업 확대	2,540 억원
(2) 에너지 절약구조로의 전환	3,500 억원
① CNG 버스 확대	300 억원
② 에너지 절약사업 확대	1,100 억원
③ 저소득층 난방시설 등 개선	600 억원
④ 공공기관 10% 에너지 절감	500 억원
⑤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1,000 억원
3. 장기 에너지기반 확보	14,540 억원
(1)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3,540 억원
① 신재생에너지 설치지원 확대	2,120 억원
• 지열 이용 확대	1,000 억원
• 태양광·태양열 설치건물 확대	200 억원
• 풍력 이용 확대	920 억원
② 신재생에너지 설비자금 확대	500 억원
③ 신재생에너지 R&D 투자 확대	500 억원
④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확대	420 억원
(2) 에너지 자원 확보	11,000 억원
① 유전개발 응차지원 확대	1,000 억원
② 석유공사 출자 확대	6,000 억원
③ 자원개발펀드 지원	3,000 억원
④ 해외자원개발 지원	1,000 억원
총 계	104,930 억원

대책 실행을 위한 법률 개정 사항

개정 필요 법률	소관 부처
조세특례제한법	기획재정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기획재정부
지방세법	행정안전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지식경제부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국토해양부

최근 유가 동향 및 경제적 영향

1. 최근 국제유가 동향 및 전망

① 최근 국제유가는 WTI(유가 배럴당 130\$대를 돌파하는 등 3개 대표 유종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

국제유가 동향 (기간평균, 현물, \$/b)

	06년	07년	08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6
Dubai	61.6	68.4	100.4	85.7	90.2	96.9	103.6	119.5	122.8
Brent	65.1	72.8	105.6	91.0	95.4	104.2	108.9	122.5	133.6
WTI	66.0	72.3	107.5	91.3	95.4	105.4	112.6	125.4	137.5

주) '08년 평균은 1. 1~6. 6일중 평균

② 최근 유가 급등의 원인

① 산유국의 추가생산 여력이 제한된 가운데, 세계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도 등 개도국 중심으로 수요 증가세 지속

* OPEC 여유생산능력(백만b/d, 기말, IEA)

: (01년)6.5→(03년)2.6 →(06년)3.9→(08. 3월)3.0

* OPEC 생산정책 변동추이(총회 결정일 기준, 만b/d): (06.12)

△50→(07. 9)+50→(07. 12)동결→(08. 2)동결→(08. 3)동결

* '08년 세계 석유수요 증가 예상분-'07년 대비 1.4%(122만

b/d): 중국·인도·러시아 등 비OECD 국가들의 수요 증가가 93%(EIA)

② 글로벌 달러 약세에 따른 인플레이션의 영향

* '08년 2월 현재 유가 95\$ 중 1/3 수준인 25~30\$는 美 달러 절하에 따른 단순 인플레이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IMF, World Economic Outlook, 08. 4)

③ 원유 등 상품시장으로의 투기자금 유입 지속

* NYMEX 시장의 순매수포지션(만건, 월평균 : (06년)6.5→(07년)9.9→(08. 1~4월)12.6

④ 이란 핵개발, 터키와 쿠르드 간 갈등, 사우디 정정 불안 등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요인이 만성화

* 최근 중국 쓰촨 지방 대지진도 전력공급 차질에 따른 발전용 경유수요를 증가시켜 유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③ 구조적인 원유 수급 불균형 등을 감안할 때, 최근의 고유가 추세 지속 전망

- 해외 주요 전문가들도 최근 유가 상승세를 감안하여 금년과 내년 유가 전망치를 상향 조정

해외 주요 기관 유가 전망치

기관 (유종)	전망 시기	2008년				2009년
		2/4	3/4	4/4	평균	평균
CERA (Dubai)	08.3.31	92.8	88.5	85.5	89.8	78.5
	08.4.28	103.8	93.5	95.5	96.3	90.5
EIA (WTI)	08.4.8	103.7	102.0	98.8	100.6	92.5
	08.5.6	112.2	114.0	114.0	109.5	103.2
PIRA (WTI)	08.3.25	97.7	93.0	93.0	95.3	-
	08.4.25	113.3	122.4	119.0	113.2	-

(註) CERA : 美 캠브리지에너지연구소, EIA : 美 에너지정보청, PIRA : 석유산업연구소

- 하반기 이후 부분적인 수급여건 개선 등에 따라 유가가 다소 안정화될 가능성도 상존

- 세계경기 둔화로 인해 미국 등 주요 OECD 국가들의 석유 수요가 감소할 전망

* EIA는 고유가 및 경기침체 우려로 인한 수요 둔화를 반영하여 '08년 수요증가 전망을 24만b/d('08년 석유수요의 0.3%) 하향 조정(08. 4월)

- 하반기 이후 美 금융시장 불안이 진정되고 달러화 가치가 안정될 경우 투기자금 유입이 감소할 전망

- 최근 미국 등 선진국의 유가안정 노력이 강화되고 있어 향후 가격 인하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

* 부시 행정부의 전략비축유 확대를 제한하는 법안 가결(5. 13),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투기자본 감시 강화 법안 가결(5. 15)

2. 최근 유가 수준 평가

① (실질유가) 물가 수준을 감안한 실질유가로는 과거 Oil Shock 수준을 상회

- 2차 Oil Shock 기간 명목유가('80년 4월 최고치 39.5\$)는 물가 수준을 반영한 실질유가 104\$ 정도로 현재보다 낮은 수준

② (실질실효유가) 에너지 효율성까지 감안한 실질실효유가로는 아직 2차 Oil Shock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빠른 속도로 근접

* 실질실효유가 : 물가수준을 감안한 실질유가에 에너지효율성을 의미하는 원유집적도를 반영하여 계산(실질유가×원유집적도)

* 원유집적도 (=원유 소비량/실질 GDP)

: 실질 GDP 1단위 생산에 필요한 원유 소비량(TO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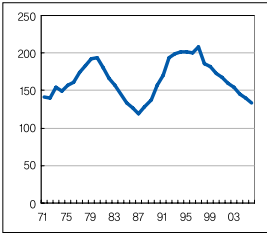
과거 Oil Shock 기간 유가 수준과의 비교(WTI油 기준)

	명목 유가	실질 유가	실질실효유가
2차 Oil shock (80. 4월)	39.5	104.1 ^①	150.2 ^②
현재 유가 (08. 6. 6일)	137.5	137.5	13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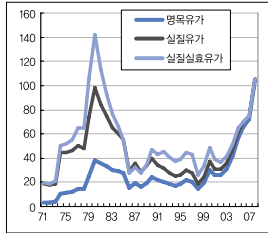
(註) ① '80. 4월 이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현 시점에서 환산한 수치

② '80. 4월 이후 원유집적도 개선까지 감안하여 현 시점에서 환산한 수치

원유집적도 추이



유가 추이



(註) ① 실질유가: 미국 CPI지수(08. 4월 기준)를 활용하여 실질화
 ② 실질실효유가: 원유집적도×실질유가

③ (유가 상승의 원인과 속도) 수요측면의 요인이 점진적·지속적인 유가 상승세를 주도

- 과거 Oil Shock는 공급측 요인이 주도한 반면, 최근 유가 상승은 수요측면 요인이 주도

유가 상승 충격에 대한 결정요인의 기여율

	1차 Oil shock (1974년)	2차 Oil shock (1980년)	최근 유가 상승 (2003~07년)
■ 수요 요인	26.1	29.7	70.4
■ 공급 요인	73.9	70.3	29.6

(註) 공급 요인에는 투기적 요인 등 기타 요인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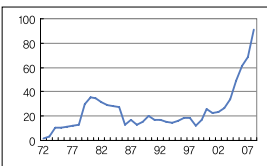
(출처) 한국은행 "유가 상승 충격의 요인 분해와 시사점"(08. 4월)

- 그 결과, 과거 Oil Shock는 단기간 내에 유가가 급등한 반면, 최근 유가는 지속적·점진적으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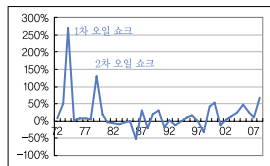
* 유가 100% 상승에 소요된 기간(개월)

: (1차 Oil shock) 3~4, (2차 Oil shock) 8~9, (최근) 12

Dubai 유가 수준(\$)



Dubai 유가 상승률(%)



④ (유가 상승의 충격 경로) 생산 차질보다는 소득여건 악화 및 소비·투자 위축 경로를 통해 경제에 충격요인으로 작용

- 과거 Oil Shock 기간에는 석유류의 수급 차질에 기인한 단기간의 유가 급등이 생산위축(GDP 생산이 급락)을 야기하여 경제에 직접적인 충격을 준 것으로 분석
- 반면, 최근의 지속적·점진적 유가 상승은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소득(GDI) 둔화 및 물가 상승 → 소비·투자 위축 → 생산 둔화」의 경로를 통해 생산 등 거시경제에 충격요인으로 작용
- 그 결과, GDP와 GDI 간 격차가 과거 Oil Shock 기간에 비해 최근에는 매우 크게 나타나는 모습

GDP와 GDI 격차

	1차 Oil Shock			2차 Oil Shock			최근 유가 상승					
	'73	'74	'75	'79	'80	'81	'03	'04	'05	'06	'07	08.1/4
GDP(%A)	12.0	7.2	5.9	6.8	△1.5	6.2	3.1	4.7	4.2	5.1	5.0	5.7
GDI(%B)	12.3	6.6	5.1	6.5	△3.3	6.0	1.9	3.8	1.1	2.3	3.9	0.0
A-B(%p)	△0.3	0.6	0.8	0.3	1.8	0.1	1.2	1.0	3.0	2.8	1.0	5.7

※ GDP와 GDI²⁾ 간 격차

- ▶ 1~2차 Oil Shock 기간 : GDP가 직접적으로 큰 폭 둔화되고, GDP와 GDI 간 격차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음

- 교역조건(=수출단가/수입단가) 악화 폭은 컸으나, 교역량(수출물량+수입물량)이 최근보다 현저히 작았던 데 기인

* GDP와 GDI의 차이인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은 교역조건 변화에 수출입 물량을 반영하여 계산되므로 수출입 물량이 클수록 실질무역손익도 확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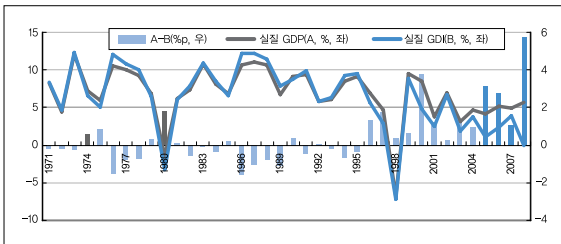
- ▶ 최근 유가 상승 : 직접적인 GDP 둔화는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교역조건 악화(단가요인)에 수

2) 실질 GDI(국내총소득)=실질 GDP(국내총생산)+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 실질 GNI=실질 GDP+국외순수취요소소득

출입 물량 확대 효과(물량요인)까지 겹쳐 GDP와 GDI 간 격차는 큰 폭으로 확대

* 교역량수출물량 + 수입물량의 GDP 대비 비중(%)
: (1974)22 → (1980)35 → (2008. 1/4)120

GDP와 GDI 증가 추이



3. 유가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① 유가 상승세 지속은 세계경기 둔화의 주요인으로 작용

유가 5달러 상승시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p)

	성장률	물가	무역수지/GDP
세계	△0.3	-	-
- 선진국	△0.3	0.2	△0.1
(미국)	△0.4	0.3	△0.1
(유로)	△0.4	0.1	△0.1
(일본)	△0.2	0.1	△0.2
- 아시아 개도국	△0.4	0.7	△0.5
(중국)	△0.4	0.4	△0.3
(인도)	△0.5	1.3	△0.6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04.9)

- 세계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과 에너지 효율성의 증대 등으로 과거 Oil shock 때와 달리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축소

* '07년 GDP/취업자('00년=100) : 미국 111, 일본 112, 한국 125, 중국 166

* 에너지 원단위(GDP 1단위 생산을 위한 에너지 투입량 비율)
: (1970년대) 0.14 → (2000년대) 0.08, 에너지 효율이 43% 향상(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06. 4월)

- 그러나, 최근에는 국제금융시장 불안과 유가 상승세 지속이 함께 나타나면서 세계성장을 당초 예상보다 낮추는 주요인으로 작용

* IMF의 금년 성장전망 하향조정(%)

: 세계 (07. 10) 4.8 → (08. 3) 3.7, 미국 (07. 10) 1.9 → (08. 3) 0.5

② 특히, 최근 유가 상승 기대 심리가 확산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급 차질까지 발생할 경우, 세계 성장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

* 최근 유가충격에 대한 공급요인 기여율(%) : (06.상)29 → (하)20 → (07.상)8 → (하)23(출처) 한국은행 "유가 상승 충격의 요인 분해와 시사점"(08. 4월)

(2)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① 유가 상승은 성장·물가 등 거시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

* 연평균 유가 100\$ 경우, GDP 0.4~0.5%p 하락, CPI 0.8~1.0% 상승

- 석유의존도 하락, 에너지 효율성 증가 등으로 유가 상승의 부정적 효과는 과거보다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경제운용에 부담으로 작용

* 1차 에너지 중 석유 비중(%) : ('97) 60.4 → ('01) 52.0 → ('06) 43.8

* 원유집적도 : ('90)156 → ('00)173 → ('07)133

유가 10% 상승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1970~1999년	2000~2007년
■ GDP 성장률	△0.4	△0.1
■ CPI 상승률	1.5	0.2

〈출처〉 한국은행 "유가 상승 충격의 요인 분해와 시사점"(08. 4월)

② 금년 들어 실질 GDP와 GDI 간 격차가 사상 최대로 확대되고 있어 시차를 두면서 경기에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전망

- 특히, 실질구매력 위축에 따른 소비·투자 여력 둔화는 내년 이후 성장에까지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

(3) 국내 가계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

① (가계에 미치는 영향) 유가 상승은 가계수지에 부담요인으로 작용

- 석유류 제품 가격 상승을 통해 가계의 광열·교통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특히, 소득계층별로는 광열·교통비 지출 비중이 큰 저소득층(하위 20%)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

소득 대비 교통·광열비 지출 비중('07년 기준, %)

가계 평균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10.1	14.8	12.0	11.6	9.5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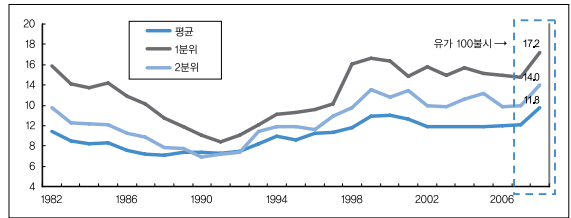
- '08년 연평균 유가가 100\$ 수준에 이를 경우 1분위 가계소득 대비 광열·교통비 지출 비중이 17.2% 수준으로 상승하면서 과거 2차 Oil Shock 기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

* 2차 Oil Shock 당시 1분위 가계소득 대비 광열·교통비 비중(추정, %) : (80년) 16.3→(81년) 16.9

1분위 계층 소득 대비 광열·교통비 비중 전망

	소득	광열·교통비	소득 대비 광열·교통비 비중
2007년	133만원	20만원	14.8%
2008년*	140만원	24만원	17.2%

소득 대비 광열·교통비 지출 비중(%) 추이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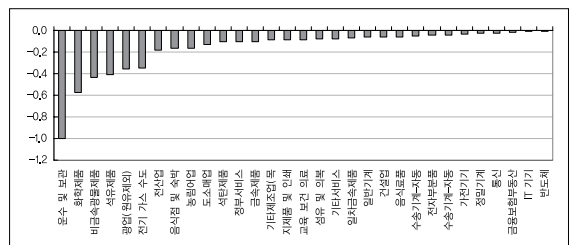


- 또한, 유류 사용이 많은 영세자영업자 등도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는 등 서민경제 전반에 부담 가중 예상

② (기업에 미치는 영향) 유가 상승은 생산원가를 높여 기업 수익성(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외부감사 대상 기업 재무제표를 활용하여 추정된 결과 유가 10% 상승시 영업이익률은 0.2%p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KDI, '07)
- 특히, 석유수요가 많은 운수·화학·전기가스업 등에 큰 부담

유가 10% 상승시 부문별 매출액영업이익률 감소 추이(KDI, %p)



- 이러한 수익성 악화로 인해 금년 유가가 연평균 100\$ 수준이 될 경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적자 기업 비중이 크게 증가할 전망

**유가 100\$ 경우 외감기업 중 적자기업 비중
변동 추정(KDI)**

유가 상승	대기업 적자기업 비중	중소기업 적자기업 변동
06년(62\$) → 08년(100\$)	20.2% → 27.9%	27.0% → 32.6%

- 또한, 유류 사용이 많은 운수·보관 및 석유화학
업종 등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

**유가 100\$ 경우 운수·화학업종 적자기업 비중
변동 추정(KDI)**

	대기업 적자기업 비중	중소기업 적자기업 변동
운수·보관	20.8% → 58.0%	30.1% → 55.7%
화학	19.0% → 35.5%	22.1% → 42.5%

'08년 상반기 세법·시행령 개정(안)

* 이 자료는 2008년 6월 4일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에서 발표한 「'08년 상반기 세법·시행령 개정(안)」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I. 개정 배경

①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조속한 감세 추진

- 국정과제 중 시급한 개정수요는 기초지
- 유류세 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긴급 할당 관세 시행 등
-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제도 보완 사항은 상반기 중 개정을 추진하여 금년분부터 적용
- 법인세율 인하(25%, 13%→20%, 10%) 및 최저한 세율 인하, R&D 시설투자세액공제율 인상 등
- 전반적인 세제개편 법안은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

② 중소기업, 비정규직, 농어민 등 취약계층 지원

-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감세와 함께 중소기업·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지원방안도 병행 추진
- 협력중소기업 배당 법인세 면제, 네트워크론 결제시 세액공제 인상,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 세액공제 신설 등

③ 관광산업 활성화, 서비스수지 개선 대책 세제지원

- 관광호텔 외국인 숙박·음식용역 부가세 영세율 적용기간 연장, 지방 회원제골프장 세부담 경감 등

* 「관광산업 선진화 전략」('08. 3. 28), 「서비스산업선진화 방안」('08. 4. 28) 등

◇ 이상의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사항 중 2개 법률(법인세법, 조특법)은 6월 개원 국회에 정부(안)으로 제출하고, 3개 시행령(조특영, 부가영, 주세영)은 신속한 개정 절차를 진행

II. 개정(안) 주요내용

①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상향조정

(1)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상향조정 (법인세법)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율 • 과표 1억원 초과: 25% • 과표 1억원 이하: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율 단계적 인하 • 과표 2억원 초과 : ('08귀속) 22%→('10귀속) 20% • 과표 2억원 이하 : ('08귀속) 11%→('10귀속) 10%

개정이유

-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성장잠재력 확충 지원
-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경쟁력 제고⇒일자리 창출 ⇒경제성장의 선순환 유도
- 국가간 조세경쟁(Tax Competition)하에서 외자 유치 지원

* 법인세를 인하 국가 (단위: %)
 (영국) 30→28('08) (독일) 25→15('08) (싱가폴) 20→18('08)
 (홍콩) 17.5→16.5('08) (중국) 33→25('08) (대 만) 25→17.5('10)

- 중소기업의 법인세 부담 경감을 위해 낮은 세율 적용구간을 대폭 확대(1억원→2억원)

적용시기 '08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중간예납 특례) '08년 중간예납분부터 인하된 세율 적용

(2) 법인의 최저한세율 인하 (조특법)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의 최저한세율 • 중소기업 : 감면 전 과세표준×10% • 일반기업 - 감면 전 과세표준(~1천억원)×13% - 감면 전 과세표준(1천억원~)×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의 최저한세율 인하 • 중소기업 : ('08/'09년) 8%, ('10년~) 7% • 일반기업 - ('08/'09년) 11%, ('10년~) 10% - ('08/'09년) 14%, ('10년~) 13%

개정이유

- 법인세율이 2단계로 인하되는 것에 맞추어 최저한세율도 2단계로 인하

적용시기 '08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중간예납 특례) '08년 중간예납분부터 인하된 세율 적용

② 성장잠재력 확충

(1) 연구개발(R&D)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조특법)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이 R&D를 위하여 연구 시험용 시설, 직업훈련용 시설,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세액공제 • 공제금액 : 투자금액의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율 상향조정 : 10%

개정이유

- 기업의 R&D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R&D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인상

적용시기 '08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R&D 전담부서의 범위 확대 (조특영, 조특규칙)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세액공제 적용대상 비용 •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 견본품·부품구입비 등 시험연구비 • 전담부서 -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전담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등) • 전담부서의 범위 확대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추가 - 구체적인 범위는 재정부장관이 문화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연구소로 한정(시행규칙)

개정이유

-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중인 R&D 지원체제를 문화산업 분야까지 확대 적용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 출판업, 소프트웨어 자문, 게임산업, 광고업, 전문디자인업, 영화공연산업 등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업 내에 설립된 연구소로 문화부 장관에 신고(6월 국회에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 예정)

- 다만, 구체적인 범위는 R&D성격의 불확실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재정부장관이 문화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

적용시기 '08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3) 연구개발비 범위 확대 (조특영)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세액공제 적용대상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기술개발비용 -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 등 •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 기술정보비,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 • 종업원에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 등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세액공제 적용대상 비용의 범위 확대 •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지급하는 발명보상금 추가 • 과학기술 관련 도서구입비 추가

개정이유

- R&D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구개발비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

적용시기 '08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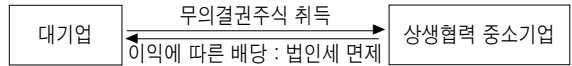
3 중소기업 지원

(1)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협력투자하여 받는 배당소득 전액 법인세 면제 (조특법)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출자비율에 따라 일부를 익금불산입 <p>출자비율 50(30)%초과 50(30)%이하 익금불산입 50% 30%</p> <p>* () : 상장 및 코스닥 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이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출자하여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해 전액 법인세 면제 <p>*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 의한 상생협력 중소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의결권 없는 주식에 한정 • 출자기한 : '10. 12. 31

개정이유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관계를 통해 동반 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
- 다만, 대기업이 협력업체 주식을 취득하여 지배력을 강화하지 않도록 무의결권주 출자에 대해서만 세제혜택 부여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출자하여 받는 배당금 분부터 적용

(2)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을 현금성결제하는 경우 세액공제율 인상 (조특법)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이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을 현금성결제하는 경우 세액공제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트워크론 결제 : 결제금액의 0.3%(30일 이내), 0.15%(60일) •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현금성결제 : 결제금액의 0.4%(30일 이내), 0.15%(60일) • 일몰기한 : '08.12.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트워크론 결제 : 결제금액의 0.4%(30일 이내), 0.15%(60일) •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현금성결제 : 결제금액의 0.5%(30일 이내), 0.15%(60일) • 일몰연장 : '10.12. 31.

개정이유

- 납품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현금성결제에 대해 세제지원 확대
 - 어음 발행을 축소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유도
- ※ 매출액 100억원 이상 기업의 현금성 결제비율 : (04)82.6%—(07)92.8%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최초로 결제하는 분부터 적용

(3) 사업자 등록증 발급기한 단축 (부가영)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 신청시 발급기한 • 신청일로부터 5일(필요시 5일 연장가능)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급기한 단축 • 신청일로부터 3일(필요시 5일 연장가능) 내

개정이유

- 신속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 발급

기한을 선진국 수준*으로 단축

* 해외사례: 일본·영국 1일, 캐나다·벨기에 2일, 프랑스 4일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④ 비정규직, 농어민 등 취약계층 지원

(1)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현행	개정안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이 '07년 말 고용중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세액공제 허용 •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근로자 1인당 30만원 • 일몰기한: '09.12. 31까지 전환

개정이유

■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기업의 부담 완화

※ 금년 7. 1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비정규직보호제도 적용 확대⇒'07년 정규직 전환자: 민간부문 약 3만명, 공공부문 약 10만명

적용시기 '08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금융기관의 휴면예금관리재단 출연금 전액 손비 인정(조특법)

현행	개정안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이 휴면예금을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시 출연금액을 전액 손비 인정 * 금융기관은 현재 소멸시효 완성시 휴면예금을 잡수익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기납부 → 휴면예금관리재단 출연시 손금 부인될 경우 금융기관에 이중부담 발생 • 일몰기한: '08.12. 31

개정이유

■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초기에는 은행·보험사 등 금융기관이 휴면예금을 일시에 재단에 출연함에 따라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감안

• 금년 말까지 누적된 휴면예금을 출연하여 재단 운영이 정상화되면, 내년 이후 출연금은 지정기부금 제도에 의한 지원으로 충분

* '08년 출연 예정금액: 약 2,000억원(은행 1,400억원, 보험 600억원)

적용시기 '08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3) 주세감면(50%) 대상 전통주의 범위 확대(주세영)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주에 대한 주세 감면(50%) 대상 • 과실주: 직전연도 500kl 이하 제조자(출고기준) 또는 당해연도 신규면허 발급자가 출고하는 수량 中 처음 200kl에 한정 ※ 전통주의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세감면(50%) 대상을 전통주 전체로 확대 * 「주세법」 개정('07. 12)으로 주세감면 대상을 전통주 전체로 확대하고, 감면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 • 발효주: (좌 등) • 증류주: 직전연도 250kl 이하 제조자(출고기준) 또는 당해연도 신규면허 발급자가 출고하는 수량 中 처음 100kl에 한정 ※ 증류주는 발효주보다 세율이 높고 고도주임을 감안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발효주</th> <th>증류주</th> </tr> </thead> <tbody> <tr> <td>농민주</td> <td>복분자주 등</td> <td>더덕주 등</td> </tr> <tr> <td>민속주</td> <td>한산소곡주 등</td> <td>전주이강주 등</td> </tr> </tbody> </table>		발효주	증류주	농민주	복분자주 등	더덕주 등	민속주	한산소곡주 등	전주이강주 등	
	발효주	증류주								
농민주	복분자주 등	더덕주 등								
민속주	한산소곡주 등	전주이강주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실주는 발효주의 일종 										

개정이유

■ 전통주 주세율 인하를 통해 전통주의 소비 진작 및 농업인 소득증대 도모

• 다만, 감세 대상을 소규모 제조자로 제한하여 WTO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위반 소지를 축소

적용시기 2008. 7. 1. 이후 최초로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

5 관광·문화산업 활성화 지원

(1)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 및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 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부가영)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해 부가세 영세율 적용 • 적용기한 : '07. 7. 1~'08.12. 31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기한 1년 연장 • 적용기한 : '09. 1. 1~'09.12. 31 ■ 숙박용역과 함께 공급되는 음식용역도 영세율 적용 • 적용기한 : 공포일~'09.12. 31

개정이유

- 관광산업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하여 서비스 수지 적자폭을 줄이고, 투자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지원
- 조세지원이 숙박·음식요금 인하로 연결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체 구조조정을 전제로 영세율 적용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제공하는 용역부터 적용

(2) 관광알선용역 수수료에 대한 영세율 적용범위 확대(부가영)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외국인 관광객 알선용역 수수료의 범위 • 외국환은행 송금, 신용카드, 수표 등으로 받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수료를 외화현금으로 받아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적용 * 관광알선수수료 명세표, 외화매입증명서 등

개정이유

- 관광산업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하고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

- 외국인 관광객의 현금결제 실태(결제금액 중 30%)를 감안, 외화 현금 수령분까지 확대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공급하는 용역부터 적용

(3)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에 전문휴양업 등 추가(조특영)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29개) •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기획업 등 <p>※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용자산에 투자시 투자금액의 7%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을 대상업종에 추가 <p>- 숙박·휴양·놀이시설, 체육시설 적용</p> <p>- 음식점, 골프장 시설은 제외</p>

개정이유

- 관광산업 투자활성화 지원을 위해 전문·종합휴양업자의 시설투자에 대해서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 ※ 전문휴양업 : 숙박 또는 음식업 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1종류 시설을 갖춘 경우(20개 업체 등록 중)
 - * 민속촌, 등·식물원, 수영장, 온천장, 농어촌·산림휴양시설, 박물관, 미술관 등
- ※ 종합휴양업 : 숙박 또는 음식업 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2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춘 경우 등 (14개 업체 등록 중)

적용시기 '08 사업연도 투자분부터 적용

(4)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조특법)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 • 대상업종 : 제조업 등 21개 • 자원내용 : 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 세액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산업 추가 - 영화관 운영업 - 전시 및 행사대행업 ※ 상기업종 중소기업 범위 : 종업원 200인 이하, 매출액 200억원 이하

개정이유

- 문화산업의 창업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5) 유기사설·기구에 대한 관세경감 (조특법)

현행	개정안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제작이 곤란한 유기사설(遊技施設) 또는 유기기구(遊技機具)에 대해 관세 경감 ※ 구체적인 감면을 및 대상품목은 기획재정부령으로 규정

개정이유

-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위한 서비스산업 지원
 - 첨단·대형 유기사설에 대한 기업의 신규 투자를 유도하여 서비스산업 활성화 및 서비스수지 개선 도모
- 관세경감대상을 국내제작이 곤란한 품목으로 한정하여 국내 유기사설 제작업체의 피해 최소화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적용

⑥ 서비스수지 개선을 위한 지방 골프장 세 부담 경감

(1)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조특법)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개별소비세(12,000원) 부과 ※ 교육세(3,600원), 농특세(3,600원), 부가가치세 등 포함시 21,120원 ※ 체육진흥기금 3,000원 부과(문화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 회원제골프장에 대해 2010년 말까지 개별소비세 면제 • 지방 :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 • 인하효과 : 24,120원(교육·농특세, 체육진흥기금 등 포함)

개정이유

- 국내 지방골프장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하여 여행수지 적자 개선 및 골프산업 활성화
- 해외골프수요 및 수도권 골프수요를 지방으로 전환시켜 소비진작,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적용시기 2008. 9. 1 이후 입장분부터 적용

- 법 개정 이후 실제 적용시점까지 요금인하 등 골프장 업계 자구노력을 담보하기 위한 MOU 체결 등 관리기간으로 활용

(2) 지방 회원제 골프장 원형보전지에 대한 종부세 별도합산 과세특례 적용(조특법)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회원제 골프장 원형보전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 • 종부세 : 종합합산(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 회원제 골프장 원형보전지에 대해 2009년까지 종부세 경감 • 종부세 : 별도합산 과세특례(0.8% : 200억원 초과분)

개정이유

- 골프장의 원형보전지는 산림법에 의해 골프장 면적의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보존토록 한 점을 감안
- ※ 골프장 관련 지방세 감면계획(행안부) : 6월 임시국회 추진 예정

구 분	현 행	개 선	소관법·령
• 재산세 (원형보전지) (개발지 및 건축물)	종합합산 0.2~0.5%	별도합산 0.2~0.4%	지방세법 시행령
• 취득세	분리과세 4% 과세표준액의 10%	분리과세2% 2%	지방세법

적용시기 '08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Ⅲ. 추진일정

- 대상법령
 - 법 률(2개) :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 시행령(3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가가치
세법 시행령, 주세법 시행령
- 추진일정(잠정)
 - 당정협의 : 6. 3(화)
 - 차관회의 : 6.19(목)
 - 국무회의 : 6.24(화)
 - 국회제출 : 6.30(월)

2007회계연도 정부결산, 감사원 검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

* 이 자료는 2008년 5월 30일 기획재정부 결산과에서 발표한 「2007회계연도 정부결산, 감사원 검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정부는 감사원 결산검사를 반영(채권, 국유재산, 물품결산 일부 수정)하여 최종 확정된 2007회계연도 정부결산을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2008. 5. 30(금) 국회에 제출하였음
- 국회제출 정부결산서(9종) : 세입세출, 기업회계, 기금, 국가채권, 채무, 국유재산, 물품, 예비비, 예비금

<2007회계연도 정부결산 추진경과>

(법정기한)

- 총세입부 · 총세출부 마감 : 2. 5 (2. 10)
- 국무회의 심의 : 4. 1
- 감사원 제출 : 4. 8 (4.10)
- 감사원 검사결과 접수 : 5. 20 (5.20)
- 채권, 국유재산, 물품이 일부 과다 · 과소계상되어 조정
- 국회 제출 : 5.30 (5. 31)

* 국회 심의절차는 국회법령에 따라 진행될 예정

2007회계연도 정부결산 요지 (감사원 검사결과 반영 후)

세입세출(일반 · 특별회계)

- 세입 : 216.0조원 (예산 대비 7.5% 증수)
- 세출 : 196.9조원 (현액 대비 96.6% 집행)

- 세계잉여금 : 16.5조원(일반회계 세계잉여금 : 15.3조원)

구분	세입(A)	세출(B)	결산상잉여금(C=A-B)	다음연도이월액(D)	세계잉여금(E=C-D)	불용액
일반회계	1,711,721	1,543,309	168,413	14,985	153,428	25,890
특별회계	448,633	425,738	22,895	11,484	11,411	17,969
합계	2,160,355	1,969,047	191,308	26,469	164,839	43,859

기업회계 · 기금

■ 기업회계(5개)

- 당기순손실 1,163억원 (전년 5,276억원 당기순손실 발생)
- 양곡 4,923억원 당기순손실 발생
- 우편 1,456억원, 우체국예금 1,106억원, 조달 665억원, 책임운영 532억원 당기순이익 발생

■ 기금(60개)

- 당기순이익 19.9조원(전년 5.7조원 당기순손실, 25.6조원 증가)
- 국민연금기금 등 40개 기금 : 당기순이익 23.1조원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 20개 기금 : 당기순손실 3.2조원

계속비·예비비

- 계속비 : 5.3조원(기간국도 8·9차 건설사업)
- 예비비 : 지출 1조 621억원, 이월 78억원, 불용 1조 3,219억원
 - 일반회계 : 지출 1조 621억원, 이월 78억원, 불용 1조 2,301억원
 - 특별회계 : 지출없음, 불용 918억원

채권·채무

- 채권 : 144.8조원(7.7조원 증가, 전년 대비 5.6% 증)
 - 감사원 조정내용 : (당초) 183조 9,718억원→(수정) 144조 8,024억원
 - 사유 : 결손처분액을 '07년부터 국가채권에 포함(38.9조원)하였으나, 회계연도 간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종전과 동일하게 국가채권에서 제외하고 주기로 표시
- 채무 : 289.1조원(15.9조원 증가, 전년 대비 5.8% 증, GDP 대비 32.1%)
 - 외환시장안정용 국채 11.2조원, 일반회계 적자보전 6.7조원 등
- ※ 지방정부를 포함한 전체 국가채무 : 298.9조원 (16.1조원 증가, GDP 대비 33.2%)

국유재산·물품

- 국유재산 : 275.8조원(5.7조원 증가, 전년 대비 2.1% 증)
 - 감사원 조정내용 : (당초) 275조 9,935억원→(수정) 275조 7,525억원
 - 사유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에서 2,410억원 과다계상(청사부지 매매계약 체결후 소유권 미이전 상태에서 총계약금액을 토지로 계상)

- 물품 : 9.5조원(0.6조원 증가, 전년 대비 6.6% 증)
 - 감사원 조정내용 : (당초) 9조 5,642억원→(수정) 9조 5,427억원
 - 사유 : 국무총리실 소관 복권기금에서 215억원 과다계상(복권단말기 단가 오입력)

금융기관이 지급받는 채권이자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제도 폐지

* 이 자료는 2008년 5월 29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에서 발표한 「금융기관이 지급받는 채권이자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제도 폐지를 2008. 6. 1. 시행함」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제도개선 취지) 금년 6. 1일부터 금융기관이 채권 등*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제도가 폐지됨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내국법인,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양도가능한 예금증서·투자신탁의 수익증권·어음 등
 - 현재 금융기관을 포함한 모든 법인이 채권 이자를 지급받을 때 해당 채권 이자에 대해 법인세(14%)를 원천징수당한 후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이미 원천징수당한 법인세를 공제 또는 환급받고 있으나
 - 금융기관이 지급받는 채권 이자는 일반 법인과 달리 본업(금융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인 점을 감안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08. 2. 22 개정)한 바 있으며,
 - 앞으로 금융기관은 채권의 이자를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당하지 않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때 채권 이자에 대한 법인세도 함께 납부하게 됨
-
- (제도개선의 효과)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않는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되고
 - 자금활용기회 증대를 통한 금융기관의 수익성 제고, 채권시장 활성화 및 납세절차 간소화에도 기여하게 됨

IMF와의 조세개혁 워크숍 개최

* 이 자료는 2008년 5월 26일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에서 발표한 「IMF와의 조세개혁 워크숍 개최」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기획재정부는 이희수 세제실장을 대표로 하여 5. 27(화)~28(수) 양일간 미국 워싱턴 D.C. 소재 IMF 본부에서 「조세개혁 워크숍」을 개최하여
 - 최근 국제적인 조세정책 동향 및 향후 세계개편 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교환을 가질 예정임

* 양측 참석자

한국 - 이희수 세제실장 등 7명

IMF - Mr. Carlo Cottarelli(재정국 부국장),

Mr. Isaias Coelho(조세정책과장),

Mr. John Norregaard(조세정책부과장),

Mr. Peter Mullins(수석 이코노미스트),

Mr. Michael Keen(재정국장 자문관) 등 9명

- 이번 워크숍은 IMF의 적극적 협조하에 IMF 재정국(Fiscal Affairs Department) 소속 세계 담당 주요 간부와 지명한 이코노미스트가 참석하여 정책일반, 소득과세, 소비과세, 재산과세 등 4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할 계획임

* 각 세션은 한국측 및 IMF측 프리젠테이션에 이어 질의·토론방식으로 진행

- 금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세계개편 방향 등에 적극 참고할 계획임

2007년도 기금운용 평가결과

- 평가결과는 '09년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 -

* 이 자료는 2008년 5월 27일 기획재정부 재정기획과에서 발표한 「2007년도 기금운용 평가결과」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기획재정부는 47개 기금에 대한 '07년도 기금운용 실적 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5. 27일 국무회의에 보고하였음.
-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민간전문가 50명으로 기금운용평가단(단장 : 이만우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을 구성('08. 3)
- 기금운용평가는
 - 기금사업의 계획 · 집행 · 성과 등 사업단계별로 기 마련된 체크리스트에 의해 사업운영 실적을 평가하는 사업운영부문 평가와
 - 기금자산의 안정성 및 수익성 등을 평가하는 자산운용부문 평가로 나누어 실시
- 사업운영부문 평가결과, 평균점수는 64.2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며, 분야별 결과는 연금운용(68.4점), 복지노동(65.7점), 교육문화(61.5점), 산업과학(61.0점) 순
- 등급별로는 3등급 이상이 약 66.1%, 4등급은 29.3%, 5등급은 4.6% 수준으로 나타남

(단위: 개, %)

	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사업수	109 (100.0)	0 (0.0)	4 (3.7)	68 (62.4)	32 (29.3)	5 (4.6)

- 4개 분야별로 평균점수가 높은 기금은 군인복지기금(85.0점), 공무원연금기금(75.0점),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67.0점), 국민체육진흥기금(66.1점) 등임

사업명(기금명)	우수사례
장병취업활동 지원사업 (군인복지기금)	• 동 사업은 '전역예정 간부의 취업을 제고 및 취업경쟁력 강화'라는 성과목표 달성을 측정하기 위해 '취업인원, 취업률' 등 적절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목표치를 초과달성(101.3%)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용자사업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 '매출액 영업이익률' 및 '사업화 성공률' 등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영업이익률 5.7%(목표 4.8%), 사업화 성공률 67.1%(목표 55.1%) 등 상당부분 성과를 달성

- 자산운용부문 평가결과, 여유자산 규모가 큰 대형기금(5천억원 이상)의 평가점수가 높고, 소형기금(1천억원 미만)의 평가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구분	대형연금 (5천억원 이상)	대형사업 (5천억원 이상)	중형 (5천억원 미만)	소형 (1천억원 미만)
총점	82.0	79.1	76.3	72.6
비계량지표	43.9	53.0	55.2	44.2
계량지표	38.1	26.1	21.1	28.4

- 유형별 우수기금은 공무원연금(84.4점), 수출보협기금(80.7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84.5점), 예보채상환기금(88.2점) 등임

기금명	우수사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위변제 규모 예측능력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대위변제 예상액의 예측력을 높이기 위해 지사별 대위변제 예상액을 매월 조사·전산 집계하고 월별로 예상액 대비 이행실적의 오차를 분석하여 추정의 정확성 제고

- 전년도에 비해 기금자산의 장·단기 적정 배분, 리스크 관리 체계 등 자산 운용의 합리성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일부 중·소형 기금의 경우 자산의 체계적 관리와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되었음

■ 정부는 금번 평가결과를 '09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반영하는 등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적극 활용할 계획

- 사업운영 평가 결과, 성과가 미흡한 사업의 사업비를 원칙적으로 전년 대비 10% 이상 삭감(4·5등급)

* 종전에는 현재의 5등급에 해당하는 사업만 예산을 삭감하였으나 금년에는 예산삭감 기준을 강화

- 자산운용평가 결과에 따라 기금운용비를 삭감 또는 증액

* 유형별로 하위 1/3 순위인 경우 기금운용비 공통증가율에서 0.5%p 삭감, 상위 1/3 순위인 경우 0.5%p 증액

■ '07 기금운용평가 보고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5월 말 국회에 제출되며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예정임.

2007년도 기금운용 평가결과(요약)

1. 개요

-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금운용 제도개선에 활용하기 위하여 '00년부터 매년

기금의 운용실적을 평가

- 평가의 객관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로 『기금운용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

추진경과

- '07년도 기금운용평가편람 배포('07. 12)
- 기금별 기금운용실적 보고서 접수('08. 2월)
- 기금운용평가단 구성(3월)
 - * 이만우(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단장 등 50명
- 기금운용평가 실시(3~5월)
 - 기금별 현장실사 및 의견수렴(3.28~4. 11)
 - 기금운용평가단 중간보고서 제출(4. 21)
 - 기금관리주체 의견수렴(4. 22~4. 30)
 - 기금운용평가단 최종보고서 제출(5월)
- 기금정책심의회 심의·의결(5. 21)

2. '07년도 평가 체계

■ 평가 대상

- (사업운영부문) 총 60개 기금 331개 사업 중 33개 기금 109개(15.0조원) 사업
- (자산운용부문) 총 60개 기금 중 신용보증기금 등 33개 기금

■ 평가 방법

- (사업운영부문) 계획·집행·성과 등 사업 단계별로 체크리스트에 따라 절대평가 실시
- 사업특성을 기준으로 연금금융, 복지노동, 교육문화, 산업과학 등 4개 분야로 구분
- ※ 평가점수에 따라 5단계 등급으로 구분('06년 4등급보다 세분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90점 이상	89~80	79~60	59~50	50점 미만

* '06년 : 우수(85점 이상), 다소 우수(84~70), 보통(69~50), 미흡(50점 미만)

- (자산운용부문)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 유도를 위해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상대평가 실시
- 여유자금 규모 및 기금성격에 따라 4개 유형으로 분류
 - 대형연금(5천억원 이상), 대형사업(5천억원 이상), 중형사업(5천억원 미만), 소형사업(1천억원 미만) 유형
-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를 종합평가함으로써 기금의 자산운용 실적향상과 자산운용체계 개선 유도
 - 계량지표(7개) : 절대수익률, 적정유동성, 위험조정수익률 등
 - 비계량지표(6개) : 운용정책의 적정성, 관리활동의 효율성 등

■ 평가결과의 활용

- 사업운영평가 결과 4등급 이하를 받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전년 대비 예산 10% 이상 삭감
- 자산운용평가 결과에 따라 기금운용비를 삭감 또는 증액
 - ※ 유형별로 하위 1/3 순위인 경우 기금운용비 공통증가율에서 0.5%p 삭감, 상위 1/3 순위인 경우 0.5%p 증액

3. '07년도 평가결과

가. 사업운영평가 결과

■ 사업별 평가점수 평균은 64.2점 수준

(단위 : 개, %)

	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사업수	109 (100.0)	0 (0.0)	4 (3.7)	68 (62.4)	32 (29.3)	5 (4.6)

■ 단계별로는 집행단계 점수가 계획단계와 성과단계 점수에 비해 높은 수준

단계(점수)	계획(30점)	집행(20점)	성과(50점)
'07 점수 (100점만점 환산)	20.3점 (67.7점)	15.2점 (76.0점)	26.8점 (53.6점)

- 분야별 점수는 연금금융, 복지노동, 교육문화·산업과학 순
- 분야별 최상위는 공무원연금, 군인복지,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분야별 점수 및 사업수〉

구 분	연금금융	복지노동	교육문화	산업과학
전체 평균	68.4점	65.7점	61.5점	61.0점
기금수(사업수)	3개(7개)	12개(42개)	10개(37개)	8개(23개)

* '06년 평가결과 : 연금금융 > 산업과학 > 교육문화 > 복지노동

나. 자산운용평가 결과

- 여유자산 규모가 큰 대형기금의 평가점수가 높은 경향

〈분야별 점수〉

구 분	대형연금	대형사업	중형	소형
총점	82.0	79.1	76.3	72.6
비계량지표	43.9	53.0	55.2	44.2
계량지표	38.1	26.1	21.1	28.4

4. 향후 추진계획

- 국무회의 보고(5. 27)
- 국회 제출(5. 30)
- '0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평가결과 반영(6~9월)

기금운용평가단 명단(총 50명)

구 분	이 름
총괄반 (7명)	이만우(고려대 경제학과, 단장), 조준모(성균관대), 배인명(서울여대), 광노성(동국대), 문형표(KDI), 연강흠(연세대), 김용민(국민대)
사업운영 평가반 (22명)	복지노동 (6명) 조준모(성균관대), 정현숙(상명대), 최균(한림대), 박석순(이화여대), 이강성(삼육대), 강신욱(보건사회연)
	교육문화 (6명) 배인명(서울여대), 이철인(성균관대), 윤덕룡(대외경제정책연), 황근(선문대), 오명근(동주대), 김성경(성서대)
	산업과학 (5명) 광노성(동국대), 이성우(서울대), 이정희(중앙대), 김영세(연세대), 홍세준(고려대)
	연금금융 (5명) 문형표(KDI), 김용하(순천향대), 채희울(경기대), 문우식(서울대), 사공진(한양대)
자산운용 평가반 (12명)	연금 (3명) 연강흠(연세대), 윤창현(서울시립대), 이인형(에프엔가이드)
	대형사업 (2명) 김대식(한양대), 김재철(한국증권연)
	중형사업 (4명) 백원기(삼일회계), 박원암(홍익대), 김필규(한국증권연구원), 위경우(숙명여대)
	소형사업 (3명) 김광수(대주회계), 왕규호(서강대), 백승관(홍익대)
경영 평가반 (15명)	종합경영 (6명) 김용민(국민대), 김동욱(성균관대), 전상경(한양대), 김진모(서울대), 박정수(이화여대), 김승용(동국대)
	경영관리 (5명) 노용진(산업대), 안형택(동국대), 이수희(충북개발연), 임창희(홍익대), 오세경(건국대)
	계량팀 (4명) 이주현(안진회계), 윤규섭(삼일회계), 박성주(한영회계), 조승우(신한회계)

07년 기금운용평가 대상기금

기 금 명	기금운용평가		비고(자산)
	사업	자산	
복권기금	○		×(계정성)
신용보증기금		○	매년(경평)
기술신용보증기금		○	매년(경평)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매년(경평)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	매년(경평)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	
공공자금관리기금	○		×(계정성)
공적자금상환기금			×(계정성)
대외경제협력기금		○	
외국환평형기금			×(계정성)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	○	매년(경평)
사학진흥기금	○	○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		
원자력연구개발기금			
남북협력기금	○	○	
국제교류기금	○	○	
군인복지기금	○	○	
군인연금기금		○	
공무원연금기금	○	○	매년(경평)
관광진흥개발기금	○		
국민체육진흥기금	○	○	매년(경평)
문화예술진흥기금		○	매년(경평)
신문발전기금		○	
지역신문발전기금			
영화발전기금			×('07,하반기신설)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농작물재해보험기금			
농지관리기금	○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계정성)
FTA기금	○	○	
축산발전기금	○		
수출보험기금		○	매년(경평)

기금명	기금운용평가		비고(자산)
	사업	자산	
전력산업기반기금	○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	매년(경평)
국민건강증진기금	○	○	
국민연금기금		○	매년(경평)
응급의료기금	○	○	
금강수계관리기금	○	○	
낙동강수계관리기금	○	○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	○	
한강수계관리기금	○	○	
고용보험기금	○		
근로자복지진흥기금	○	○	매년(경평)
산업재해보상보험예방기금	○		
임금채권보장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적업재활기금	○		
여성발전기금	○	○	
국민주택기금	○		
수산발전기금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훈기금	○	○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		
부실채권정리기금		○	매년(경평)
청소년육성기금	○	○	
방송발전기금	○	○	
총 60개	33개	33개	

'07년도 사업운영부문 평가결과

(단위: 점수, 개)

분야	기금명	평점	순위	사업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총계	64.2	-	109	0	4	68	32	5
산업과 학	과학기술진흥기금	52.8	8	2	0	0	0	2	0
	농산물가격안정기금	60.7	5	3	0	0	2	1	0
	국민주택기금	63.0	4	3	0	0	3	0	0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67.0	1	5	0	0	4	1	0
	전력산업기반기금	60.6	6	4	0	0	3	1	0
	농지관리기금	63.3	3	1	0	0	1	0	0
	축산발전기금	55.9	7	4	0	0	1	2	1
	수산발전기금	65.0	2	1	0	0	1	0	0
	소계(평균)	61.0	-	23	0	0	15	7	1
	국민과 화	국제교류기금	58.3	9	2	0	0	1	1
남북협력기금		59.8	8	4	0	0	2	2	0
방송발전기금		63.6	4	6	0	0	4	1	1
사학진흥기금		65.0	2	1	0	0	1	0	0
여성발전기금		51.8	10	3	0	0	0	2	1
청소년육성기금		64.0	3	4	0	0	3	1	0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62.4	6	3	0	0	1	2	0
관광진흥개발기금		60.5	7	5	0	0	2	2	1
복권기금		63.1	5	4	0	0	2	2	0
국민체육진흥기금		66.1	1	5	0	0	5	0	0
소계(평균)	61.5	-	37	0	0	21	13	3	
복지 노 동	고용보험기금	64.1	6	9	0	0	9	0	0
	금강수계관리기금	62.2	9	2	0	0	1	1	0
	낙동강수계관리기금	67.4	4	2	0	0	2	0	0
	한강수계관리기금	61.2	10	2	0	0	1	1	0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69.3	2	2	0	0	2	0	0
	국민건강증진기금	58.7	12	8	0	0	3	5	0
	장애인고용촉진기금	60.4	11	3	0	0	2	1	0
	근로자복지진흥기금	65.2	5	2	0	0	2	0	0
	산업재해보상보험예방기금	64.1	7	6	0	1	3	1	1
	군인복지기금	85.0	1	2	0	2	0	0	0
응급의료기금	63.3	8	2	0	1	0	1	0	
보훈기금	68.0	3	2	0	0	2	0	0	
소계(평균)	65.7	-	42	0	4	27	10	1	
국민의 예	공무원연금기금	75.0	1	1	0	0	1	0	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75.0	1	1	0	0	1	0	0
	공공자금관리기금	55.3	3	5	0	0	3	2	0
	소계(평균)	68.4	-	7	0	0	5	2	0

'07년도 자산운용부문 평가결과

(단위: 점수)

구분	기금명	순위	07년도 점수		
			계량	비계량	합계
대형 연금	공무원연금기금	1	41.3	43.1	84.4
	사학연금기금	2	40.2	43.0	83.2
	국민연금기금	3	32.8	45.6	78.4
	소계(평균)		38.1	43.9	82.0
대형 사업	수출보험기금	1	27.0	53.7	80.7
	신용보증기금	2	25.2	53.7	78.9
	부실채권정리기금	3	26.2	51.6	77.8
	소계(평균)		26.1	53.0	79.1
중형	주택금융신용보증	1	21.7	62.8	84.5
	남북협력기금	2	20.8	63.6	84.4
	국민체육진흥기금	2	26.5	57.9	84.4
	대외경제협력기금	4	21.6	61.1	82.7
	기술신용보증기금	5	20.5	60.8	81.3
	문예진흥기금	6	19.1	62.0	81.1
	근로자복지진흥기금	7	21.4	53.9	75.3
	국제교류기금	8	21.1	53.5	74.6
	방송발전기금	9	19.2	51.2	70.4
	군인연금기금	10	20.4	41.1	61.5
	군인복지기금	11	20.3	38.9	59.2
	소계(평균)		21.1	55.2	76.3
	소형	예보채상환기금	1	30.4	57.8
정보통신진흥기금		2	30.4	56.6	87.0
청소년육성기금		3	37.5	47.0	84.5
응급의료기금		4	31.5	48.2	79.7
FTA기금		5	28.4	48.8	77.2
사학진흥기금		5	26.2	51.0	77.2
국민건강증진기금		7	28.1	49.0	77.1
영산섬진수계기금		8	27.7	44.3	72.0
신문발전기금		9	32.2	37.6	69.8
금강수계기금		10	25.5	44.1	69.6
한강수계기금		11	20.5	46.9	67.4
낙동강수계기금		12	24.4	42.0	66.4
여성발전기금		13	28.1	36.9	65.0
농어가목돈마련기금		14	30.4	33.1	63.5
보훈기금		15	27.3	36.0	63.3
순국선열기금		16	25.4	28.6	54.0
소계(평균)		28.4	44.2	72.6	

국세청 홈택스 방문자 2억명 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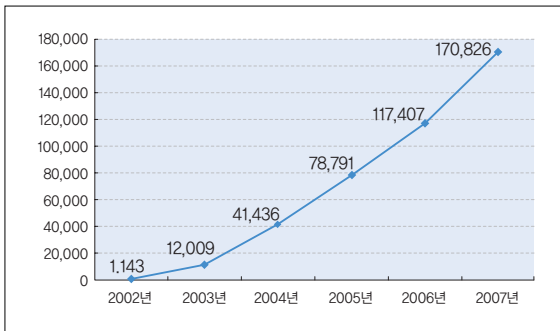
- 홈택스 지속 혁신으로 납세협력비용 감축과 국민신뢰 제고 -

* 이 자료는 2008년 6월 4일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에서 발표한 「국세청 홈택스 방문자 2억명 돌파」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방문자가 5월 24일 2억명을 돌파하였음
- 2002년 4월 홈택스 서비스 개시 이래 4년 만인 2006년 7월 1억명이 방문한 데 이어 불과 1년 10개월 만인 금년 5월에 방문자 수가 2억명을 넘어섰음

연도별 방문자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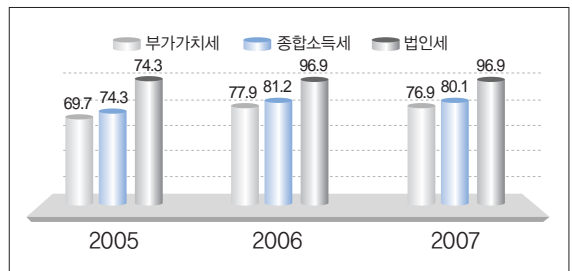
(단위 : 천명)



- 홈택스는 세금 신고·납부와 더불어 국세관련 민원증명 발급, 양도세 및 증여세 계산 등 각종 세금 업무를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임
- 현재 약 650만명의 납세자가 동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세금신고의 경우 법인세의 97%, 종합소득세의 80%, 부가가치세의 77%가 홈택스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세

정을 이룬 것으로 평가 받고 있음

세목별 전자신고 추이



* 주요국 전자신고율('06): 미국(소득세 54.3%), 영국(소득세 33%, VAT 10%), 프랑스(소득세 16.3%, VAT 10.7%), 일본(소득세 2.3%, 소비세 10.3%)

- 홈택스 방문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전자신고율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게 된 것은
 -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인터넷 민원증명 발급서비스, 납세자별 맞춤형 세금정보 안내인 홈택스 쪽지서비스, 1세대 1주택 비과세 확인서비스 등 이용자에게 다양하고 유용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 IT 서비스관리 분야의 국제표준인 ISO20000 인증을 획득하는 등 납세자가 편리하게 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 향상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보임
- 국세청은 6. 3일 홈택스 방문자 2억명 돌파를 기념

하여 2억번째 방문자에게는「노트북」을 증정하고, 앞뒤 방문자 2명씩에게도 소정의 경품을 지급하는 등 축하행사를 가졌음

- 앞으로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각종 국세관련 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협력 비용을 절감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세정을 펼치도록 노력할 것임

7월 1일부터 금지금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 시행

- 금사업자는 6월부터 금거래계좌를 개설하세요! -

* 이 자료는 2008년 5월 30일 국제청 부가가치세과에서 발표한 「7월 1일부터 금지금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 시행」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금사업자 간의 금지금 거래시에는,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고, 매입자가 직접 지정금융기관을 통하여 정부에 납부하도록 하는 「금지금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됨

* 금지금이란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 99.5% 이상인 금을 말함

- 금지금을 거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금지금 거래 전에 지정금융기관에 금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함
- 금거래계좌는 6월 2일부터 지정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음
- ※ 지정금융기관 : 신한은행
- 동 제도의 적용대상 금사업자는 12,000명 정도로 추산됨

■ 제도 도입 배경

-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도록 하는 현행제도를 악용, 무자료로 매입한 금지금을 과세로 매출하여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은 후 이를 정부에 납부하지 않고 도주하는 방식의 부가세 포탈 사례가 발생
- 이와 같은 금지금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포탈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금지금에 대하여는

매출자 납부방식에서 매입자 납부방식으로 전환하게 된 것임

■ 제도 적용대상

- 금지금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는 금사업자 간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금지금을 거래하는 경우에 적용됨
- 사업자간 거래에만 적용되므로 소비자가 금지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 금지금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금지금·귀금속의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써, 12,000명 정도로 추산됨

■ 제도의 주요 내용

금거래계좌의 개설

- 금지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금사업자는 지정금융기관에 금거래 계좌를 개설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둘 이상의 금거래계좌를 개설할 수 있음
- 금지금을 거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6월부터 지정금융기관인 신한은행의 전국 지점에서 금거래계좌를 개설할 수 있음

금거래계좌를 이용한 대금결제 및 부가세 입금

- 금사업자가 금지금을 다른 금사업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공급받는 사업자로 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 공급받는 사업자가 공급한 사업자를 특정하여, 금지금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금거래계좌에 입금하여야 함
- 금사업자는 금거래계좌 입출금을 위해 전용단말기 또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수 있음
- 금거래계좌를 개설하면서 전용단말기를 신청하는 경우, 지정금융기관에서 무상으로 제공함

금거래계좌에 입금된 부가세의 정산·환급 및 국고납입

- 금지금 매입자가 매입시에 지정금융기관에 입금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는, 그 매입자의 금지금 매출시 거래 상대방이 지정금융기관에 입금하는 매출세액의 범위 내에서 실시간 환급함
- 이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라 사업자들의 자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임
- 지정금융기관은 정산·환급하고 남은 부가가치세액을 예정 또는 확정 신고기간에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국고에 입금
- 금사업자들은 지정금융기관이 정산·환급한 후 국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

금거래계좌 미사용에 대한 불이익

- 금거래계좌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
- 금사업자가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금지금 거래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 공급한 금사업자 및 공급받은 금사업자에게 금지금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징수
- 매입세액 불공제

- 금지금을 공급받은 금사업자가 금거래계좌를 통하여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금지금을 공급한 금사업자로 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더라도, 동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 지연납부 가산세
- 금지금을 공급받은 금사업자가 금지금을 공급받은 날에 부가가치세액을 금거래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1일 1만분의 3을 당해 부가가치세액에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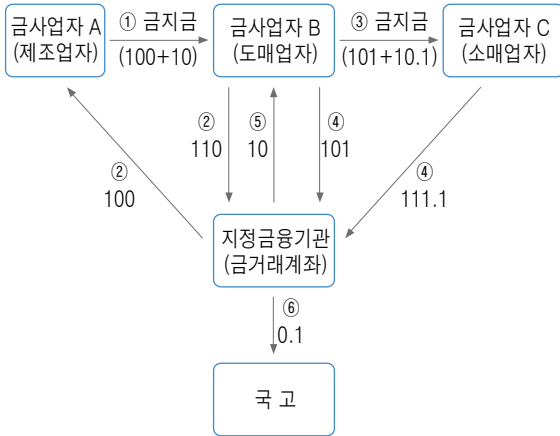
금거래계좌의 성실한 이용에 대한 세제혜택

- 금사업자가 금거래계좌를 성실히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액 또는 소득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 금거래계좌 이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50%
- 금거래계좌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5%

■ 기대효과

- 금지금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의 시행에 따라 금지금거래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되고 세원이 양성화되어
- 금지금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포탈이 근원적으로 차단되고 귀금속산업의 건전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금지금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 흐름



- ① 금사업자 A가 금사업자 B에게 100억원의 금지금을 매출
- ② 금사업자 B는 금지금 가액 100억원 및 부가세액 10억원을 금거래계좌에 입금(결제)→지정금융기관은 금지금 가액 100억원을 A에게 지급
- ③ B가 금사업자 C에게 금지금을 101억원에 매출
- ④ C는 매입세액(B의 매출세액) 10.1억원을 포함한 111.1억원을 금거래계좌에 입금(결제)→지정금융기관은 금지금가액 101억원을 B에게 지급
- ⑤ C가 매입세액(B의 매출세액)을 입금하는 즉시, 지정금융기관은 B에 대하여 매출세액(10.1억원)의 한도 내에서 매입세액(10억원)을 환급
- ⑥ 신고기간 도래시, 지정금융기관은 실시간 환급 후의 잔액(0.1억원)을 국고에 납부



| 재정통계 |

- 조세범칙 조사 실적
- 연도별 국세체납 현황
- 세목별 국세체납액 정리 현황
- 세목별 과세적부심사제 처리실적
- 내국세 징세비 추이
- 국세청 정원 추이

1. 조세범칙 조사 실적

(단위: 건, 백만원)

연 도	조사건수	징수실적			범칙처리내용		
		계	추징세액	벌과금	통고	고발	무혐의
1966~1970	5,662	5,941	3,919	2,022	3,969	50	1,643
1971~1975	2,186	20,582	17,467	3,115	1,670	152	364
1976~1980	1,611	75,149	66,535	8,614	1,256	250	105
1976	354	17,494	15,597	1,897	296	32	26
1977	421	16,466	15,201	1,265	353	42	26
1978	267	10,535	8,234	2,301	226	29	12
1979	267	10,173	8,725	1,448	172	80	15
1980	302	20,481	18,778	1,703	209	67	26
1981~1985	784	85,342	79,905	5,437	565	118	101
1981	374	14,179	12,204	1,975	286	44	44
1982	178	8,646	7,314	1,332	135	20	23
1983	166	54,516	53,080	1,436	105	36	25
1984	58	5,424	4,799	625	35	14	9
1985	8	2,579	2,510	69	4	4	-
1986~1990	98	76,467	75,919	548	33	64	1
1986	8	5,197	5,121	76	2	6	-
1987	7	11,278	11,278	-	-	7	-
1988	55	43,828	43,363	465	30	25	-
1989	18	7,243	7,243	-	-	17	1
1990	10	8,921	8,914	7	1	9	-
1991~1994	47	107,411	107,246	165	4	43	-
1991	7	2,418	2,398	20	1	6	-
1992	3	30,309	30,309	-	-	3	-
1993	27	66,504	66,431	73	2	25	-
1994	10	8,180	8,108	72	1	9	-
1995	15	35,024	34,970	54	1	14	-
1996	20	30,161	30,161	-	-	20	-
1997	29	36,789	36,789	-	-	28	1
1998	83	138,461	137,975	486	10	71	2
1999	121	210,724	208,985	1,739	18	98	5
2000	102	339,151	338,788	363	8	92	2
2001	130	409,130	407,164	1,966	17	102	11
2002	115	136,892	136,539	353	8	95	12
2003	172	397,587	396,985	602	6	164	2
2004	347	1,029,091	1,026,218	2,873	28	308	11
2005	327	908,838	904,502	4,336	39	277	11
2006	399	535,453	529,878	5,575	41	328	30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2. 연도별 국세체납 현황

(단위: 억원)

연 도	총체납액	정리실적	미정리
1993	60,356	35,936	24,420
1994	62,901	42,830	20,071
1995	71,301	50,048	21,253
1996	81,249	57,706	23,543
1997	95,550	67,877	27,673
1998	121,799	86,925	34,874
1999	127,065	92,580	34,485
2000	120,574	89,283	31,291
2001	133,930	105,155	28,775
2002	148,544	119,693	28,851
2003	159,974	130,803	29,171
2004	186,230	146,506	39,724
2005	192,954	149,056	43,898
2006	187,191	146,621	40,570

주: 총체납액은 전년도 이월액(미정리)에 현년도 발생액을 합한 금액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3. 세목별 국세체납액 정리 현황

(단위: 억원)

연도	구분	계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과년도	기타세	
1998	총체납액	121,799	28,733	5,231	4,018	29,498		39,729	14,590	
	정리실적	계	86,925	22,376	4,013	2,356	21,761		26,602	9,817
		현금	26,986	3,733	1,164	724	10,176		7,769	3,420
		결산	47,506	14,666	2,461	450	9,813		15,191	4,925
		기타	12,433	3,977	388	1,182	1,772		3,642	1,472
미정리	34,874	6,357	1,218	1,662	7,737		13,127	4,773		
1999	총체납액	127,065	24,982	7,425	4,181	27,536		46,782	16,159	
	정리실적	계	92,580	19,593	6,113	2,594	20,087		32,826	11,367
		현금	28,481	2,745	1,344	665	8,428		11,173	4,126
		결산	53,237	14,104	4,209	1,213	9,291		18,356	6,064
		기타	10,862	2,744	560	716	2,368		3,297	1,177
미정리	34,485	5,389	1,312	1,587	7,449		13,956	4,792		
2000	총체납액	120,574	23,394	5,720	1,874	28,561		44,952	16,073	
	정리실적	계	89,283	18,848	4,626	1,073	20,235		33,010	11,491
		현금	30,602	2,594	1,318	398	9,815		12,102	4,375
		결산	45,885	13,858	3,000	360	7,460		15,826	5,381
		기타	12,796	2,396	308	315	2,960		5,082	1,735
미정리	31,291	4,546	1,094	801	8,326		11,942	4,582		
2001	총체납액	133,930	27,509	7,254	2,062	34,725		45,524	16,856	
	정리실적	계	105,155	23,170	6,405	1,332	26,796		34,621	12,831
		현금	37,608	3,827	1,565	436	12,651		13,862	5,267
		결산	56,125	16,422	4,486	570	11,487		16,951	6,209
		기타	11,422	2,921	354	326	2,658		3,808	1,355
미정리	28,775	4,339	849	730	7,929		10,903	4,025		
2002	총체납액	148,544	29,177	10,891	1,869	41,197		45,260	20,150	
	정리실적	계	119,693	24,674	9,324	1,438	31,068		36,851	16,338
		현금	45,582	4,014	1,765	380	14,081		17,373	7,969
		결산	62,082	18,142	6,797	855	13,917		15,514	6,857
		기타	12,029	2,518	762	203	3,070		3,964	1,512
미정리	28,851	4,503	1,567	431	10,129		8,409	3,812		

3. 세목별 국세체납액 정리 현황 <계속>

(단위: 억원)

연 도	구 분	계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과년도	기타세	
2003	총체납액	159,974	29,140	13,377	1,675	52,350		44,198	19,234	
	정리실적	계	130,803	25,123	11,947	1,388	39,927		36,793	15,625
		현금	45,192	3,992	2,518	442	17,245		14,977	6,018
		결손	70,909	18,170	8,514	606	18,326		17,235	8,058
		기타	14,702	2,961	915	340	4,356		4,581	1,549
미정리	29,171	4,017	1,430	287	12,423		7,405	3,609		
2004	총체납액	186,230	33,202	15,643	2,413	68,176		47,623	19,173	
	정리실적	계	146,506	27,306	13,600	1,644	51,103		37,971	14,882
		현금	54,265	5,510	3,135	632	21,862		16,850	6,276
		결손	73,838	18,325	9,689	737	22,215		15,941	6,931
		기타	18,403	3,471	776	275	7,026		5,180	1,675
미정리	39,724	5,896	2,043	769	17,073		9,652	4,291		
2005	총체납액	192,954	23,891	14,174	1,704	64,869	5,800	58,924	23,592	
	정리실적	계	149,056	19,848	11,563	1,242	46,897	4,530	46,895	18,081
		현금	62,686	2,598	3,452	577	23,530	1,255	22,727	8,547
		결손	73,964	16,050	7,764	527	21,534	2,755	18,007	7,327
		기타	12,406	1,200	347	138	1,833	520	6,161	2,207
미정리	43,898	4,043	2,611	462	17,972	1,270	12,029	5,511		
2006	총체납액	187,191	22,044	11,340	1,842	58,158	6,501	63,943	23,363	
	정리실적	계	146,621	17,878	9,503	1,455	42,699	5,204	51,821	18,061
		현금	65,358	2,690	3,198	497	24,980	1,582	23,463	8,948
		결손	69,835	14,256	6,051	751	15,359	3,101	23,284	7,033
		기타	11,428	932	254	207	2,360	521	5,074	2,080
미정리	40,570	4,166	1,837	387	15,459	1,297	12,122	5,302		

주: 정리실적 중 기타는 결정취소를 의미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4. 세목별 과세적부심사제 처리실적

(단위: 건, 백만원)

연 도		요처리건수			처리건수				감세액	이월건수
		계	전년이월	당년접수	계	채택	불채택	심의제외		
1996	계	7,377	-	7,377	6,572	4,575	1,509	488	150,735	805
	종합소득세	430	-	430	398	282	91	25	7,457	32
	양도소득세	5,643	-	5,643	4,992	3,620	981	391	88,644	651
	법인세	206	-	206	200	96	87	17	21,922	6
	상속세	115	-	115	100	57	35	8	14,223	15
	증여세	574	-	574	505	340	140	25	13,721	69
	부가가치세	369	-	369	338	158	161	19	4,745	31
기타	40	-	40	39	22	14	3	23	1	
1997	계	8,999	805	8,194	8,348	5,568	2,274	506	240,337	651
	종합소득세	916	32	884	872	593	223	56	20,774	44
	양도소득세	5,913	651	5,262	5,450	3,875	1,226	349	110,554	463
	법인세	287	6	281	261	115	125	21	32,932	26
	상속세	251	15	236	222	150	64	8	24,913	29
	증여세	883	69	814	839	528	275	36	30,616	44
	부가가치세	644	31	613	603	232	338	33	16,544	41
기타	105	1	104	101	75	23	3	4,004	4	
1998	계	8,119	651	7,468	7,449	4,379	2,693	377	251,926	670
	종합소득세	1,131	44	1,087	1,044	638	340	66	25,609	87
	양도소득세	3,799	463	3,336	3,510	2,393	950	167	80,822	289
	법인세	427	26	401	387	146	214	27	41,500	40
	상속세	365	29	336	262	153	98	11	28,381	54
	증여세	899	44	855	841	472	332	37	36,033	107
	부가가치세	1,233	41	1,192	1,150	482	617	51	22,034	83
기타	265	4	261	255	95	142	18	17,547	10	
1999	계	5,703	670	5,033	5,245	2,881	2,112	252	277,263	458
	종합소득세	1,130	87	1,043	1,043	619	355	69	45,976	87
	양도소득세	1,803	289	1,514	1,656	1,009	546	101	45,129	147
	법인세	529	40	489	471	210	248	13	97,343	58
	상속세	353	54	299	343	197	143	3	43,791	10
	증여세	597	107	490	565	300	247	18	16,668	32
	부가가치세	1,213	83	1,130	1,098	522	528	48	24,563	115
기타	78	10	68	69	24	45	-	3,793	9	
2000	계	2,423	458	1,965	2,212	1,201	882	129	373,044	211
	종합소득세	393	87	306	368	231	116	21	14,071	25
	양도소득세	750	147	603	687	389	258	40	15,634	63
	법인세	321	58	263	295	153	130	12	252,207	26
	상속세	189	10	179	171	101	67	3	15,816	18
	증여세	261	32	229	238	107	113	18	18,987	23
	부가가치세	459	115	344	409	199	180	30	53,470	50
기타	50	9	41	44	21	18	5	2,859	6	
2001	계	2,387	211	2,176	2,159	998	979	182	175,400	228
	종합소득세	430	25	405	353	188	141	24	13,684	77
	양도소득세	513	63	450	486	210	232	44	10,727	27
	법인세	378	26	352	334	150	159	25	81,771	44
	상속세	207	18	189	194	126	60	8	18,308	13
	증여세	293	23	270	272	93	130	49	15,600	21
	부가가치세	504	50	454	470	202	237	31	22,416	34
기타	62	6	56	50	29	20	1	12,894	12	

4. 세목별 과세적부심사제 처리실적 <계속>

(단위: 건, 백만원)

연도		요처리건수			처리건수				감세액	이월건수
		계	전년이월	당년접수	계	채택	불채택	심의제외		
2002	계	2,041	228	1,813	1,825	708	963	154	253,446	216
	종합소득세	396	77	319	371	168	172	31	22,611	25
	양도소득세	357	27	330	313	100	190	23	9,830	44
	법인세	371	44	327	316	148	138	30	132,899	55
	상속세	136	13	123	119	54	55	10	16,008	17
	증여세	267	21	246	232	79	134	19	13,269	35
	부가가치세	437	34	403	404	139	226	39	56,344	33
기타	77	12	65	70	20	48	2	2,485	7	
2003	계	2,887	216	2,671	2,446	872	1,449	125	348,392	441
	종합소득세	466	25	441	396	163	210	23	18,269	70
	양도소득세	402	44	358	355	124	204	27	7,116	47
	법인세	498	55	443	383	140	231	12	177,930	115
	상속세	126	17	109	102	48	50	4	23,104	24
	증여세	340	35	305	289	103	178	8	14,084	51
	부가가치세	978	33	945	848	279	528	41	105,429	130
기타	77	7	70	73	15	48	10	2,460	4	
2004	계	4,094	441	3,653	3,614	1,304	2,135	175	345,683	480
	종합소득세	714	70	644	637	266	341	30	68,794	77
	양도소득세	562	47	515	488	180	273	35	24,636	74
	법인세	755	117	638	684	278	380	26	162,889	71
	상속세	124	24	100	97	51	42	4	6,697	27
	증여세	520	51	469	411	170	221	20	49,855	109
	부가가치세	1,368	128	1,240	1,252	348	848	56	32,644	116
기타	51	4	47	45	11	30	4	168	6	
2005	계	4,911	480	4,431	4,242	1,596	2,375	271	409,519	669
	종합소득세	1,065	77	988	907	409	435	63	26,136	158
	양도소득세	678	74	604	573	216	291	66	9,239	105
	법인세	747	71	676	632	272	336	24	256,854	115
	상속세	124	27	97	110	51	53	6	3,524	14
	증여세	538	109	429	492	169	295	28	34,863	46
	부가가치세	1,701	116	1,585	1,473	459	937	77	75,834	228
기타	58	6	52	55	20	28	7	3,069	3	
2006	계	6,467	669	5,798	5,963	2,053	3,508	402	306,450	504
	종합소득세	1,700	158	1,542	1,617	589	900	128	18,690	83
	양도소득세	1,066	105	961	984	364	546	74	14,451	82
	법인세	834	115	719	753	285	426	42	209,339	81
	상속세	100	14	86	91	46	41	4	7,714	9
	증여세	567	46	521	510	198	269	43	10,536	57
	부가가치세	2,145	228	1,917	1,956	559	1,296	101	45,284	189
기타	55	3	52	52	12	30	10	436	3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5. 내국세 징세비 추이

연 도	징수세액(억원)	징세비(백만원)	1인당 징수세액(백만원)	1인당 징수비(천원)	징수세액 100원당 징세비(원)
1966	700	1,531		255	2.18
1967	1,038	2,179		311	2.09
1968	1,564	3,246		377	2.07
1969	2,181	3,901		451	1.78
1970	2,838	4,299		477	1.51
1971	3,555	4,894		532	1.37
1972	3,743	5,558		625	1.48
1973	4,391	5,659		601	1.29
1974	7,180	8,287		874	1.15
1975	10,442	17,091		1,809	1.16
1976	15,499	18,591		1,968	1.2
1977	18,992	29,114		2,544	1.53
1978	25,613	36,018		3,077	1.4
1979	34,400	43,812		3,648	1.27
1980	42,177	51,209	350	4,255	1.21
1981	53,079	66,748		5,402	1.25
1982	62,147	79,239		6,448	1.27
1983	72,905	85,997		6,921	1.18
1984	79,649	91,492	639	7,342	1.15
1985	89,416	102,796	710	8,163	1.15
1986	100,990	113,833	801	9,031	1.13
1987	120,159	126,025	953	9,992	1.05
1988	150,838	146,629	1,196	11,625	0.97
1989	180,780	174,116	1,380	13,292	0.96
1990	226,778	210,614	1,609	14,944	0.93
1991	269,854	267,149	1,914	18,954	0.99
1992	320,853	312,994	2,212	21,583	0.98
1993	363,747	351,328	2,457	23,729	0.97
1994	436,905	400,456	2,915	26,722	0.92
1995	517,487	471,945	3,453	31,492	0.91
1996	591,997	551,158	3,865	36,000	0.93
1997	636,459	582,151	4,164	38,000	0.91
1998	635,315	581,022	4,185	38,000	0.91
1999	704,769	595,132	4,651	39,000	0.84
2000	866,013	691,228	5,715	46,000	0.8
2001	892,717	755,329	5,894	50,000	0.85
2002	966,166	817,575	6,374	54,000	0.85
2003	1,070,486	879,652	7,062	58,000	0.82
2004	1,102,172	949,234	7,190	62,000	0.86
2005	1,204,237	976,479	7,710	63,000	0.81
2006	1,302,609	1,023,822	7,948	62,000	0.79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6. 국세청 정원 추이

(단위: 명)

연 도	계	본청	국세공무원 교육원	국세청 기술연구소	국세청 전화세무상담센터	지방국세청	세무서
1966	5,500	208	-	10		376	4,906
1967	7,500	384	-	10		494	6,612
1968	9,192	384	33	26		716	8,033
1969	9,247	395	88	26		786	7,952
1970	9,611	309	88	26		789	8,399
1971	9,795	318	88	26		789	8,574
1972	9,455	327	69	26		716	8,317
1973	10,067	361	69	34		781	8,822
1974	10,406	383	61	38		863	9,061
1975	10,372	383	61	38		823	9,067
1976	11,573	413	61	38		920	10,141
1977	12,369	494	62	38		937	10,838
1978	12,663	509	62	39		1,014	11,039
1979	13,358	515	61	39		1,315	11,428
1980	13,506	594	63	40		1,333	11,476
1981	14,299	848	72	42		1,436	11,901
1982	14,299	847	72	42		1,438	11,900
1983	14,398	842	84	42		1,436	11,994
1984	14,702	1,126	84	42		1,535	11,915
1985	14,852	1,131	84	42		1,610	11,985
1986	14,869	1,188	84	42		1,610	11,945
1987	14,870	1,189	84	42		1,610	11,945
1988	14,878	1,154	84	42		1,654	11,944
1989	15,391	1,154	84	42		2,045	12,066
1990	16,481	696	84	42		2,643	13,016
1991	16,945	725	84	42		2,906	13,188
1992	16,945	725	84	42		2,895	13,199
1993	17,287	699	83	40		2,927	13,538
1994	17,491	707	83	40		2,959	13,702
1995	17,491	699	83	40		2,940	13,729
1996	17,838	704	84	39		2,134	14,877
1997	17,625	686	79	36		2,104	14,720
1998	17,253	643	71	32		2,172	14,335
1999	16,855	676	65	32		3,071	13,011
2000	16,855	705	71	32		3,075	12,972
2001	16,845	703	71	32	101	2,924	13,014
2002	16,845	717	83	32	103	2,897	13,013
2003	16,845	717	83	32	103	2,845	13,065
2004	17,029	718	83	32	125	2,813	13,258
2005	17,314	759	83	32	125	2,644	13,671
2006	18,049	801	66	32	128	2,577	14,445

주: 각 연도말 기준임.

자료: 국세청, 『국세청 30년사』,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각 언론매체에 보도된 한국조세연구원 관련 주요 기사내용입니다.

- 편집자 주 -

국민연금 등 공적지출, 5년 새 54.4%↑ 가구평균 23만 6,000원... 도시근로자 月소득 8% 차지

- 매달 23.6만원 공적지출
- 조세 5년간 75% 이상 늘어
- 국민부담률 28.6% 확대

세금을 비롯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피할 수 없는 공적지출 규모가 5년 전보다 50% 이상 급증했다. 또 도시근로자는 매달 소득의 8%를 공적지출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통계청의 '1분기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2인 이상 전국가구의 공적지출은 월평균 23만 6,000원으로 지난해보다 9.2% 증가했다.

가구별 공적지출 추이

(단위: 원)

구 분	2003 1/4	2004 1/4	2005 1/4	2006 1/4	2007 1/4	2008 1/4	
조세	전가구	48,143	54,651	60,134	64,363	75,356	85,208
	근로자가구	75,054	83,710	92,822	98,464	114,786	131,581
공적연금	전가구	57,813	66,692	68,899	75,177	75,647	79,461
	근로자가구	75,909	84,851	87,137	94,116	96,700	101,632
사회보험	전가구	46,592	52,737	55,532	59,594	64,780	70,878
	근로자가구	48,010	54,939	58,340	63,390	71,242	78,094
공적지출	전가구	152,548	174,080	184,565	199,134	215,783	235,547
	근로자가구	198,973	223,500	238,299	255,970	282,728	311,307

자료: 통계청

공적지출은 △조세 △국민연금, 기여금 등 공적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사회보험료처럼 어쩔 수 없이 내는 부담금을 말한다.

전국가구의 공적지출은 2003년 1분기 15만 3,000원보다 54.4%나 증가했다. 5년간 조세지출은 77.0% 증가했고 공적연금과 사회보험은 각각 37.4%, 52.1% 늘어났다.

지출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공적지출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됐다. 2003년 1분기 공적지출은 소득의 5.9%에 불과했으나 올해 1분기에는 6.9%로 5년간 1%포인트 늘었다.

도시 근로자가구의 공적지출도 전국가구와 마찬가지로 확대됐다.

1분기 근로자가구의 공적지출은 31만 1,000원으로 5년 전보다 56.5% 늘어났다. 조세는 75% 이상 늘었고 공적연금은 33.9% 증가했다. 특히 근로자가구는 사회보험 지출 규모가 5년 전보다 62.7% 증가하면서 증가폭이 컸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구의 소득 중 공적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8%에 달하고 있다. 소득이 100만원이면 이 중 8만 원은 세금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지출하고 있다는 말이다.

조세연구원과 재정부에 따르면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의 합계를 국민총생산(GDP)으로 나눈 국민부담률은 2003년 25.3%에서 2007년 28.6%까지 확대됐다.

조세연구원은 "사회보장기여금의 꾸준한 증가로 국민증가세를 유지하다가 최근에는 조세부담률 증가로 국민부담률이 30%에 육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5월 27일자)

“법인세 인하때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김진수 조세연구원 선임위원 주장

대체 세원 발굴이나 재정지출 축소 등의 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채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하면 재정건전성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국책 연구원에서 나왔다.

김진수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계간 <세무사>에 실린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기업과세 선진화 방안’ 보고서에서 “법인세 세율 인하는 세입 기반을 항구적으로 축소시키게 돼 건전재정 기반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주요 경쟁국에 비해 세율을 낮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세수 기반을 감안할 때 법인세율 인하는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어 대체 세원을 발굴하거나 재정지출을 축소하는 등의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재정건정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연구위원에 의하면, 법인세수 규모는 2006년 29조 3,600억원으로, 전체 내국세의 25.8%에 이를 만큼 큰 몫을 이루고 있다.

그는 경제적으로 결합된 모·회사를 하나의 과세대상으로 삼아 각 법인의 소득과 결손금을 합산해 법인세를 납부하게 하는 제도인 연결납세제 도입 역시, 도입은 필요하지만 법인세율 인하와 동시에 실시되면 막대한 세수 감소가 발생해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5월 26일자〉

특별기고 감세정책 열쇠는

전병목 / 한국조세연구원 조세연구팀장

감세정책의 추진에 있어 재정건정성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감세정책은 상당 기간 재정수입의 감소를 야기하므로 적절한 보완대책이 없을 경우 정부의 재정수지가 악화되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불황기에 적자재정의 편성을 통해 시행하는 감세정책은 국가재정을 구조적인 적자의 높으로 빠져들게 할 위험성이 높다. 90년대 장기 침체에 빠진 일본의 경우가 그 예라 할 수 있는데 감세정책으로 인한 소비 확대 효과가 미흡해 재정적자만 심화되는 부작용을 경험했다. 그러므로 재정수지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재원조달 정책이 포함된 감세정책이 장기적인 성장 촉진에 바람직하다.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감세정책의 형태는 재원의 구조조정을 통한 감세정책이다. 전체 재정수지는 변화가 없으나 재원 조달의 구성을 변화시킴으로써 성장 촉진 효과가 높은 부문의 세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이다. 이 경우 기업 및 자본 부문의 세부담을 경감시키면서 일반소비세, 환경관련 세금을 높이는 방안이 주로 이용된다.

또 다른 형태의 감세정책은 재정수지 균형을 위해 정부 지출 수준을 축소하는 방안이다. 전반적으로 정부 규모를 축소시키는 방안으로 대체 재원의 조달이 없으므로 감세로 인한 성장 촉진 효과가 첫 번째 방안보다 크게 나타나게 된다. 여기서 정부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감세정책의 효과성을 결정하는 요소다.

최근의 조세 수입동향도 감세정책의 실행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2006년 이후 정부 본 예산을 초과하는 세수입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민간부문으로 환류시켜 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경제의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도 정부가 필요 이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현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다.

구체적인 환류 방법으로 정부 재정지출 증대와 감세가 고려될 수 있으나 초과 재원의 지속성, 외부 국가와 조세

경쟁 등을 감안할 때 감세정책이 바람직하다.

현행 초과 재원의 성격을 살펴보면 2007년 초과수입액 14조 2,000억원은 정부예산 147조 3,000억원의 9.6%에 이르는 규모로 그 가운데 6조원 이상은 거래 투명화를 통한 과세기반 확대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과세기반 확대의 근거는 자영업 부문의 소득파악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국세청 종합소득신고 금액 대비 국민계정상 개인영업 잉여의 비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 비율은 2002년 44.3%에서 2005년 61.1%로 크게 증가해 개인소득세 부문의 초과세수입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 기간 근로소득세 수입도 전체 세수입 증가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어 세 부담 증가 속도 완화차원에서 감세정책을 고려할 수 있다. 초과세 수입의 상당 부분이 조세 부과로 인한 경제왜곡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소득세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근로의욕 제고 측면에서도 감세정책은 타당성을 지닐 수 있다.

초과재원을 지속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소득파악률 향상 등을 통한 세수 확보 효과는 장기 지속성에 한계를 지닌다. 현재와 같은 높은 소득파악률 증가에 기초한 초과세수 확보는 5년 이상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2~3년의 단기적인 감세정책의 추진이 바람직하며 보다 장기적인 효과를 야기하는 감세정책에는 추가적인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국제 조세 경쟁 차원에서 요구되는 법인세율 인하는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감세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비조세 부문에 대한 규제 완화도 동시에 실시되어야 한다. 다양한 투자관련 의사결정요인 조사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기업의 투자 의사 결정에서 조세 부담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조세보다는 오히려 각종 기업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제, 인적자원의 조달, 노사문제, 시장과 근접성, 청산 및 과실송금 등이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요인들 중 규제 완화를 통해 개선할 수 있는 기업설립 및 운영, 노사문제,

청산 그리고 과실송금 등과 관련된 정부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파이낸셜뉴스 5월 22일자)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높다?

정부, 감세 추진하며 기존 주장 뒤집어
학계 “높다고 해도 감세이유 될지 의문”

학계에서는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과연 높은지, 또 설령 높다고 해도 그것이 감세 이유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19일 기획재정부와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조세부담률은 한 나라의 국민 세금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표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합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따진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22.7%다. 100원을 벌여 22.7원을 세금으로 냈다는 뜻이다.

조세부담률을 둘러싼 논쟁의 발단은 지난 16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이다.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주변 경쟁국보다 높다”며 “지속적으로 감세를 추진해 조세부담률을 2012년까지 20%선으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요국 중 우리나라보다 조세부담률이 낮은 나라는 그리 많지 않다. 국제비교가 가능한 조세부담률 통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을 대상으로 작성한 자료가 거의 유일하다. 2005년 기준으로 작성, 지난해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보다 조세부담률이 낮은 나라는 멕시코, 일본, 그리스, 슬로바키아뿐이다.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 체제전환 국가도 우리나라보다 높다. 그나마 일본 정도가 우리나라와 비교할 만하다.

강 장관은 조세부담률이 낮은 '주변 경쟁국' 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지만 싱가포르(13.7%), 홍콩(12.1%), 중국(17.8%) 등이 꼽힌다. 이에 대해 학계에서는 "조세부담률을 놓고 우리나라와 스웨덴 같은 복지선진국을 단순비교할 수 없듯 싱가포르, 홍콩, 중국 등과 견주는 것도 무리가 있다"는 반응이다.

〈세계일보 5월 20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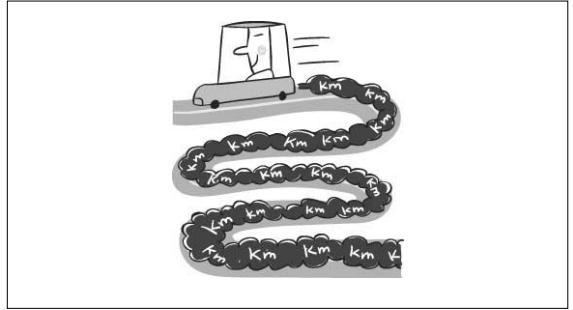
자동차세 내리고 혼잡통행료 등 올려야

주행거리 줄이려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승용차 판매대수나 보유대수가 아니라 차량의 주행거리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 이는 또한 자동차산업을 위축시키지 않고도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안이기도 하다. 주행거리를 줄이는 게 첫째이고, 고연비 차량을 권장하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그 다음이다.

전문가들은 5부제 같은 강제적 수요 억제책이 아니라 차량 관련 비용항목의 경중을 바꿈으로써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차를 몰고 나오지 않도록 유도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지적한다. 경기개발연구원 지우석 선임연구원은 "재산세적 성격이 강한 자동차의 보유단계 비용을 줄이고 교통에너지환경세같은 운행단계 비용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자동차 관련 세제는 취득, 보유 및 운행단계로 구분되어 부과된다. 보유단계 세금으로는 지방세로 부과되는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가 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경철 선임연구위원은 "자가용의 1일 평균주행거리가 계속 늘고 있는 것은 전 지구적 관심사인 지구온난화 대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혼잡통행료 등 다양한 운행 억제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06년 우리나라 승용차의 하루 평균주행거리는 45.9km였다. 이는 연간 1만 6,754km로 1만km 남짓인 선진국보다 60%가량 더 많은 것이다.

특히 기름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데도 주행거리가 줄지 않는 것은 보유 관련 세금 비중이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더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조세연구원 김승래 전문연구원은 "2005년 자동차 관련 세수 중 취득·보유단계의 세입 비중은 전체 자동차 세입 24조 9,481원 중 30%에 해당한다"라며 "이 정도 수치는 고유가와 기후변화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그것도 보유단계 세금과 다른없는 책임보험료를 감안하지 않은 비율이다. 취득 및 보유단계 세금을 줄이지 않고서는 자동차를 주차장에 세워 놓는 시간이 많으면 손해라는 승용차 보유자의 보상심리를 잠재울 수 없다.

오염자 부담원칙을 강화하는 데에는 세제개편 외에도 다양한 수단들이 있다. 도심 주차료 인상이나 도심혼잡통행료의 확대 적용 등도 자동차 운행에 대한 부담을 늘려 주행거리를 줄이는 데 기여한다. 자동차 보험료를 산정할 때 주행거리를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봄직하다. 정유사 보너스카드를 이용해 주유소의 개인별 판매기록을 반영하거나 아예 기름값에 보험료를 부과해 정유사와 보험사가 정산토록 할 수 있다. 보험연구원 기승도 연구위원은 "사고 빈도와 주행거리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서 "운행거리 조작에 대한 제도적, 기술적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더 합리적으로 위험도를 측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5월 19일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내리려면 발급·매입 업무 분리해야”

조세연구원 김재진 박사
중기중앙회 세미나서 주장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내리기 위해서는 카드 발급 업무와 매입업무를 분리해 서로 다른 기관이 맡도록 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신용카드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해 11월 정부의 카드수수료 합리화 방안에 따라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를 내렸지만 가맹점의 불만이 여전한 것은 근본적인 문제접근이 안됐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가맹점이 카드 매출전표를 현금으로 바꾸려면 발급 카드사로부터 직접 매입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가맹점은 카드사가 제시한 일방적인 수수료를 부담할 수 밖에 없다”며 “가맹점이 전표 매입과정에서 카드사를 선택할 권리가 없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카드 발급업무와 매입업무를 분리해 서로 다른 기관이 맡도록 하면 자율경쟁을 유도해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즉 카드사, 카드소지자(소비자), 가맹점으로 돼있는 기존 3당사자 체제에서 카드 매출전표 매입사를 추가해 4당사자 체제로 전환하는 게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호주의 경우 카드 제도 도입 초기에 3당사자 체제를 적용했다가 2002년 4당사자 체제로 바꾼 뒤 평균 카드수수료가 1.8%에서 0.99%(2004년)까지 낮아졌다”고 소개했다.

(서울경제 5월 16일자)

재정포럼

2008년 6월호 통권 제144호

-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편집위원장 /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 / 김우철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김현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원종학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우석진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전병힐 (한국조세연구원 초청연구위원)
- 편집·제작 / 최병규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출판팀장)
최윤용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월간 재정포럼

2008년 6월 16일 발행 / 제13권 제6호(통권 제144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라 10107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죽말길 28
TEL : 02)2186-2130 · 3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 선 디자인 02)2269-2234
- 인쇄 / 고려문화사 02)2277-1509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곳에서 매달 책을 받아보시게 되며, 도중에 책값이 오르더라도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우송료는 본원이 부담하며 1년 구독시 두달치의 책값이 절약됩니다.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셔서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 (02)2186-2133
- FAX : (02)2186-2139
- E-mail : pub@kipf.re.kr
- 주소 :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죽말길 28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출판팀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 지로이용 : 본원 소정의 지로용지나 은행 비치 지로용지(지로번호 6923437)를 이용하십시오.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 가락중앙지점
· 계좌번호 : 441-05-000011
· 예금주 : 한국조세연구원